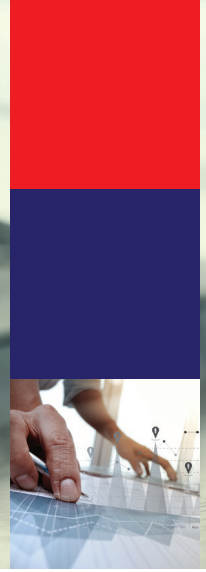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 서 언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의 개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 및 중국 수출 시 ‘규격 및 인증제도’를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을 정도로 TBT와 SPS 같은 규제적 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한·중·일 역내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2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인 2015년 11월에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되면서, 한·중·일 FTA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은 WTO와 같은 다자체제에 비해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이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바,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 RCEP, TPP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의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무역의 총액 차원에서 한·중·일 통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통계를 활용하여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을 살펴보았으며,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중·일의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인 TBT와 SPS 조치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현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하여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상안과 채널 내에서의 주요 쟁점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최보영 부연구위원의 책임 아

래 방호경 전문연구원, 이보람 전문연구원, 유세별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창재 초청 연구위원, 강유덕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윤진영 사무관, 동의대학교 이홍배 교수,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 배재대학교 김상욱 교수, 세종대학교 최필수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편집과 회의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민제 연구조원과 이호원 인턴을 비롯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보고서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통한 깊은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책 입안자, 기업인, 나아가 한·중·일 지역연구자에게도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¹⁾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중·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1) UNCTAD(2012), p. 1.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중·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중·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중·일 3국의 대세계 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중·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중·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중·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중·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중·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물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남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중·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중·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중·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야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뉴질랜드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 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차례

| | |
|--------------------------------------|----|
| ■ 서언 | 3 |
| ■ 국문요약 | 5 |
| ■ 제1장 서론 | 19 |
|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 20 |
| 2. 보고서의 구성 | 23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5 |
| ■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 27 |
|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 31 |
|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 35 |
|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 36 |
|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 38 |
| 3. 주요 무역장벽 | 42 |
| 가. 관세장벽 | 42 |
| 나. 비관세장벽 | 44 |
| 4. 소결 | 49 |
| ■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51 |
| 1. 이론적 배경 | 52 |
| 2. 주요 선행연구 | 56 |
|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 58 |
|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 59 |
|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68 |

| | |
|--|------------|
| 4. 소결 | 76 |
| ■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 79 |
| 1. 한·중·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 80 |
| 가. TBT | 81 |
| 나. SPS | 84 |
|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 87 |
| 가. TBT | 88 |
| 나. SPS | 96 |
|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 103 |
| 가. TBT | 104 |
| 나. SPS | 120 |
|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 128 |
| 가. TBT | 130 |
| 나. SPS | 136 |
| 5. 소결 | 142 |
| ■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 145 |
|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 147 |
| 2. 논의 쟁점 | 152 |
| 가. 조화 | 152 |
|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 156 |
| 다. 투명성 강화 | 160 |
| 라. 기타 협력 | 164 |

| | |
|--|-----|
| ■ 제6장 결론 | 167 |
| 1. 요약과 평가 | 168 |
| 2. 추후 연구과제 | 171 |
| ■ 참고문헌 | 173 |
| ■ 부록 | 187 |
| 부록 1.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TBT 협정문 조항 비교 | 188 |
| 부록 2.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SPS 조항 비교 | 192 |
| 부록 3. 비관세조치 평가 질문지 | 194 |
| 부록 4. 세계의 TBT와 SPS 통보문 현황 | 202 |
| ■ Executive Summary | 211 |

표 차례

| | | |
|---------|---|----|
| 표 1-1. | 비관세조치 분류 | 21 |
| 표 1-2. |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및 추이 | 22 |
| 표 2-1. | 한·중 및 한·일 간 주요 수출입 산업: 총액 기준 | 37 |
| 표 2-2. | 중·일 간 주요 수출입 산업: 총액 기준 | 37 |
| 표 2-3. |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 38 |
| 표 2-4. |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 39 |
| 표 2-5. | 한·중·일 3국의 관세구조(HS 6단위 기준) | 43 |
| 표 2-6. | 한국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45 |
| 표 2-7. | 중국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46 |
| 표 2-8. | 일본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46 |
| 표 2-9. | 한국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47 |
| 표 2-10. | 중국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48 |
| 표 2-11. | 일본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48 |
| 표 3-1. | 한·중·일의 산업별 규제적 조치의 빈도지수(2013년) | 65 |
| 표 3-2. | 한·중·일의 산업별 규제적 조치의 범위비율(2013년) | 66 |
| 표 3-3. | 분석자료의 요약 통계량 | 71 |
| 표 3-4. | 비관세조치의 요약 통계량 | 71 |
| 표 3-5. |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무역에 대한 효과: 빈도지수 | 72 |
| 표 3-6. |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무역에 대한 효과: 범위비율 | 73 |
| 표 3-7. |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빈도지수 | 74 |
| 표 3-8. |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범위비율 | 75 |
| 표 4-1. | 한·중·일의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2002~14년) | 83 |
| 표 4-2. | 한·중·일의 SPS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2002~14년) | 86 |

| | |
|--|-----|
| 표 4-3. 일본의 TBT 이슈 담당 기관 | 95 |
| 표 4-4.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조항 | 105 |
| 표 4-5. 중국의 기체결 FTA TBT 조항 | 106 |
| 표 4-6. 일본의 기체결 EPA TBT 조항 | 107 |
| 표 4-7.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국가와의 TBT 조항 비교 | 108 |
| 표 4-8. 한국의 기체결 FTA SPS 조항 | 121 |
| 표 4-9. 중국의 기체결 FTA SPS 조항 | 124 |
| 표 4-10. 일본의 기체결 EPA SPS 조항 | 125 |
| 표 4-11.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국가와의 SPS 조항 비교 | 126 |
| 표 4-12.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 129 |
| 표 4-13. 한·중·일 3국간 상호 제기 STC 내용(2011~15년) | 131 |
| 표 4-14.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제도 | 132 |
| 표 4-15.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 수수료 | 135 |
| 표 4-16. 중국이 제기한 SPS 특정무역현안: 일본 | 136 |
| 표 4-17. 중국 법령 투명성 연관 특정무역현안 사례 | 142 |
| 표 5-1. ATIGA의 비관세조치 분류 | 150 |
| 표 5-2. 한·중 정부간 김치 관련 협상 및 경과 | 154 |

그림 차례

| | | |
|---------|---|----|
| 그림 2-1. |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 비관세조치의 누적효과 | 29 |
| 그림 2-2. |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 | 32 |
| 그림 2-3. | 한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 33 |
| 그림 2-4. | 중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 34 |
| 그림 2-5. | 일본의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 35 |
| 그림 2-6. | 한·중·일 3국 및 전 세계 주요국의 ECI 변화 | 41 |
| 그림 2-7. | 한·중·일의 관세율 변화 | 42 |
| 그림 2-8. | 소득수준별 관세와 비관세장벽 | 45 |
| 그림 3-1. | 비관세조치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 53 |
| 그림 3-2. | 비관세조치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 | 54 |
| 그림 3-3. | 중국의 연도별 TBT/SPS 수준 | 63 |
| 그림 3-4. | 일본의 연도별 TBT/SPS 수준 | 64 |
| 그림 3-5. | 한국의 연도별 TBT/SPS 수준 | 64 |
| 그림 4-1. | 한·중·일 3국의 TBT 통보문 건수(2002~14년) | 82 |
| 그림 4-2. | 한·중·일 3국의 SPS 통보문 건수(2002~14년) | 85 |

글상자 차례

| | | |
|---------|--|-----|
| 글상자 41. | 중국의 산업품목별 기술규제 | 91 |
| 글상자 42. | 중국 주요 식품첨가제표준과 잔류허용기준 | 101 |
| 글상자 43. | TBT 위원회 기능(조정 메커니즘) | 119 |
| 글상자 44. | 한·중 FTA 내 SPS 위원회 기능 | 128 |
| 글상자 45. | 상이한 식품기준·규격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른 교역장벽 사례 | 138 |

부록 표 차례

| | |
|--|-----|
| 부록 표 1-1. 국제표준 | 188 |
| 부록 표 1-2. 적합성 평가절차 | 189 |
| 부록 표 1-3. 투명성 | 190 |
| 부록 표 1-4. 협력 | 191 |
| 부록 표 2-1. 협력 조항 | 192 |
| 부록 표 4-1. 산업 분야별 TBT 통보 현황 | 203 |
| 부록 표 4-2. 산업 분야별 SPS 통보 현황(2014년) | 207 |
| 부록 표 4-3. 목적별 SPS 위원회 통보 건수(2013년 9월~2015년 9월) | 208 |

부록 그림 차례

| | |
|---|-----|
| 부록 그림 4-1. 연도별 WTO TBT 통보문 건수(1995~2014년) | 202 |
| 부록 그림 4-2. 목적별 TBT 통보문 현황(1995~2014년) | 204 |
| 부록 그림 4-3.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1995~2014년) | 205 |
| 부록 그림 4-4. 연도별 WTO SPS 통보문 건수(1995~2014년) | 206 |
| 부록 그림 4-5. SPS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1995~2014년) | 20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²⁾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 1-1]은 본 보고서가 분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WTO I-TIP 데이터의 비관세조치 분류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UNCTAD, WTO와 IMF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작업한 MAST(Multiple Agency Support Team) 비관세 분류체계를 보여 준다.³⁾ 표에 나타나듯이 비관세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나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는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 또는 규제적 조치(regulatory measures)로 분류된다.⁴⁾

[표 1-2]는 세계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및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의 혹은 시행된 비관세 조치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규제적 조치인 SPS와 TBT 조치의 개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여타 비관세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개수가 많다. 이처럼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2) UNCTAD(2012), p. 1.

3) MAST는 FAO, IMF, ITC, OECD, UNCTAD, UNIDO, World Bank, WTO로 구성되었다.

4) 규제적 조치(regulatory measures)라는 표현은 WTO(2012b)에 따른 것이다.

되고 있는바, 본 보고서는 이 두 가지 규제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현재 세계 1위의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큰 폭으로 낮아진 관세장벽과 달리 TBT와 SPS 조치 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또한 농수산업에 대해서 다수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조치 중 상당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중·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비관

표 1-1. 비관세조치 분류

| WTO I-TIP | | MAST classification | |
|------------------------|-------------------------------------|---------------------|--|
| 기술적 조치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 기술적 조치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선적 전 검사 |
| 무역방어 조치 ¹⁾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비기술적 조치 |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 ¹⁾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치 가격제한조치 금융조치 반독점조치 |
| 농업협정에서 파생된 비관세조치 | 특별수입제한 관세할당 수출보조금 | | 무역 관련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수출보조 제외) |
| 기타 | 수량제한 수입허가 국영기업 | |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

주: 1) 무역구제 조치라고도 불림.

자료: WTO(2014b)와 UNCTAD(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세장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3년에 실시된 한·중·일 FTA 관련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까다로운 '규격, 인증제도'는 일본 및 중국 수출 시 주요 애로사

표 1-2.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및 추이

| | 발의 | | | | | | |
|------|-----|-------|-----|------|-----------|--------------|------|
| | SPS | TBT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 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수량제한 |
| 2003 | 687 | 784 | 209 | 14 | 13 | 19 | 10 |
| 2004 | 612 | 634 | 197 | 8 | 14 | 19 | 12 |
| 2005 | 651 | 761 | 180 | 5 | 6 | 17 | 17 |
| 2006 | 901 | 870 | 188 | 8 | 8 | 17 | 16 |
| 2007 | 628 | 1,021 | 158 | 11 | 7 | 23 | 12 |
| 2008 | 588 | 1,239 | 198 | 14 | 8 | 23 | 15 |
| 2009 | 521 | 1,349 | 207 | 28 | 20 | 23 | 49 |
| 2010 | 703 | 1,268 | 172 | 10 | 18 | 26 | 49 |
| 2011 | 685 | 1,140 | 166 | 25 | 10 | 5 | 23 |
| 2012 | 545 | 1,478 | 194 | 21 | 21 | 3 | 673 |
| 2013 | 651 | 1,533 | 122 | - | 17 | - | 53 |
| 2014 | 831 | 1,430 | - | - | 20 | - | 139 |
| | 시행 | | | | | | |
| | SPS | TBT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 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수량제한 |
| 2003 | 1 | 17 | 216 | 5 | 15 | 130 | - |
| 2004 | 2 | 12 | 165 | 11 | 6 | 213 | - |
| 2005 | 8 | 14 | 139 | 3 | 6 | 97 | - |
| 2006 | 5 | 26 | 154 | 3 | 7 | 117 | - |
| 2007 | 240 | 27 | 107 | 2 | 5 | 93 | - |
| 2008 | 353 | 49 | 154 | 11 | 6 | 78 | - |
| 2009 | 313 | 252 | 146 | 9 | 10 | 83 | - |
| 2010 | 419 | 288 | 146 | 19 | 4 | 67 | - |
| 2011 | 361 | 226 | 107 | 10 | 11 | 75 | - |
| 2012 | 346 | 237 | 126 | 10 | 8 | 22 | 1 |
| 2013 | 344 | 208 | 67 | - | 8 | 4 | - |
| 2014 | 368 | 190 | - | - | 14 | - | - |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6.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향으로 지적되고 있다.⁵⁾ 일본은 116개의 위험도가 높은 특정전기용품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인 PSE마크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의 자율인증제도인 S마크 제도를 운영 중이나 동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사실상 일본 내 판매가 어려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⁶⁾ 한편 중국의 단일강제인증제도(CCC)를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보고되고 있다.⁷⁾

2012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인 2015년 11월에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한·중·일 FTA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지역무역협정은 WTO와 같은 다자체제에서 논의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한·중·일 FTA, RCEP과 TPP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⁸⁾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제2장은 한·중·일의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

5) 중소기업중앙회(2013).

6) 위의 책, p. 4.

7) 위의 책, p. 5.

8) 예를 들어 Orefice and Rocha(2014)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위해 규제의 조화 등을 포함한 더욱 깊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슬에 대한 참여 정도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경제의 경우는 상품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어 국경을 지날 때마다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무역비용 효과의 가중으로 비관세조치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의 한·중·일의 무역통계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장에서는 한·중·일의 무역장벽인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비관세조치가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특히 이를 통해 모든 비관세조치가 비관세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의 비관세조치는 시장실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무역과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새로운 비관세조치 데이터인 WTO I-TIP을 활용하여 TBT와 SPS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계산하여 한·중·일의 무역이 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정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산업별 차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활용하여 비관세조치와 관세장벽이 한·중·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일의 TBT와 SPS 정책과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의 TBT와 SPS 통보문 현황을 살펴보고 3국의 TBT와 SPS 정책의 큰 틀을 살펴본다. 또한 한·중·일 3국이 각각 여러 국가와 FTA 또는 EPA를 맺고 있는바, 기체결된 협정문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실무자 인터뷰와 WTO TBT·SPS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최근에 거론되는 주요 논의쟁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중·일은 아세안이나 EU와

달리 아직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안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비관세 협력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논의쟁점인 한·중·일의 표준의 조화,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6장은 상기한 내용을 요약·평가하고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서술한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제까지 많은 비관세조치 또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한·중·일의 농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TBT와 SPS 조치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본 보고서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중·일 FTA를 대비한 설문조사와 중국과 일본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 한국 또는 한·중 간의 무역에 TBT 또는 SPS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비관세조치를 계측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관세조치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중요성에 비해서는 실증분석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차별성과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는 교역의 총액 차원에서의 한·중·일의 통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통계를 활용하여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중·일의 TBT, SPS 조치의 빈도수와 범위비율을 연도별로 계산하여 TBT와 SPS가 3국의 무역에 미치는

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였으며, 한·중·일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규제적 조치가 무역을 저해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중·일의 기체결 FTA를 비교·분석하고 WTO TBT 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서에 담고 있어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와 RCEP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4. 소결



정보기술의 발전과 국가간 물류비용의 감소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분할(fragmentation) 및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촉진하여 글로벌 차원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심화시켜 왔다. 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환경하에서 국경간 무역장벽의 역할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비관세조치와 글로벌 가치사슬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논의는 WTO(2012b), OECD, WTO, and UNCTAD(2013), Lord(2014)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되는 연구는 WTO(2012b)이다.

WTO(2012b)는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 최종재의 관세상당치(c)를 [식 2-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식 2-1]이 의미하는 바는 비관세장벽이 높으면서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그림 2-1 참고).

$$c(n) = \sum_{i=1}^n \frac{1}{n} (1+t)^i \quad \text{[식 2-1]}$$

여기서 t 는 비관세 조치, n 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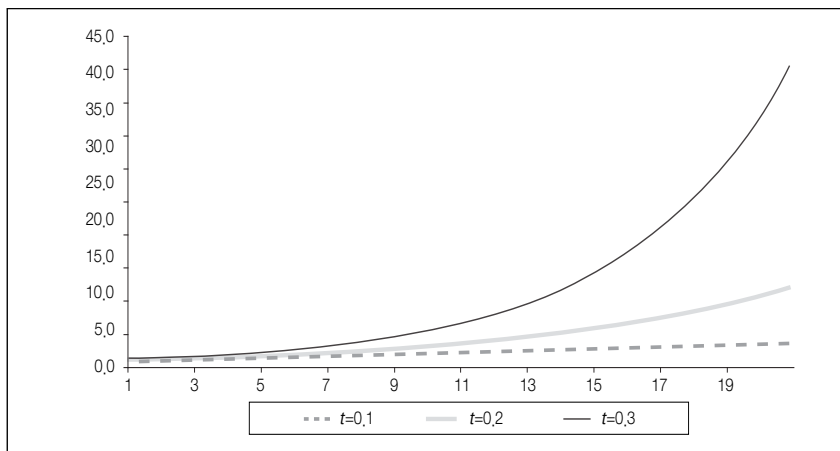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한 국가의 수출 혹은 수입 총액보다 해당 제품의 생산에서 실제 기여한 부가가치 정도를 더 중요하게 간주한다. [식 2-1]에 근거할 경우 비관세장벽이 심화될수록 총비용의 증가로 부가가치 기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본 장에서는 3국의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변화추이를 통해 그동안 각국의 무역장벽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여타 지역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활발한 대표

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총액기준의 무역자료만 이용할 경우 3국 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징을 파악한 후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무역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 기준의 무역통계 이외에도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WIOT는 전 세계 40개국(EU 27개국과 한·중·일 등 13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3에 근거하여 35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Timmer *et al.*(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WIOT의 장점은 각국 통계기관으

그림 2-1.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 비관세조치의 누적효과



주: 1) t 를 10%, 20%, 30%로 가정.

2) 종축은 최종재 무역비용의 관세상당치, 횡축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 수를 나타냄.

자료: [식 2-1]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로부터 제공받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아울러 데이터 작성에 사용된 각국의 공급사용표(SUTs)를 제공하고 있어 투명성이 높은 데 있다. WIOT는 2015년 7월 현재까지 1995~2011년에 대한 세계투입산출표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한·중·일 3국의 수출 혹은 수입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구체적 산식은 [식 2-2]와 같다.⁹⁾

$$X = AX + F \quad \text{[식 2-2]}$$

[식 2-2]를 X 에 대해 정리하면, [식 2-3]과 같이 총산출 벡터(X)는 레온티에프(Leontief) 역행렬(L)과 최종수요 열벡터(F)의 함수 형태가 된다.

$$X = (I - A)^{-1}F = LF \quad \text{[식 2-3]}$$

[식 2-3]에 부가가치 계수(value added coefficient)로 구성된 대각행렬을 곱하면 [식 2-4]와 같이 최종수요에 대한 부가가치가 계산된다.

$$VX = VLF \quad \text{[식 2-4]}$$

본 장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된 통관기준의 무역데이터와 WIOT를 통해 도출된 부가가치 무역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총액기준의 무역, 후자를 부가가치 무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9) 더 자세한 내용은 Johnson and Noguera(2012)와 Stehrer(2012) 참고.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그림 2-2]는 IMF DOT(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식 2-5]에 따라 계산한 총액기준의 역내무역 및 역내부가가치 무역(trade in value-added)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다.

$$IRT = \frac{X_{ij} + M_{ij}}{X_{iw} + M_{iw}} \quad TVA = \frac{VX_{ij} + VM_{ij}}{VX_{iw} + VM_{iw}} \quad [\text{식 2-5}]$$

여기서 IRT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총액기준의 역내무역 비중을 나타내고 TVA는 역내부가가치 비중을 의미한다. X와 M은 수출 및 수입, VX와 VM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부가가치, i, j 는 각각 한·중·일, w 는 전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X_{ij} 와 M_{ij} 는 한·중·일 각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금액, VX_{ij} 와 VM_{ij} 는 각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역내부가가치를 의미한다.

한·중·일 3국간 무역을 총액기준으로 계산하면 역내무역비중은 1992년에 14.0%를 보인 이후 2004년에 24.1%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2004년 이후 3국간 역내무역 비중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2014년에 19.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총액기준의 역내무역 비중의 추이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부가가치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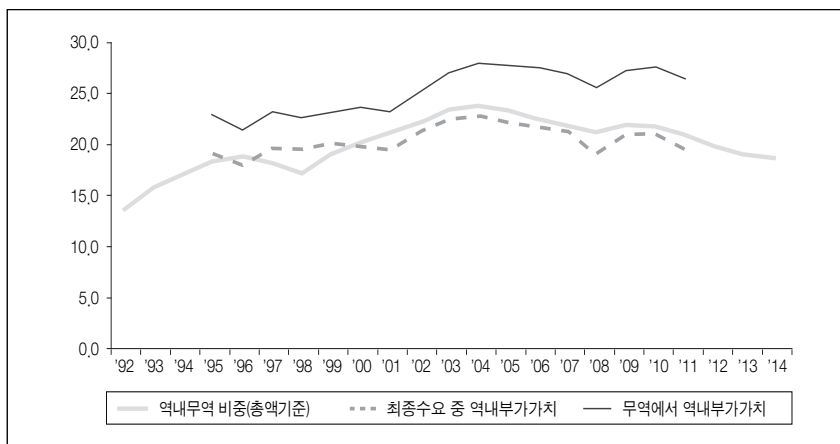
한편 한·중·일 3국의 무역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점유 비중은 총액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무역에서 역내국의 비중은 1995년의 23.1%에서 2011년에 26.5%로 늘어난 바 있다. 또 다른 주목되는 특징은 2004년 이후 총액기준의 역내교역 비중은 줄어드는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가가치 무역에서는 역내국

의 비중이 완만히 줄어든 데 있다. 이는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이 심화된 무역구조하에서는 총액기준의 무역규모가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커져 변동폭이 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수출 혹은 수입하는 데 있어 역내국의 부가가치 기여는 3국의 최종수요에서 역내국의 기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고). 이는 3국의 대외무역을 위해서는 최종재에 투입되는 역내국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한·중·일 각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총액기준 대외수출에서 중국 및 일본의 비중은 1992~2014년 동안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의 역내수출 비중은 1992년에 18.4%에서 2014년에 31.0%를 보였다. 부가가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의 비중은 1995~2011년 동안 30.4%에서 29.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한국의 최종재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 반면 일본의 경우

그림 2-2.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주: 역내부가가치의 비중 계산에서 각국의 국내부가가치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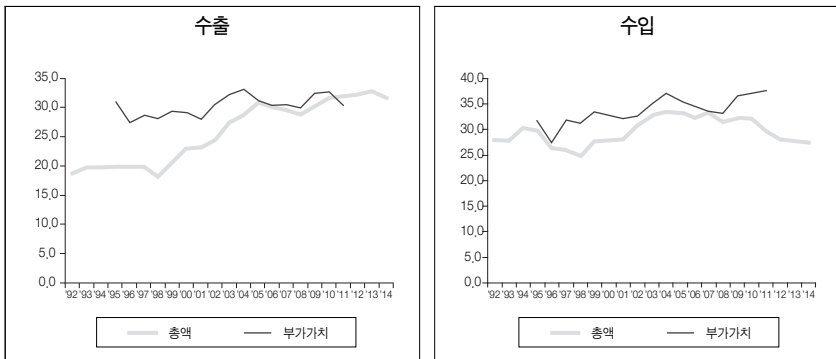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5. 4. 30);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액기준 역내수입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증감추세에 따라 1992년에 27.9%에서 2014년에 27.4%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1995~2011년 동안 31.5%에서 37.4%로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최종재 수입품목에 내재된 중국 및 일본의 부가가치가 여타 국가에 비해 분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모두 역내국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위축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1992~1995년 중 역내국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중국의 최종수출에 포함된 한국 및 일본의 부가가치 비중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타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와 미국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¹⁰⁾

그림 2-3. 한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주: 역내부가가치의 비중 계산에 각국의 국내부가가치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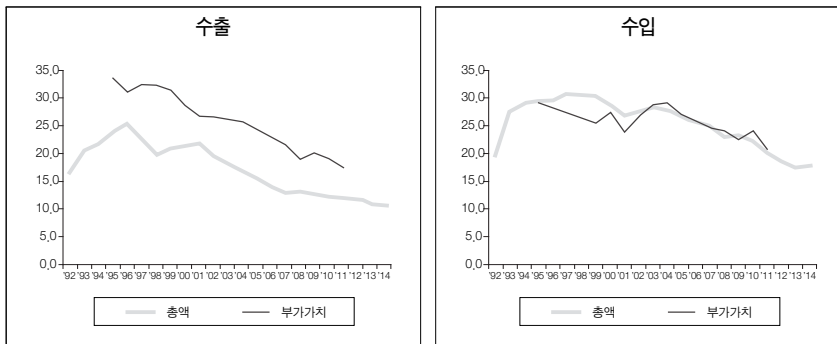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5. 4. 30);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10)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총액기준의 무역이 크게 늘어난 추세를 고려할 때, 기타 국가로 분류된 국가 중에서 아세안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역내수입 비중도 총액 및 부가가치 비중 모두 최근 들어 위축된 특징을 보였다. 즉 2005~2014년 동안 총액기준의 경우 29.7%에서 18.0%로,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29.4%에서 20.9%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역내국의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세는 최근 중국의 최종재 수입에서 기타 국가와 미국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늘어난 것에 기인하였다.

일본의 역내수출 비중은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모두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총액기준의 경우 1992~2014년 동안 8.8%에서 25.8%로,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1995~2011년 동안 24.6%로 늘어났다. 또 다른 주목되는 특징은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이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충격은 총액기준의 역내수출 비중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반면,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충격인 2001년 IT 버블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가가치 기준의 역내수출 비중의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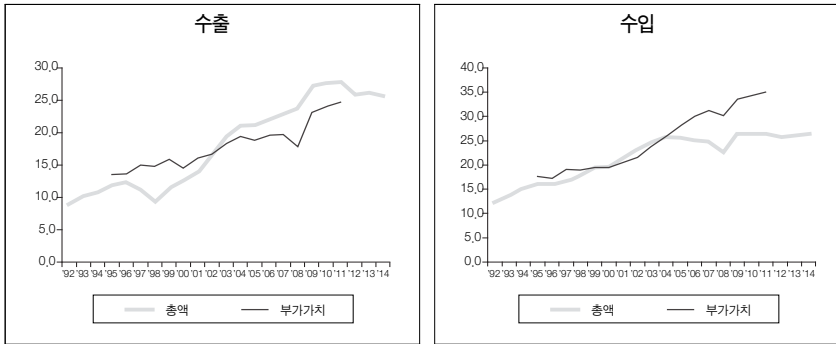
그림 2-4. 중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주: 역내부가가치의 비중 계산에서 각국의 국내부가가치는 제외함.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5. 4. 30);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2-5. 일본의 역대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주: 역내부가가치의 비중 계산에서 각국의 국내부가가치는 제외함.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5. 4. 30);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일본의 역내수입 비중도 총액 및 부가가치 기준 모두 분석기간 동안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04년 이후 총액기준의 역내수입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역내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본 소절에서는 3국의 역내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 및 수입 비중을 구하여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을 도출한 후, 이들 주요 산업에 대한 역내부가가치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산업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 근거하여 구분하고자 하는데 이는 WIOT의 산업분류가 ISIC Rev.3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산업은 1995년 당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9.6%)으로 섬유 및 의류 제조업(14.5%), 1차 금속제조업(10.6%),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10.2%)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10.2%) 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에 들어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절반 이상을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50.1%)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입은 1995년에 주로 섬유 및 의류 제조업(24.2%)과 1차 금속 제조업(21.3%)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였고, 2013년에는 40.7%를 점유한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주요 수입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1995년 및 2013년 모두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1차 금속제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대일 수입은 1995년 당시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33.7%)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25.6%) 등에서 큰 비중을 보였고, 2013년에 들어서는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25.4%)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22.3%) 등에서 수입규모가 큰 특징을 보였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분석기간 동안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에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대중 주요 수입산업은 한국과 같이 1995년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35.9%)에서 2013년에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38.3%)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은 주로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한·중 및 한·일 간 주요 수출입 산업: 총액 기준

| 산업구분 | 한·중 | | | | 한·일 | | | |
|-----------|-------|------|-------|------|-------|------|-------|------|
| | 대중 수출 | | 대중 수입 | | 대일 수출 | | 대일 수입 | |
| | 1995 | 2013 | 1995 | 2013 | 1995 | 2013 | 1995 | 2013 |
| 농축수산업 | 0,2 | 0,1 | 3,4 | 1,2 | 4,4 | 1,5 | 0,2 | 0,2 |
| 식품품 가공 | 1,2 | 0,7 | 5,0 | 2,9 | 6,9 | 4,3 | 0,8 | 0,4 |
| 섬유 및 의류 | 14,5 | 1,6 | 24,2 | 7,1 | 14,4 | 2,1 | 1,6 | 0,5 |
| 가죽/가방/신발 | 7,7 | 0,4 | 3,8 | 2,3 | 4,3 | 0,4 | 0,2 | 0,0 |
| 화학물질/화학제품 | 29,6 | 19,1 | 8,9 | 9,2 | 6,0 | 11,3 | 14,8 | 22,3 |
| 고무/플라스틱 | 1,9 | 2,2 | 0,4 | 1,8 | 1,8 | 3,0 | 1,5 | 5,7 |
| 비금속광물제품 | 0,3 | 0,3 | 2,2 | 3,7 | 1,4 | 0,9 | 2,2 | 2,7 |
| 1차 금속 | 10,6 | 5,5 | 21,3 | 15,1 | 16,2 | 16,3 | 11,2 | 16,3 |
| 기계 및 장비 | 10,2 | 6,9 | 1,2 | 6,6 | 3,6 | 8,0 | 25,6 | 13,9 |
| 전자 및 정밀기기 | 10,2 | 50,1 | 10,2 | 40,7 | 29,4 | 20,7 | 33,7 | 25,4 |
| 자동차/트레일러 | 2,8 | 6,2 | 0,3 | 2,8 | 1,3 | 3,4 | 4,2 | 3,7 |

주: HS 1992 버전을 ISIC Rev.3으로 변환.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4. 3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 중·일 간 주요 수출입 산업: 총액 기준

| 산업구분 | 대중 수출 | | 대중 수입 | |
|-----------|-------|------|-------|------|
| | 1995 | 2013 | 1995 | 2013 |
| 농축수산업 | 0,1 | 0,1 | 4,7 | 1,2 |
| 식품품 가공 | 0,4 | 0,3 | 9,7 | 4,2 |
| 섬유 및 의류 | 8,8 | 1,8 | 35,9 | 17,0 |
| 가죽/가방/신발 | 0,3 | 0,1 | 6,7 | 3,8 |
| 화학물질/화학제품 | 12,1 | 15,7 | 3,8 | 5,0 |
| 고무/플라스틱 | 1,7 | 3,3 | 1,2 | 2,9 |
| 비금속광물제품 | 1,2 | 1,5 | 2,0 | 1,5 |
| 1차 금속 | 14,3 | 9,4 | 6,1 | 4,8 |
| 기계 및 장비 | 24,5 | 16,8 | 1,7 | 9,0 |
| 전자 및 정밀기기 | 24,8 | 29,9 | 12,3 | 38,3 |
| 자동차/트레일러 | 6,4 | 11,0 | 0,7 | 2,6 |

주: HS 1992 버전을 ISIC Rev.3으로 변환.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4. 3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역내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 금속, 비금속광물제품과 같이 천연자원 기반 산업을 제외할 경우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1995~2011년 동안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더욱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표 2-3 참고). 이는 그만큼 여타산업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전자 및 정밀기기의 최종재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분석기간 동안 빠르게 늘어난 반면 일본은 줄어들었다(표 2-4 참고). 즉 1995~2011년 동안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1.2%에서 8.9%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8.7%에서 4.8%로 감소하였다.

표 2-3.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

| 산업구분 | 한국 | | | 중국 | | | 일본 | | |
|-----------|---------|---------|-------|---------|---------|-------|---------|---------|-------|
| | 1995(a) | 2011(b) | b-a | 1995(a) | 2011(b) | b-a | 1995(a) | 2011(b) | b-a |
| 농축수산업 | 90.3 | 78.7 | -11.6 | 94.4 | 92.9 | -1.5 | 95.0 | 89.5 | -5.5 |
| 식품품 가공 | 78.7 | 68.4 | -10.3 | 91.9 | 89.2 | -2.7 | 94.7 | 89.1 | -5.6 |
| 섬유 및 의류 | 72.7 | 66.8 | -5.8 | 82.9 | 86.1 | 3.1 | 94.2 | 88.1 | -6.1 |
| 가죽/가방/신발 | 74.0 | 68.5 | -5.5 | 81.7 | 86.0 | 4.3 | 94.9 | 89.3 | -5.5 |
| 화학물질/화학제품 | 71.2 | 47.5 | -23.6 | 85.0 | 76.4 | -8.6 | 93.4 | 79.5 | -13.9 |
| 고무/플라스틱 | 73.9 | 60.2 | -13.7 | 82.5 | 77.6 | -4.9 | 94.3 | 83.3 | -11.0 |
| 비금속광물제품 | 81.2 | 67.4 | -13.8 | 89.4 | 83.7 | -5.7 | 91.6 | 78.2 | -13.4 |
| 1차금속 | 68.0 | 52.3 | -15.7 | 84.8 | 73.3 | -11.6 | 91.1 | 74.8 | -16.3 |
| 기계 및 장비 | 74.5 | 63.4 | -11.1 | 85.5 | 77.5 | -8.0 | 94.0 | 84.3 | -9.7 |
| 전자 및 정밀기기 | 70.6 | 61.8 | -8.8 | 78.1 | 71.3 | -6.8 | 93.5 | 84.2 | -9.3 |
| 자동차/트레일러 | 76.6 | 65.6 | -11.1 | 84.1 | 78.2 | -5.9 | 94.6 | 84.7 | -9.9 |

자료: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중국의 전자 및 정밀기기 수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1.6%에서 2.3%로 늘어났으나 일본의 경우 6.0%에서 3.5%로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자 및 정밀기기 수출에서 한국 및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다만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자 및 정밀기기의 최종재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한국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2011년 기준으로 47.5%를 나타내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비중을 점유하는데, 분석기간 동안 자국 부가가치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3 참고). 한국 화학물질/화학제품의 최종재 수출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분석해 보면,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일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부가가치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줄어들었지만

표 2-4.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

| 산업구분 | 한국 | | | | 중국 | | | | 일본 | | | |
|-----------|------|------|------|------|------|------|------|------|------|------|------|------|
| | 중국 | | 일본 | | 한국 | | 일본 | | 한국 | | 중국 | |
| | 1995 | 2011 | 1995 | 2011 | 1995 | 2011 | 1995 | 2011 | 1995 | 2011 | 1995 | 2011 |
| 농축수산업 | 0.5 | 2.5 | 1.2 | 1.4 | 0.4 | 0.3 | 0.9 | 0.4 | 0.2 | 0.3 | 0.2 | 1.2 |
| 식품품 가공 | 1.3 | 3.9 | 1.7 | 1.7 | 0.5 | 0.3 | 1.1 | 0.6 | 0.2 | 0.3 | 0.3 | 1.3 |
| 섬유 및 의류 | 5.6 | 10.2 | 5.1 | 2.7 | 3.0 | 0.8 | 3.8 | 1.4 | 0.5 | 0.4 | 1.3 | 4.0 |
| 가죽/기방/신발 | 2.1 | 5.1 | 3.0 | 2.0 | 2.6 | 0.7 | 2.5 | 1.0 | 0.3 | 0.5 | 0.4 | 2.1 |
| 화학물질/화학제품 | 0.7 | 5.3 | 6.4 | 4.4 | 1.4 | 1.0 | 2.7 | 1.6 | 0.3 | 0.6 | 0.2 | 2.3 |
| 고무/플라스틱 | 0.8 | 5.9 | 6.4 | 5.2 | 2.0 | 1.2 | 3.4 | 2.1 | 0.3 | 0.7 | 0.3 | 3.0 |
| 비금속광물제품 | 0.9 | 4.5 | 3.3 | 2.9 | 0.9 | 0.6 | 2.2 | 1.2 | 0.3 | 0.5 | 0.3 | 1.7 |
| 1차 금속 | 1.3 | 6.2 | 7.3 | 5.6 | 0.9 | 0.7 | 3.6 | 1.6 | 0.6 | 1.1 | 0.4 | 2.3 |
| 기계 및 장비 | 0.9 | 6.8 | 7.3 | 5.1 | 1.0 | 1.2 | 3.8 | 2.6 | 0.5 | 1.0 | 0.3 | 3.2 |
| 전자 및 정밀기기 | 1.2 | 8.9 | 8.7 | 4.8 | 1.6 | 2.3 | 6.0 | 3.5 | 0.6 | 0.9 | 0.4 | 3.4 |
| 자동차/트레일러 | 0.8 | 6.6 | 6.8 | 5.2 | 1.0 | 1.3 | 4.2 | 3.1 | 0.4 | 0.9 | 0.3 | 3.1 |

주: 역내부가가치의 비중 계산에서 각국의 국내 부가가치는 제외함.

자료: WIOD DB(검색일: 2015. 2. 20)를 이용하여 계산.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점유하였다(표 2-4 참고).

중국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난 산업이 있는데, 이는 섬유 및 의류 제조업과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이다. 1995~2011년 동안 중국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의 최종재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82.9%에서 86.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81.7%에서 86.0%로 각각 늘어났다(표 2-3 참고). 그 결과 이들 산업의 최종재 수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부가가치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줄어들었다(표 2-4 참고).

한 가지 주목되는 특징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Timmer *et al.* (2015)과 UNCTAD(2013)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같이 GVC가 활발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농축수산업과 경공업은 제외할 경우 자국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자국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Timmer *et al.*(201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자국 부가가치 비중이 EU 각 회원국과 미국 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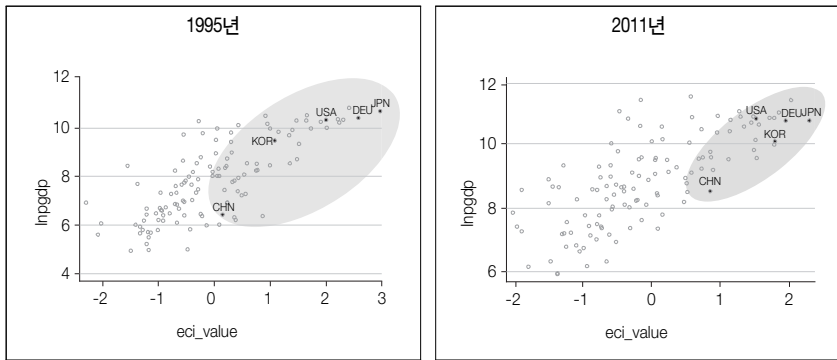
종합하면, 한·중·일 각국은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외국의 부가가치가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한편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Timmer *et al.*(2015)은 2008년을 분석연도로 하여 한·중·일을 포함한 24개국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 바 있다. 그 결과 독일 0.66, 프랑스 0.60, 영국 0.64, 미국 0.77 등이었고, 일본 0.83, 중국 0.79, 한국 0.64로 각각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도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한국보다 작고, 아울러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역내국의 부가가치 비중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보였다. 물론 특정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하고 여타 국가에 비해 이질적 특성을 가질 경우 그 국가는 GVC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점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Hidalgo and Hausmann(2009)이 제시한 Economic Complexity Index(ECI)¹²를 비교하였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6]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한·중·일 3국간 ECI 격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일본과 유사한 ECI를 가지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한·중·일, 특히 중국과 일본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한·중·일보다 GVC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발생할

그림 2-6. 한·중·일 3국 및 전 세계 주요국의 ECI 변화



자료: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DB(검색일: 2015. 7. 2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검색일: 2015. 7. 25).

12) Hidalgo and Hausmann(2009)은 각국이 생산하는 품목의 다양성과 이질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생산구조의 복잡성 지수를 제안하였다. IMF(2015)는 Hidalgo and Hausmann(2009)가 제안한 지수가 GVC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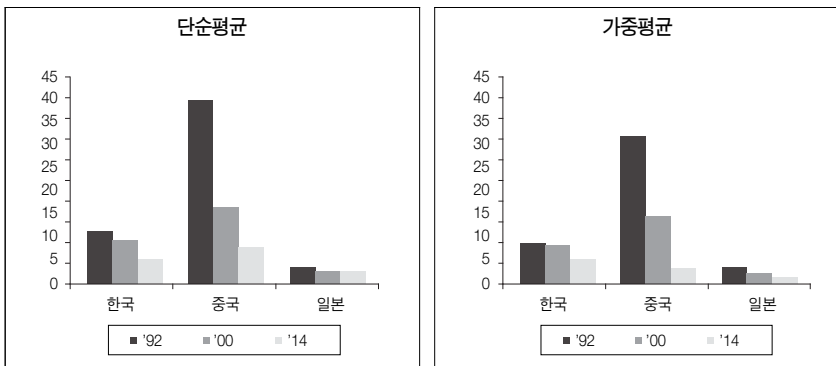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간 무역이 최근 둔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가치사슬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한·중·일 각국이 무역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는 그동안 폐지되거나 인하되어 왔다(그림 2-7, 표 2-5 참고). 한국의 경우 1995년에 무관세 품목이 66개(1.4%)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705개(14.3%)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무관세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입 비중을 계산한 결과, 최근 한국의 역내수입에서 이들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입 규모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2-7. 한·중·일의 관세율 변화



주: 실효관세율 기준.

자료: TRAINS DB(검색일: 2015. 10. 22).

은 분석기간 동안 각각 0.5%에서 40.5%, 0.2%에서 29.4%로 크게 늘어났다.

중국도 한국과 같이 무관세 품목이 1995년에 75개에서 2013년에 334개로 늘어났고, 아울러 관세수준이 0~5% 이내(무관세 제외)에 있는 품목이 125개에서 1,117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중국의 대한 및 대일 수입규

표 2-5. 한·중·일 3국의 관세구조(HS 6단위 기준)

| | | 관세율 | 0 | 0<T≤5 | 5<T≤10 | 10<T≤15 | 15<T |
|----------|----------|----------|-------|-------|--------|---------|------|
| 한국 | 1995 | 품목수 | 66 | 522 | 3,911 | 6 | 305 |
| | | 품목 비중 | 1.4 | 10.9 | 81.3 | 0.1 | 6.3 |
| | | 대중 수입 비중 | 0.5 | 30.6 | 64.8 | 0.4 | 3.7 |
| | 2013 | 대일 수입 비중 | 0.2 | 5.1 | 94.1 | 0.1 | 0.5 |
| | | 품목수 | 705 | 620 | 2,882 | 325 | 385 |
| | | 품목 비중 | 14.3 | 12.6 | 58.6 | 6.6 | 7.8 |
| | 대중 수입 비중 | 40.5 | 18.9 | 34.5 | 3.8 | 2.3 | |
| | 대일 수입 비중 | 29.4 | 16.5 | 53.1 | 0.6 | 0.4 | |
| | 중국 | 1995 | 품목수 | 75 | 125 | 244 | 689 |
| 품목 비중 | | | 1.5 | 2.5 | 5.0 | 14.0 | 77.0 |
| 대한 수입 비중 | | | 0.1 | 0.3 | 4.6 | 18.2 | 76.7 |
| 2013 | | 대일 수입 비중 | 0.1 | 0.7 | 5.0 | 24.9 | 69.3 |
| | | 품목수 | 334 | 1,117 | 2,132 | 787 | 472 |
| | | 품목 비중 | 7 | 23 | 44 | 16 | 10 |
| | 대한 수입 비중 | 31.3 | 25.5 | 38.7 | 2.7 | 1.9 | |
| | 대일 수입 비중 | 26.3 | 19.2 | 43.4 | 6.1 | 5.0 | |
| | 일본 | 1995 | 품목수 | 2,187 | 1,686 | 573 | 197 |
| 품목 비중 | | | 45.0 | 34.7 | 11.8 | 4.1 | 4.4 |
| 대한 수입 비중 | | | 67.5 | 12.7 | 15.0 | 1.7 | 3.1 |
| 2013 | | 대중 수입 비중 | 43.9 | 10.0 | 34.0 | 4.9 | 7.2 |
| | | 품목수 | 2,519 | 1,537 | 535 | 91 | 151 |
| | | 품목 비중 | 52.1 | 31.8 | 11.1 | 1.9 | 3.1 |
| | 대한 수입 비중 | 60.0 | 34.2 | 3.2 | 1.2 | 1.3 | |
| | 대중 수입 비중 | 71.8 | 5.6 | 13.1 | 7.9 | 1.6 | |

주: HS 6단위별.

자료: TRAINS DB(검색일: 2015. 10. 22);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4. 30)를 이용하여 계산.

모에서 무관세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31.3% 및 26%로 1995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관세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의 대한 및 대일 수입 비중은 각각 56.8% 및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한국 및 중국보다 무관세 품목이 가장 많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품목의 52.1%인 2,519개가 속하였다. 일본의 대한 및 대중 수입규모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0% 및 71.8%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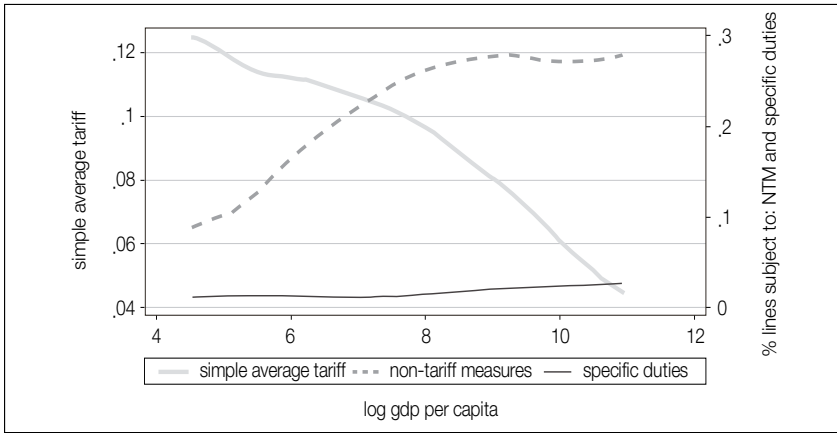
이처럼 한·중·일 3국은 분석기간 동안 무관세 혹은 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품목에 대한 역내수입 비중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나. 비관세장벽

Hoekman and Nicita(2011)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관세수준은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그림 2-8 참고).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으로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 TBT와 SPS 등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이 그동안 인하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역내국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무관세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6], [표 2-7] 및 [표 2-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국의 비관세조치의 개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였다. 즉, 시행 혹은 발의된 비관세조치는 한국의 경우 2003~2008년 동안 평균 78.3건을 기록하였으나, 2009~2014년 중에는 평균 11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 동안 98.1건에서 215.8건, 82.2건에서 97.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림 2-8. 소득수준별 관세와 비관세장벽



자료: Hoekman and Nicta(2011), p. 2070.

표 2-6. 한국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연도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계 |
|------|-----|-----|-------|--------------|------|-----|------|-----|
| 2003 | 19 | 27 | 0 | 28 | 0 | 20 | 0 | 74 |
| 2004 | 16 | 27 | 0 | 16 | 0 | 14 | 0 | 59 |
| 2005 | 19 | 21 | 0 | 24 | 0 | 6 | 1 | 64 |
| 2006 | 29 | 25 | 0 | 28 | 0 | 15 | 1 | 82 |
| 2007 | 37 | 49 | 0 | 12 | 0 | 15 | 0 | 98 |
| 2008 | 33 | 46 | 0 | 14 | 0 | 17 | 0 | 93 |
| 2009 | 66 | 51 | 0 | 12 | 0 | 4 | 0 | 129 |
| 2010 | 56 | 29 | 0 | 6 | 0 | 3 | 0 | 91 |
| 2011 | 45 | 23 | 0 | 57 | 0 | 2 | 0 | 125 |
| 2012 | 78 | 40 | 0 | 2 | 0 | 2 | 0 | 120 |
| 2013 | 53 | 31 | 0 | 2 | 0 | 13 | 0 | 86 |
| 2014 | 90 | 31 | 0 | 0 | 0 | 11 | 0 | 121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합계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7. 중국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연도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계 |
|------|-----|-----|-------|--------------|------|-----|------|-----|
| 2003 | 28 | 28 | 0 | 0 | 0 | 54 | 0 | 56 |
| 2004 | 22 | 37 | 0 | 0 | 0 | 44 | 1 | 59 |
| 2005 | 108 | 15 | 0 | 0 | 0 | 40 | 1 | 123 |
| 2006 | 62 | 4 | 0 | 0 | 0 | 34 | 0 | 66 |
| 2007 | 90 | 4 | 0 | 0 | 0 | 16 | 0 | 94 |
| 2008 | 185 | 6 | 0 | 0 | 0 | 18 | 2 | 191 |
| 2009 | 206 | 98 | 0 | 0 | 3 | 29 | 2 | 307 |
| 2010 | 63 | 254 | 0 | 0 | 3 | 23 | 1 | 320 |
| 2011 | 91 | 171 | 0 | 0 | 2 | 11 | 2 | 264 |
| 2012 | 83 | 26 | 0 | 0 | 2 | 14 | 1 | 111 |
| 2013 | 81 | 92 | 0 | 0 | 1 | 19 | 0 | 174 |
| 2014 | 48 | 69 | 0 | 0 | 2 | 20 | 14 | 119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합계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8. 일본의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 연도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계 |
|------|-----|-----|-------|--------------|------|-----|------|-----|
| 2003 | 45 | 19 | 0 | 21 | 0 | 0 | 0 | 85 |
| 2004 | 22 | 21 | 0 | 37 | 1 | 0 | 0 | 81 |
| 2005 | 27 | 22 | 0 | 8 | 0 | 0 | 0 | 57 |
| 2006 | 32 | 21 | 0 | 28 | 1 | 0 | 0 | 82 |
| 2007 | 45 | 28 | 0 | 26 | 0 | 4 | 0 | 99 |
| 2008 | 52 | 23 | 0 | 14 | 0 | 4 | 0 | 89 |
| 2009 | 39 | 24 | 0 | 20 | 0 | 0 | 0 | 83 |
| 2010 | 30 | 30 | 0 | 17 | 0 | 0 | 4 | 77 |
| 2011 | 33 | 25 | 0 | 63 | 0 | 0 | 0 | 121 |
| 2012 | 37 | 23 | 0 | 40 | 0 | 1 | 38 | 100 |
| 2013 | 43 | 22 | 0 | 28 | 0 | 0 | 0 | 93 |
| 2014 | 34 | 65 | 0 | 10 | 0 | 1 | 0 | 109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합계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한·중·일의 비관세조치를 보면 세계추세와 마찬가지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의 개수가 여타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비관세장벽 시행 패턴을 살펴보면, 한·중·일 간의 차별적인 특징도 보였다(표 2-9, 2-10, 2-11 참고). 일본의 경우 농축수산업 등과 같은 1차 산업에서 SPS, 특별긴급수입제한과 수량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수량제한조치 개수도 한국과 중국보다 높았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TBT 개수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였다.

표 2-9. 한국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
| 1차 산업 | 32 | 180 | 3 | 136 | 0 | 0 | 8 |
| - 가공식품 | 17 | 30 | 0 | 70 | 0 | 0 | 1 |
| - 가공광물 | 9 | 0 | 0 | 0 | 0 | 0 | 7 |
| - 고무·화학 | 43 | 30 | 0 | 14 | 0 | 12 | 10 |
| - 가죽제품 | 1 | 2 | 0 | 0 | 0 | 0 | 8 |
| - 종이·목재 | 7 | 10 | 0 | 0 | 0 | 7 | 4 |
| - 의류·직물 | 4 | 0 | 0 | 0 | 0 | 5 | 1 |
| - 비금속광물 | 8 | 0 | 0 | 0 | 0 | 2 | 3 |
| - 금속제품 | 7 | 0 | 0 | 0 | 0 | 3 | 1 |
| 일반기계 및 장비 | 20 | 0 | 0 | 0 | 0 | 1 | 31 |
| - 전자제품 | 24 | 0 | 0 | 0 | 0 | 0 | 3 |
| - 운송기기 | 10 | 0 | 1 | 0 | 0 | 0 | 12 |
| - 기타 제조품 | 22 | 0 | 0 | 0 | 0 | 0 | 19 |
| 계 | 204 | 252 | 4 | 220 | 0 | 30 | 108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누적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종이·목재, 고무·화학 등에도 SPS가 시행 또는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PS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식물의 안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목재 포장재의 병해충부착 유무에 대한 위생검역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2-10. 중국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
| 1차 산업 | 71 | 308 | 0 | 0 | 2 | 2 | 10 |
| 가공식품 | 32 | 141 | 0 | 0 | 0 | 1 | 0 |
| 가공광물 | 47 | 53 | 0 | 0 | 0 | 0 | 9 |
| 고무·화학 | 380 | 158 | 0 | 0 | 2 | 59 | 14 |
| 가죽제품 | 14 | 1 | 0 | 0 | 0 | 0 | 1 |
| 종이·목재 | 42 | 12 | 0 | 0 | 0 | 5 | 5 |
| 의류·직물 | 40 | 1 | 0 | 0 | 0 | 0 | 2 |
| 비금속광물 | 127 | 1 | 0 | 0 | 0 | 2 | 5 |
| 금속제품 | 143 | 5 | 0 | 0 | 1 | 8 | 5 |
| 일반기계 및 장비 | 276 | 2 | 0 | 0 | 0 | 0 | 4 |
| 전자제품 | 209 | 0 | 0 | 0 | 0 | 0 | 4 |
| 운송기기 | 149 | 0 | 0 | 0 | 0 | 0 | 3 |
| 기타 제조품 | 287 | 0 | 0 | 0 | 0 | 6 | 5 |
| 계 | 1,817 | 682 | 0 | 0 | 5 | 83 | 67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누적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1. 일본의 산업별 비관세조치 개수

| | TBT | SPS | 세이프가드 | 특별긴급 수입제한 | 상계관세 | 반덤핑 | 수량제한 |
|-----------|-----|-----|-------|--------------|------|-----|------|
| 농축수산업 | 46 | 422 | 1 | 192 | 0 | 0 | 40 |
| 가공식품 | 45 | 83 | 0 | 94 | 0 | 0 | 12 |
| 가공광물 | 23 | 1 | 0 | 0 | 0 | 0 | 12 |
| 고무·화학 | 150 | 20 | 0 | 0 | 0 | 4 | 42 |
| 가죽제품 | 7 | 1 | 0 | 0 | 0 | 0 | 30 |
| 종이·목재 | 12 | 0 | 1 | 0 | 0 | 1 | 34 |
| 의류·직물 | 6 | 0 | 0 | 7 | 0 | 0 | 14 |
| 비금속광물 | 12 | 2 | 0 | 0 | 0 | 0 | 26 |
| 금속제품 | 38 | 2 | 0 | 0 | 0 | 0 | 16 |
| 일반기계 및 장비 | 60 | 0 | 0 | 0 | 0 | 0 | 12 |
| 전자제품 | 60 | 0 | 0 | 0 | 0 | 0 | 20 |
| 운송기기 | 66 | 0 | 0 | 0 | 0 | 0 | 12 |
| 기타 제조품 | 40 | 0 | 0 | 0 | 0 | 0 | 66 |
| 계 | 565 | 531 | 2 | 293 | 0 | 5 | 336 |

주: 위의 수치는 시행(entered into force) 혹은 발의(initiated)된 개수의 누적임.
 자료: WTO I-TIP DB(검색일: 2015.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소결

한·중·일 3국은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에서 본 바와 같이,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결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한·중·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본 장에서 살펴본 비관세조치의 시행 혹은 발의 건수가 한·중·일 3국간 무역을 저해해 왔는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한·중·일 비관세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4. 소결



본 장은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은 비관세조치가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¹⁴⁾ 제2절은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서술했으며, 제3절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이론적 배경

TBT,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는 시장에서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함으로써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와 SPS는 비관세장벽이 되어 반대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1]은 TBT,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상반된 두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 특정상품의 품질이 생산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는 생산자와 달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 상품의 소비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상품의 수요는 완전정보하에서의 수요보다 낮으며, 이것을 나타낸 수요곡선이 BD이다. 비관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가격 W에서 완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OA만큼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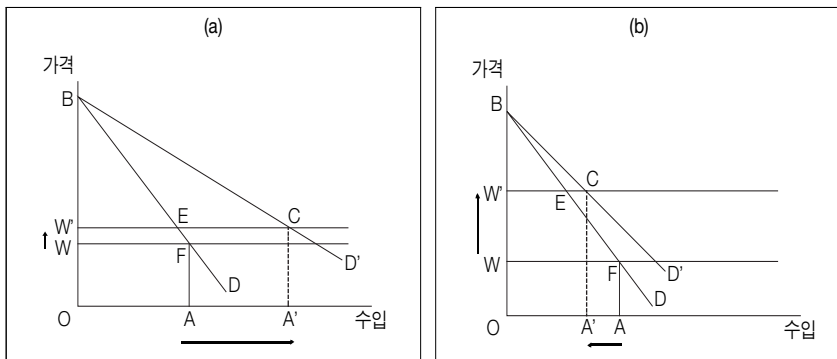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생산자로 하여금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준용한 상품만을 수입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

14) WTO(2012b), p. 63; Cadot, Munadi, and Ing(2015), p. 63 참고.

을 수입하지 않는 TBT 조치를 시행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되고 수입수요는 BD' 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술요건이 강화되면 소비자에게는 수입상품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가 되며, 표준의 제정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 해당상품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한다. 즉 소비자는 수입된 상품이 건강과 안전 관련 표준을 충족하였다는 확신이 생겨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추가로 발생하여 상품의 수입가격은 W' 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이는 위생검역기준 등 SPS 조치를 충족하는 농산품에도 적용된다.

[그림 3-1]에서 TBT 혹은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과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a)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b)에 나타나 있다. (a)는 순응비용의 증가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b)는 반대로 순응비용의 증가에 비해 수요의 증가가 작다는 차이가 있다. (a)의 경우 수입수요의 증가가 실제 균형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BEC만큼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후생이 $WW'EF$

그림 3-1. 비관세조치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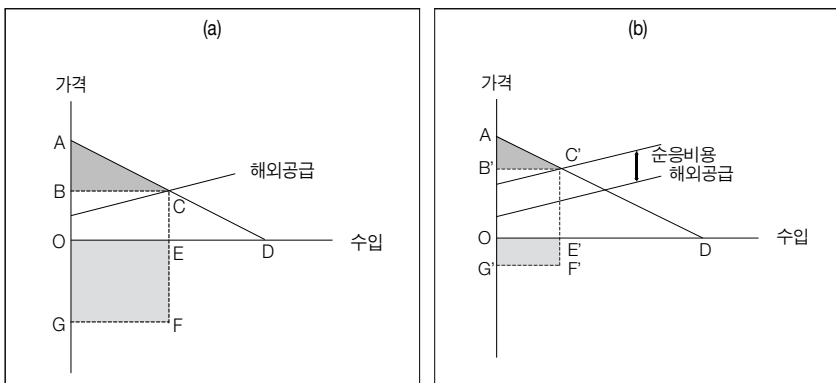


자료: WTO(2012b), p. 63.

만큼 감소한다. 이 경우 후생의 증가분이 후생의 감소분보다 커서 비관세 조치의 후생에 대한 순효과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b)의 경우는 순운비용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커져 전체적인 수입수요가 BD에서 BD'로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균형소비와 수입은 AA'만큼 감소하고 이로 인해 WW'EF만큼의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순운비용이 수입수요의 증가효과보다 큰 경우에 비관세조치는 무역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수입수요의 증가효과가 순운비용보다 크면 비관세조치가 무역과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비관세조치는 또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가령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환경인증 혹은 품질인증이 된 상품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림 3-2의 (a)는 비관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 경우 균형소비는 OE가 되고, 소비자후생

그림 3-2. 비관세조치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



자료: Cadot, Munadi, and Ing(2015), p. 57.

은 ABC가 된다. 반면 단위당 상품소비의 위험을 OG라 하면 OE만큼의 소비로 인하여 OGEF만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결국 (a)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ABC보다 부정적인 OGEF가 큰 경우 이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후생은 사실상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입상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면 기업이 직면하는 추가적인 순운비용으로 인해 (b)에서와 같이 가격은 $B' > B$ 로 상승한 새로운 균형 C'에 도달한다. 소비도 $OE' < OE$ 로 감소하여 소비자 후생을 나타내는 삼각형 $AB'C'$ 은 ABC보다 작아졌지만, 단위당 소비 위험인 $OG' < OG$ 과 균형소비인 $OE' < OE$ 의 감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관세조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부정적인 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경우 오히려 후생과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 해소의 목적이 아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조치, 혹은 의도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 되어 무역과 사회적인 후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부는 비관세조치중 비관세장벽을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식별된 조치만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여러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본 장에서는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주요 선행연구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는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와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목록활용방법(inventory-based approach)이다. Nicita and Gourdon(2013)은 26개국을 대상으로 MAST(Multiple Agency Support Team)가 새롭게 구축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국의 산업별, 비관세조치별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특히 TBT나 SPS와 같은 조치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TBT는 총무역량의 30%, SPS는 15%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MAST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는 HS6단위에서 비관세조치를 보고하고 있는 등 현존하는 가장 상세한 데이터로 여러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특정한 한해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의 계산은 불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에 일본과 중국은 포함되거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¹⁶⁾

둘째로는 가격차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연구로 Cadot *et al.* (2015)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 Ad-Valorem Equivalent)의 세계평균은 산업별로 5%에서 27%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여러산업 중에는 동식물 분야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가

15) SPS 특성상 총무역의 15% 정도에만 영향을 끼치나 농산품에 한해서는 무역량의 60%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16) 1990년대 후반에 UNCTAD는 처음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를 UNCTAD TRAINS database를 통해 공개한 바 있으나, 이는 지난 10년간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무역정책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높으며, 비관세조치의 종류 중에는 SPS와 TBT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연구로는 하태정, 문선웅(2014)이 한국과 중국 간 TBT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으며, 김태윤, 김경필(2015)은 중국시장의 김치류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셋째로는 중력방정식 등을 통한 수량적인 방법이며, 목록활용방법과 함께 본 보고서의 제3장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만큼 기존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TBT나 SPS와 같은 규제적 조치가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WTO (2012b)는 규제적 조치가 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믿었던 기존의 통념을 깨고 표준(standard)이 총무역을 오히려 증가시킴을 실증적으로 결론을 내린 가장 최초의 연구로 Swann, Temple, and Shurmer(1996)을 꼽고 있다. Swann, Temple, and Shurmer(1996)을 비롯하여 TBT와 SPS가 무역원활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는 규제적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보여준다.¹⁷⁾

규제적 조치는 특히 산업별로 무역에 상이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Moenius(2004)는 국가표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실증분석결과, 표준은 농업무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조업무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o and Qiu(2010)도 중국의 TBT가 농산품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오히려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장용준, 서정민(2014)은 산업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교역상대국의

17) Bao and Qiu(2012), p. 693.

TBT로부터 무역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무역은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Disdier, Fontagné, and Mimouni(2008)는 SPS와 TBT 조치가 모두 OECD 농산품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TBT나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는 특히 기술과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의 대선진국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Bao and Qiu(2012)는 개발도상국의 TBT는 선진국의 수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또 다른 개발도상국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반면 선진국의 TBT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수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제적 조치는 기업의 규모별로도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요건을 갖추기 위해 상품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생산의 가변비용을 상승시킨다. 또한 검사기구, 검역절차와 기술전문가와의 협업 등과 관련하여 초기에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정비용이 상승된다. Fontagné *et al.*(2015)은 제한적인 SPS 조치가 취해지는 국가에 대한 기업의 외연적, 내연적인 수출이 저해됨을 보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본 장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중·일의 무역과 비관세조치를 고려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2002년부터

WTO 적용관세율과 WTO에 통보된 비관세 조치현황의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⁸⁾ 분석을 위해 사용된 비관세장벽 데이터의 출처는 2013년 1월 16일 Trade Data Day에 처음으로 공개된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이다. WTO I-TIP는 여러 사일로에 산재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회원국 각국의 연도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WTO I-TIP에 나타난 비관세장벽의 개수를 바탕으로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계산하여 비관세장벽에 영향을 받는 무역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러한 비율이 한·중·일의 역내외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비관세조치의 수준(incidence of non-tariff-measures)은 일반적으로 빈도지수(Frequency Index) 혹은 범위비율(Coverage Ratio)로 측정된다. WTO I-TIP에서 제공하는 TBT/SPS 데이터는 WTO 통보문에 토대한 것으로 비관세조치를 통보하는 국가가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상품의 HS코드를 세부적으로 보고할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¹⁹⁾ 통보국이 HS2단위처럼 광범위한 HS코드를 기입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은 과대계측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HS2 수준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상품이 있는데, 비관세조치가 특정 HS2 수준 아래의 모든

18) UN Comtrade가 한국 2014년 무역통계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실증분석의 범위를 2002년부터 2013년으로 제한하였다.

19) 종종 TBT/SPS 통보문에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HS코드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WTO I-TIP는 상황에 따라 “WTO interpreted HS”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WTO interpreted HS”라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였다.

상품에 적용된다고 가정되는 반면 HS4 수준 이상의 세부적인 HS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 구분되면서 더 정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계산된다. 한·중·일 중에서는 일본이 HS6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반면 중국은 WTO 가입 초창기에 종종 HS2 단위로 보고하기도 하여 통보문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비교는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특정조치에 영향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HS2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HS2 단위 아래에 있는 상품은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계산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통보되는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HS코드의 상세함의 차이가 있겠으나, 비관세조치의 강도의 차이를 국가별로, 시간별로 비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간주한다.²⁰⁾

또한 본 연구는 HS4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는 HS6 단위를 바탕으로 한 몇몇 선행연구에 비하여 빈도지수나 범위비율이 다소 과대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Evenett and Wermelinger (2010)나 장용준, 서정민(2014) 등 다수의 연구가 HS4 단위로 분석하고 있고, 더욱이 중국은 HS6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본 보고서에는 HS4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한다.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의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도지수는 비관세조치의 유무에만 토대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은 상품의 비율을 나타낸다. j 국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빈도지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1]과 같다.

20) 실제로 Evenett and Wermelinger(2010)는 HS4 단위 데이터에 토대한 GTA(Global Trade Alert)와 HS6 단위의 데이터에 토대한 WTO(2010b)의 보고를 비교하며, GTA의 범위비율이 WTO의 것보다 더 크게 측정되는 이유 중 하나로 HS코드의 세부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분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FI_j = \left[\frac{\sum D_i M_i}{\sum M_i} \right] * 100 \quad \text{[식 3-1]}$$

여기서 D_i 는 HS4 단위로 구분되는 상품 i 에 한 개 이상의 비관세장벽이 적용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고 M_i 는 상품 i 의 수입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빈도지수의 경우,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상품의 비율을 나타내고 수입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관세조치가 전체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은 범위비율로 수입국인 j 의 전체의 수입금액 중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2]와 같다.

$$CR_j = \left[\frac{\sum D_i V_i}{\sum V_i} \right] * 100 \quad \text{[식 3-2]}$$

여기서 D_i 는 앞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며, V_i 는 HS4 단위로 구분되는 상품 i 의 수입금액을 나타낸다.

1) 시간에 따른 추세

먼저 중국 TBT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은 WTO 가입 직후인 2002년에는 매우 낮았다가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3 참고). 중국의 SPS 조치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200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11년에도 소폭 증가한다. 이 기간에 늘어난 TBT와 SPS 건수는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 기간 시행된 급격한 관세하락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TBT의 경우

2009년부터 범위비율이 90%를 넘고 빈도지수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2장에서 본 것처럼, 중국의 TBT 조치가 전 산업에 걸쳐 다수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SPS의 경우 TBT보다는 범위비율과 빈도지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SPS 특성상 농업품목에 집중적으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TBT와 SPS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은 중국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한 편이고 수치도 낮은 편이다(그림 3-4 참고).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2009년에 최고치를 보이고 이후에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TBT는 빈도지수가 60%, 범위비율은 80%에 달한다. 또한 SPS는 범위비율이 2009년에 13%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빈도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 TBT와 SPS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모두 낮은 편이다(그림 3-5 참고).²¹⁾ 한국도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에 TBT와 SPS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증가 후에도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UNCTAD(2010)는 특히 우리나라가 2009년 7월 리튬 2차 전지를 강제표준 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보호주의 장벽을 높였다고 지적했다.²²⁾ 2013년의 우리나라 TBT의 빈도지수는 약 40%, 범위비율은 25%이며, SPS의 빈도지수는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SPS의 범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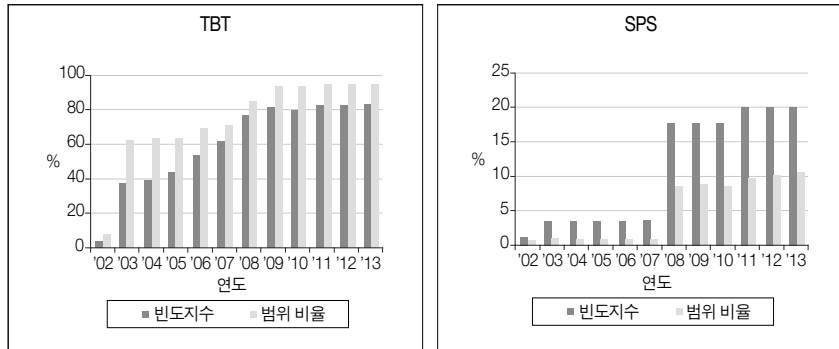
21) Disdier, Fonragné, and Mimouni(2008)는 HS6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54개국의 2004년 수입국 농산품 범위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범위비율은 0, 일본은 23.52%로 나타났다.

22) UNCTAD(2010), p. 7.

은 2009년에 약 4%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향추세를 보인다.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비관세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Evenett and Wermelinger(2010)가 시사하는 바와 WTO(2012b)가 비관세조치의 정형화된 사실로 지적하는 바와 일치한다. 한·중·일 3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비관세조치 강도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와 일치한다. GTA는 WTO I-TIP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분류하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은 241개, 일본은 111개, 우리나라는 85개의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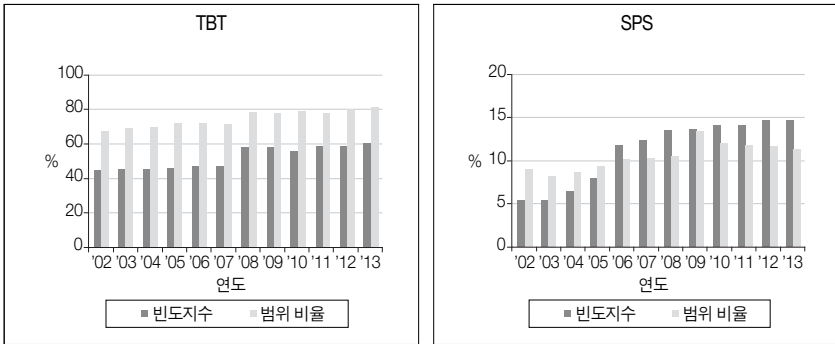
그림 3-3. 중국의 연도별 TBT/SPS 수준



자료: 수입액은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6. 11), 관세율은 WTO Tariff Analysis Online(검색일: 2015. 6. 4), 비관세장벽은 WTO I-TIP DB(검색일: 2015. 6.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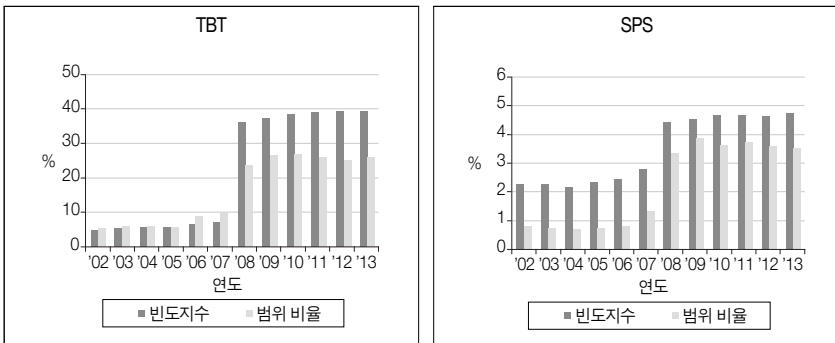
23) GTA Database(검색일: 2015. 8. 20).

그림 3-4. 일본의 연도별 TBT/SPS 수준



자료: 수입액은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6. 11), 관세율은 WTO Tariff Analysis Online(검색일: 2015. 6. 4), 비관세장벽은 WTO I-TIP DB(검색일: 2015. 6.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한국의 연도별 TBT/SPS 수준



자료: 수입액은 UN COMTRADE DB(검색일: 2015. 6. 11), 관세율은 WTO Tariff Analysis Online(검색일: 2015. 6. 4), 비관세장벽은 WTO I-TIP DB(검색일: 2015. 6.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산업별 분포

전술한 바와 같이 SPS는 특성상 1차 산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산업의 TBT와 SPS의 빈도지수나 범위비율을 계산하면 SPS가 TBT보다 낮게 계측된다.²⁴⁾ 이에 한·중·일 3국의 TBT/SPS 조치의 산업별 빈도지수

는 [표 3-1]에, 범위비율은 [표 3-2]에 나타내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1차
 상품과 가공1차 상품에 TBT와 SPS가 집중되어 있으며, TBT가 SPS보다
 상대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상품은 한·중·일 모두 TBT와 SPS의 범위비율, 즉 각 조치가 무역
 에 미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한국의 SPS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보다
 는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SPS 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1차 상품의 경우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중국은 97.36%의 무역이

표 3-1. 한·중·일의 산업별 규제적 조치의 빈도지수(2013년)

(단위: %)

| | 중국 | | 일본 | | 한국 | |
|---------|-------|--------|-------|--------|-------|-------|
| | SPS | TBT | SPS | TBT | SPS | TBT |
| 1차 상품 | 85.23 | 93.18 | 82.61 | 86.96 | 43.33 | 81.11 |
| 가공1차 상품 | 93.07 | 96.04 | 44.66 | 76.70 | 12.50 | 94.23 |
| 가공광물 | 3.48 | 100.00 | 0.00 | 83.78 | 0.00 | 44.35 |
| 고무·화학 | 37.87 | 81.66 | 26.47 | 91.18 | 2.35 | 49.41 |
| 가죽 | 0.00 | 55.00 | 0.00 | 15.00 | 5.00 | 5.00 |
| 종이·목재 | 0.00 | 17.91 | 0.00 | 64.18 | 1.49 | 53.73 |
| 의류·직물 | 0.00 | 92.31 | 0.00 | 2.34 | 0.00 | 2.92 |
| 비금속광물 | 0.00 | 92.19 | 3.03 | 30.30 | 0.00 | 45.45 |
| 철강·금속제품 | 0.00 | 67.81 | 4.76 | 30.61 | 0.00 | 10.81 |
| 일반기계 | 2.35 | 100.00 | 0.00 | 100.00 | 0.00 | 31.76 |
| 전자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55.32 |
| 운송기기 | 0.00 | 100.00 | 0.00 | 81.25 | 0.00 | 56.25 |
| 기타운송기기 | 0.00 | 100.00 | 0.00 | 0.00 | 0.00 | 9.52 |
| 정밀기기 | 0.00 | 71.74 | 0.00 | 71.74 | 0.00 | 26.09 |
| 기타제조품 | 0.00 | 50.00 | 0.00 | 52.00 | 0.00 | 22.00 |

자료: 저자 계산.

24) 이러한 이유로 TBT와 SPS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한정해서 분석
 한다. Disdier, Fontagné, and Mimouni(2008)가 그 예이다.

SPS의 영향을 받으며, 일본은 51.86%, 한국은 19.05%의 무역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TBT 조치의 경우는 중국이 99.42%로 가장 높고, 한국 또한 94.98%로 높게 나타나며, 일본이 74.36%로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SPS는 1차 상품과 가공1차 상품 이외에도 고무/화학의 수입에도 적용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이 46.57%, 중국이 35.59%, 한국이 8.0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SPS 조치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보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전 산업에 걸쳐 TBT의 범위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

표 3-2. 한·중·일의 산업별 규제적 조치의 범위비율(2013년)

(단위: %)

| | 중국 | | 일본 | | 한국 | |
|---------|-------|--------|-------|--------|-------|-------|
| | SPS | TBT | SPS | TBT | SPS | TBT |
| 1차 상품 | 96.84 | 98.38 | 96.56 | 90.44 | 80.03 | 96.53 |
| 가공1차 상품 | 97.36 | 99.42 | 51.86 | 74.36 | 19.05 | 94.98 |
| 가공광물 | 1.49 | 100.00 | 0.00 | 90.03 | 0.00 | 2.92 |
| 고무·화학 | 35.59 | 86.62 | 46.57 | 92.40 | 8.09 | 61.51 |
| 기축 | 0.00 | 54.15 | 0.00 | 90.39 | 0.40 | 3.99 |
| 종이·목재 | 0.00 | 41.32 | 0.00 | 84.45 | 10.70 | 30.84 |
| 의류·직물 | 0.00 | 99.02 | 0.00 | 0.92 | 0.00 | 3.03 |
| 비금속광물 | 0.00 | 98.85 | 6.71 | 12.62 | 0.00 | 54.18 |
| 철강·금속제품 | 0.00 | 80.94 | 2.95 | 29.24 | 0.00 | 11.82 |
| 일반기계 | 0.35 | 100.00 | 0.00 | 100.00 | 0.00 | 46.09 |
| 전자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32.70 |
| 운송기기 | 0.00 | 100.00 | 0.00 | 95.75 | 0.00 | 63.57 |
| 기타운송기기 | 0.00 | 100.00 | 0.00 | 0.00 | 0.00 | 5.16 |
| 정밀기기 | 0.00 | 96.89 | 0.00 | 89.69 | 0.00 | 37.12 |
| 기타제조품 | 0.00 | 82.25 | 0.00 | 65.43 | 0.00 | 74.44 |

자료: 저자 계산

한 높은 수치는 중국의 일부 세부적이지 않은 HS코드 통보방식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본 보고서의 제4장을 비롯하여 여타 보고서에서도 보고하고 있듯이, 중국의 높은 기술장벽에 기인한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기계(HS84), 전자(HS85), 운송기기(HS87)는 WTO TBT 통보문에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이행규칙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명시되어 100%의 범위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은 제한적인 수입이 허용되거나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중고기준이 불명확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과 일치한다.²⁵⁾ 일본도 일반기계와 전자산업의 범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이 2013년 7월 1일에 일본경제산업청이 「전기용품안전법」을 개정하여 동 법령이 일반기계와 전자산업 등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일본보다 TBT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차 상품, 비금속광물,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와 기타제조품 산업에 대해서는 TBT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금속광물산업(HS68, 69, 70, 71)의 경우 우리나라는 안전과 품질표시 관련 산업제품 개정안이 HS71(진주 및 귀금속)²⁶⁾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개정안은 피부와 접촉하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한 안전과 품질 표시와 관련하여 니켈이 0.5 μ g/cm²/week만큼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 기준을 새로이 포함하고 있다.

25)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 pp. 27~28.

26) 권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및 자료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은 시간에 따른 산업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비관세조치가 얼마나 무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단 한 개의 조치라도 그 조치로 인하여 상품의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 동 조치가 여타 조치에 비해 매우 제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SPS, TBT와 같은 규제적 조치가 2002~2013년 동안 한·중·일의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gravity equation)을 이용한다. 중력모형은 양자간 무역의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계량모형으로 Tinbergen(1963)이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은 GDP로 계산되는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에 토대하며, 확장된 중력모형은 그 외에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다. 여기서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비관세조치인 TBT와 SPS를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4)는 중력모형에 다자적 무역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누락변수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 수입국의 더미변수를 포함하거나, Baier and Bergstrand(2009)가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Baier and Bergstrand(2009)의 방법은 더미변수를 포함함으로써 거리 등 추정할 수 없는 변수의 추정이 가능해지면서도 추정계수의 편의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²⁷⁾ 또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과 국가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치에 표본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교정하기 위하여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도록 한다.²⁸⁾

Bao and Qiu(2010) 등의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실증 방식은 다음과 같다.

$$Trade_{i,j,t}^k = \beta_0 + \beta_1 \ln PRGDP_{i,t} + \beta_2 \ln PRGDP_{j,t} + \beta_3 \ln dist_{i,j}^* + \beta_4 \ln(1 + \tau_{i,t}^{k*}) + \beta_3 TBT_{i,t}^{k*} + \beta_4 SPS_{i,t}^{k*} + \gamma^k + \phi_t + \epsilon_{i,j,t}^k$$

[식 3-3]

여기서 i 는 한·중·일, j 는 한·중·일의 무역상대국, k 는 HS2 단위로 분류된 산업,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Trade_{i,j,t}^k$ 는 t 시점에 k 산업의 j 국으로부터 i 국으로의 수입규모를 나타낸다. $PRGDP_{i,t}$ 는 한·중·일 3국 중 i 국의 t 년도 1인당 실질GDP를, $PRGDP_{j,t}$ 는 3국의 무역상대국 j 국의 t 년도의 1인당 실질 GDP를 나타낸다. 이 외에 지리적인 무역비용으로 한·중·일과 무역상대국간의 거리인 $dist_{ij}^*$ 를 추정식에 포함했다. 또한 정책적 무역장벽 중 관세장벽인 $\tau_{i,t}^{k*}$ 는 수입국인 i 국의 산업과 연도에 따라 변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본 실증분석의 주요변수에 해당하는 비관세조치 변수인 TBT와 SPS는 각각 [식 3-1]과 [식 3-2]를 바탕으로 계산된 TBT와 SPS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로 측정되었다. 범위비율은 수입액

27)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식을 통해 다자적 저항을 통제한다.

$$B_{ij}^* = B_{i,j} - (1/N_j) \sum_j (B_{i,j}) - (1/N_i) \sum_i (B_{i,j}) + (1/N_i)(1/N_j) \sum_j \sum_i (B_{i,j})$$

단 여기서 B_{ij} 는 거리,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의 양국간 무역비용을 나타낸다.

28) Santos Silva and Tenreiro(2006)는 기존의 로그 선형화(log linearized) 모형은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된 계수에 편이(bias)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을 기준으로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빈도지수는 수입액이 아닌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범위비율의 경우, 비관세조치의 존재가 범위비율을 계산하는 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의 액수에 영향을 끼치는 내생성 문제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범위비율과 빈도지수가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바,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각각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강도를 계측하기 위해 실증분석 추정식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 외에 Chen and Novy(2011)가 지적인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변수 γ^k , 거시경제적 변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 ϕ_t 를 추정식에 포함했다. $\epsilon_{i,j,t}$ 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식 3-3]을 추정하기 위해 수입을 UN Comtrade Database²⁹⁾에서 구하였다. 또한 각국의 1인당 실질GDP인 $PRGDP_{i,t}$ 와 $PRGDP_{j,t}$ 는 World Bank의 WDI³⁰⁾에서 추출한 실질GDP와 인구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양국간 거리의 출처는 CEPII Database이며,³¹⁾ 각국의 HS8 단위 관세율은 WTO Tariff Analysis Onlin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³²⁾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관세율 $\tau_{i,j,t}$ 는 최혜국 실행관세율(Most Favored Nation[MFN] applied tariff)로 한·중·일 각국이 매년 HS8 단위로 보고하는 관세율을 HS2 단위로 단순평균을 낸 것이다. [표 3-3]은 분석 자료의 요약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비관세조치는 전술한 바와

29)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5. 6. 11).

3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검색일: 2015. 11. 3).

31) CEPII Database(검색일: 2014. 7. 30).

32) WTO Tariff Analysis Online(검색일: 2015. 6. 4). 동 데이터에서는 2012년도의 중국 관세율을 제공하지 않는바, 2012년도의 관세율은 interpolate 값으로 대체되었다. 이 interpolate 값은 중국의 관세율이 시간의 추세를 따라 선형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값이다.

같이 WTO I-TIP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계산하였으며, 비관세조치의 요약 통계량은 [표 3-4]에 나타내었다.³³⁾

표 3-3. 분석자료의 요약 통계량

| 변수 | 관측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Trade_{i,j,t}^k$ | 490,752 | 41,509 | 679,245 | 0,000 | 76954,67 |
| $\ln PRGDP_{i,t}$ | 490,752 | 2,470 | 1,211 | 0,273 | 3,626 |
| $\ln PRGDP_{j,t}$ | 490,752 | 8,268 | 1,627 | 4,968 | 11,364 |
| $\ln dist_{i,j}$ | 490,752 | 9,119 | 0,501 | 6,862 | 9,885 |
| $\ln(1 + \tau_{i,j,t})$ | 490,752 | 0,089 | 0,119 | 0,000 | 1,343 |

자료: 저자 작성.

표 3-4. 비관세조치의 요약 통계량

| 변수 | 관측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 $SPS_{i,t}^k$ | 빈도지수 | 490,752 | 0,123 | 0,296 | 0 | 1 |
| | 범위비율 | 490,752 | 0,135 | 0,316 | 0 | 1 |
| $TBT_{i,t}^k$ | 빈도지수 | 490,752 | 0,396 | 0,449 | 0 | 1 |
| | 범위비율 | 490,752 | 0,406 | 0,460 | 0 | 1 |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결과

[표 3-5]는 TBT와 SPS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지수를 활용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표 3-6]은 범위비율을 활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추

33) 단 WTO I-TIP의 경우 TBT와 SPS 통보문을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의 개수를 보고하는데, TBT와 SPS 통보문의 70%는 HS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샘플의 대표성 문제는 표본 편위(sample bias) 문제 가능성이 있으나, 더 나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용준, 서정민(2014)과 Bao and Qiu(2012)도 WTO TBT 통보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정식의 수입국의 1인당 실질GDP 변수는 한·중·일만을 고려하는데, 중국의 경우 1인당 실질 GDP가 낮음에도 일본과 한국보다 수입량이 많아 음(-)의 부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수출국의 1인당 실질GDP에 대한 추정계수는 중력모형이 시사하는 대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가 나타나며, 양국간의 지리적인 거리변수도 예상대로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보다 농업이 지리적인 거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는 Djankov, Freund, and Pham(2010)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패성 상품과 같은 시간민감품목의 무역이 상품이동의 지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5.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무역에 대한 효과: 빈도지수

| | 농업 | 제조업 |
|---------------------------|---------------------------|---------------------------|
| $\ln PRGDP_{i,t}$ | -0.543*** (0,0931) | -0.341*** (0,116) |
| $\ln PRGDP_{j,t}$ | 0.485** (0,198) | 0.560*** (0,154) |
| $\ln dist_{i,j}^*$ | -0.0705*** (0,00961) | -0.0259** (0,0117) |
| $\ln(1 + \tau_{i,j,t}^*)$ | 0.00226 (0,00224) | -0.0121 (0,0228) |
| $TBT_{i,t}^{k*}$ | 0.000744 (0,000655) | -0.00318*** (0,000955) |
| $SPS_{i,t}^{k*}$ | -0.00372*** (0,000540) | -0.000745* (0,000426) |
| industry FE | Y | Y |
| year FE | Y | Y |
| N | 153,720 | 461,160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농업은 HS01~24, 제조업은 HS25~97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정책관련 무역비용 변수인 관세율, TBT와 SPS에 대한 추정계수를 [표 3-5]와 [표 3-6]을 통해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무역은 관세장벽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TBT나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TBT와 SPS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농업상품에 대해서는 SPS가, 제조업상품에서는 TBT가 유의하게 무역을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뿐 아니라 수출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비관세조치는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 3-6.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무역에 대한 효과: 범위비용

| | 농업 | 제조업 |
|---------------------------|---------------------------|---------------------------|
| $\ln PRGDP_{i,t}$ | -0.588*** (0,0962) | -0,344*** (0,114) |
| $\ln PRGDP_{j,t}$ | 0,485** (0,198) | 0,560*** (0,154) |
| $\ln dist_{i,j}^*$ | -0.0733*** (0,00903) | -0.0266** (0,0117) |
| $\ln(1 + \tau_{i,j,t}^*)$ | 0,00383* (0,00230) | -0.0129 (0,0230) |
| $TBT_{i,t}^{k*}$ | 0,000644 (0,000687) | -0.00313*** (0,000933) |
| $SPS_{i,t}^{k*}$ | -0,00233*** (0,000410) | -0,000435 (0,000384) |
| industry FE | Y | Y |
| year FE | Y | Y |
| N | 153,720 | 461,160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농업은 HS01~24, 제조업은 HS25~97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경제에서는 비관세장벽이 수입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잠재적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출국을 한·중·일로 제한하여 한·중·일 역내무역의 저해요인을 살펴본 추정결과는 [표 3-7]과 [표 3-8]과 같다. 한·중·일의 역내외 무역에 대한 중력방정식을 추정했던 [표 3-5]와 [표 3-6]과는 달리 거리변수는 추정식에서 제외했다. 이는 한·중·일이 1일 운송권에 들어가 있어 거리의 차이가 한·중·일 역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ln PRGDP_{i,t}$ 의 추정계수는 농업의 경우 양(+)¹⁾의 부호가, 제조업의 경우는 음(-)²⁾의 부호가 나타나는데, 이는 농업의 경우

표 3-7.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빈도지수

| | 농업 | 제조업 |
|---------------------------|----------------------|-----------------------|
| $\ln PRGDP_{i,t}$ | 0.757*** (0.192) | -0.439*** (0.0929) |
| $\ln PRGDP_{j,t}$ | -0.728*** (0.162) | -0.199*** (0.0571) |
| $\ln(1 + \tau_{i,j,t}^*)$ | -0.804 (0.500) | 2.676 (3.024) |
| $TBT_{i,t}^{k*}$ | -0.252 (0.215) | 0.124 (0.179) |
| $SPS_{i,t}^{k*}$ | -0.703*** (0.251) | -0.0410 (0.127) |
| industry FE | Y | Y |
| year FE | Y | Y |
| N | 1,728 | 5,181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농업은 HS01~24, 제조업은 HS25~97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1인당 실질 GDP가 높은 일본이나 한국의 수입이 중국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조업은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의 활성화로 제조업의 수입과 수출이 많은 중국의 영향으로 $\ln PRGDP_{i,t}$ 과 $\ln PRGDP_{j,t}$ 모두 유의하게 음(-)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상품의 수출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의 수출량이 많아 $\ln PRGDP_{j,t}$ 의 추정계수가 농업의 경우 유의하게 음(-)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면, 1인당 실질 GDP의 추정계수가 일반적인 중력모형에서 시사하는 양(+)수가 아닌 음(-)수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형오류(model misspecification)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역을 한·중·일 3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3-8. 규제적 조치의 한·중·일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범위비율

| | 농업 | 제조업 |
|---------------------------|-----------------------|-----------------------|
| $\ln PRGDP_{i,t}$ | 0.708*** (0.196) | -0.433*** (0.0889) |
| $\ln PRGDP_{j,t}$ | -0.721*** (0.0830) | -0.203*** (0.0586) |
| $\ln(1 + \tau_{i,j,t}^*)$ | -0.572 (0.308) | 2.506 (2.958) |
| $TBT_{i,t}^{k*}$ | -0.245 (0.280) | 0.0926 (0.185) |
| $SPS_{i,t}^{k*}$ | -0.583*** (0.123) | 0.0272 (0.152) |
| industry FE | Y | Y |
| year FE | Y | Y |
| N | 1,728 | 5,181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농업은 HS01~24, 제조업은 HS25~97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한·중·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나타낸 [표 3-7]과 [표 3-8]에도 관세장벽은 3국의 역내무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SPS는 한·중·일의 역내농업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두 표에서 모두 보여 준다. TBT의 경우 [표 3-7]과 [표 3-8]에서 모두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TBT는 최종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중간재수입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한·중·일의 무역은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여러 품질인증과 위생검역절차는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무역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순응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이 되어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후생도 낮출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품질이 낮은 부품의 수입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관세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TBT와 SPS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의 시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09년을 기점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2012b)가 밝힌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의 WTO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³⁴⁾ 애초에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1930년대의 보복적인 무역장벽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는 각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보다는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TBT와 SPS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산업별·국가별로 비교·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TBT와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산품에 대한 SPS는 한·중·일 모두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국의 가공1차 산품에 대한 SPS가 일본과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중·일 간의 식품가치사슬의 구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뿐 아니라 일반기계와 전자기에 대한 TBT 조치가 중국과 일본이 매우 높아 제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 산업에 대한 한·중·일의 분업화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범위비율이나 빈도지수는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중·일 비관세조치의 무역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중·일의 무역에서 관세장벽은 더 이상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TBT와 SPS로 인한 비관세장벽이 유의한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TBT가 한·중·일의 제조업무역에,

34)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에 따른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의 상승현상은 UNCTAD(2010)와 Evenett and Wermelinger(2010)에도 보고되고 있다.

SPS는 농산품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된 TBT와 SPS가 비관세장벽이 되는 예는 제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중·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4. 한·중·일 3국의 주요쟁점 분석
5. 소결



TBT와 SPS와 같은 규제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 식물 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비관세조치의 완전한 철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국제표준에 맞지 않은 각국의 자의적인 산업표준과 기술제정 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입검사절차 등은 불필요하게 무역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제3장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며, 본 장에서는 한·중·일의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의 특징 및 주요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한·중·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1994년 WTO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생산의 효율성과 무역원활화에서의 국제표준과 적합성검사 시스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체결하였다. 한편 ‘WTO SPS 협정(SPS Agreement)’ 역시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 결과로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문에서는 임의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SPS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TBT 협정과 SPS 협정에 따르면, 교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TBT와 SPS 조치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이해당사국에 사전인지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역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TBT와 SPS 통보문 건수의 증감이 각국 보호주의적 비관세조치의 증감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WTO 각 회원국의 규제적 조치 동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한·중·일의 통보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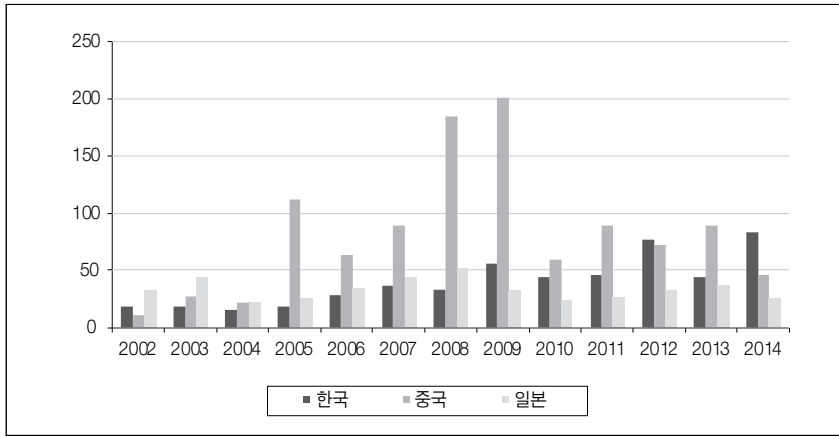
가. TBT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685건에 달하는 기술규제 통보문을 제출하였고, 2014년 기준 누적 건수가 전체 회원국 중 10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통보문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부분 격년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8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4-1 참고).

반면 중국은 1995년 이후 1,115건에 달하는 기술규제 통보문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 기준 누적 건수가 전체 회원국 중 미국, EU, 브라질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이 WTO에 제출한 통보문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85, 201건을 기록하며 중국의 활발한 기술규제 대응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는 통보문 건수가 6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도에는 47건으로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그림 4-1 참고).

일본의 경우 1995년 이후 통보문 제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과 2009년에 한 차례씩 대폭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등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및 중국과 함께 WTO 회원국 중 통보문 제출 건수 상위 10위에 들며, 2014년에는 8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4-1. 한·중·일 3국의 TBT 통보문 건수(2002~14년)



자료: WTO,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2003~201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일본이 2014년에 제출한 통보문 건수는 28건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누계 총 747건의 통보문을 제출한 바 있다(그림 4-1 참고).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건수³⁵⁾는 30건이며, 우리나라가 회원국에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일본(67건, 4위), 중국(57건, 6위)과 함께 WTO 회원국 전체 중 7번째로 활발하게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였고, 4번째로 많은 제기를 받은 바 있다. 동 기간에 우리나라의 연간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대체로 적은 편이나, 2011년에는 특정무역현안의 제기 건수가 7건, 피제기 건수가 6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35) WTO 회원국이 통보한 신규 또는 기존 기술규제가 무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 TBT/SPS 위원회 정례회의(1년 3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한다.

의 대회원국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많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 제기되는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극소하며 2014년도에는 0건을 기록하였다(표 4-1 참고).

중국은 1995년 이후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57건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바 있으며, 회원국으로부터 49건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다. 특히 2012년에 1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제기하였으며, 당해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4~5건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활발한 참여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중국은 2014년 기준 누적 건수가 49건으로 EU에 이어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많은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다(표 4-1 참고).

일본은 동북아시아 3개국 중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활발하게 제기하는 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에 대해 1995년 이후 2014년까지 총 67건을 제기하였다. 반면 일본에 대한 타국의 특정무역현안 제기 누적 건수는 11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가 집계되었다. 특히 일본은 2009년 이후 6년간 0건의 피제기 건수를 기록하는 등 동북아시아 3국 중 가장 제기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고).

표 4-1. 한·중·일의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2002~14년)

| |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한국 | STC 제기 | 3 | 2 | 1 | 1 | 3 | 2 | 3 | 6 | 3 | 7 | 4 | 3 | 4 |
| | STC 피제기 | 3 | 2 | 1 | 1 | 1 | 1 | 2 | 4 | 2 | 6 | 2 | 2 | 0 |
| 중국 | STC 제기 | 1 | 2 | 1 | 4 | 7 | 4 | 5 | 5 | 4 | 3 | 10 | 4 | 4 |
| | STC 피제기 | 5 | 1 | 1 | 3 | 7 | 3 | 4 | 5 | 4 | 6 | 2 | 3 | 4 |
| 일본 | STC 제기 | 1 | 1 | 2 | 2 | 8 | 4 | 5 | 9 | 2 | 11 | 2 | 4 | 4 |
| | STC 피제기 | 1 | 2 | 0 | 0 | 3 | 0 | 1 | 0 | 0 | 0 | 0 | 0 | 0 |

자료: WTO TBT IMS(검색일: 2015. 8. 13).

나. SPS

SPS 통보문은 일반통보문과 긴급통보문 외에 동등성, 추가, 수정, 개정, 부속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일반통보문은 적절한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하여 정식 절차를 밟는 국내 SPS 조치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하는 수단이며, 긴급통보문은 갑작스러운 조류인플레인지 발병과 같이 정식 절차를 거쳐 SPS 조치를 도입할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통보문 수단이다.³⁶⁾ 그리고 그 밖에 동등성, 추가, 수정, 개정, 부속 등은 이 두 통보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³⁷⁾

[그림 4-2]는 한·중·일 3국의 일반통보문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은 누적 건수 총 496건의 일반통보문을 SPS 위원회에 제출한 세계 일곱 번째로 많은 SPS 조치 제·개정을 통보한 국가이다. 특히 2007~2009년 동안 SPS 규정의 제·개정 통보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2007년에 한국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

중국은 누적 1,115건의 일반통보문을 SPS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일반통보문 수치이다. 2014년 9월에서 2015년 9월까지의 기간에는 총 320건의 일반통보문(전체 비중의 27%)을 제출하며 가장 많은 SPS 조치 제·개정 통보를 한 국가로 기록되었다.³⁸⁾ 2002년에 159건의 많은 일반통보문을 제출한 것은 WTO 가입조건으로 기존의 모든 SPS 조치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의 통보문은

36) 신성균(2009), p.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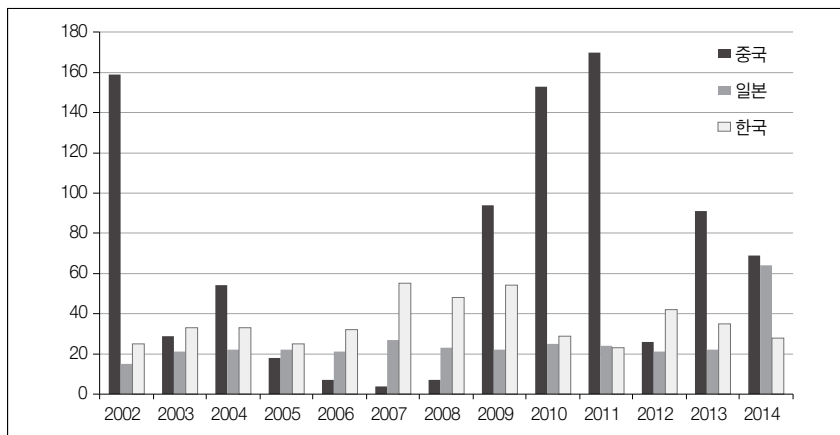
37) SPS 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 9월 기준 누적 건수는 일반통보문 1만 2,771건, 긴급통보문 1,725건, 추가·수정 통보문 4,545건이다(WTO SPS Secretariat 2015a, p. 3).

38) WTO SPS Secretariat(2015a), p. 7.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2000년대 후반 멜라닌 분유과동, 가짜달걀,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과동,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법령 제·개정을 활발하게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⁹⁾

일본은 일반통보문 기준으로 전 세계 아홉 번째로 많은 식품안전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한 국가이다. 1995년 이후 20개 안팎의 꾸준한 식품안전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SPS 위원회에 통보해 온 일본은 2014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을 거치면서 통보문 제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 해 동안 일본이 제출한 일반통보문 수치만 살펴보면 세계 5위로 상위권이다.⁴⁰⁾ 2015년에도 7월

그림 4-2. 한·중·일 3국의 SPS 통보문 건수(2002~14년)02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5. 7. 12); WTO SPS Secretariat(2015a)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9) 류예리 외(2014), p. 38.

40) WTO SPS Secretariat(2015a), p. 7.

말 기준 이미 43건의 통보문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는 한·중·일 3국의 특정무역현안 추세를 보여 준다. 한국은 회원국들로부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건의 사안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일본이 제기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과 관련된 건으로 2015년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바 있다. 한편 한국이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건은 전무하다.

중국은 3국 중 가장 활발히 특정무역현안 논의의 장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이 피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에는 중국 수입식품절차와 요구조건의 복잡성, 투명성 결여와 광우병(BSE)과 관련된 동물건강의 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2월 기준 현안해결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활발한 특정무역현안 제기국 중 하나인데 2002년부터 중국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중 6건이 일본의 식품안전 기준 개정에 대한 사안이었다.

일본 또한 꾸준히 특정무역현안 피제기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국가로 식품첨가제기준, 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은 2013년 처음으로 2건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표 4-2. 한·중·일의 SPS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2002~14년)

| |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연도별 현안 건수 ¹⁾ | | 42 | 29 | 21 | 31 | 10 | 16 | 16 | 13 | 22 | 16 | 16 | 24 | 14 |
| 한국 | STC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C 피제기 | - | 2 | 1 | - | - | 2 | 1 | - | - | - | - | 1 | - |
| 중국 | STC 제기 | 3 | 2 | 4 | 5 | 1 | 2 | 3 | 3 | 2 | 1 | 2 | 2 | 1 |
| | STC 피제기 | 6 | 1 | 2 | - | - | 5 | - | 2 | 1 | 2 | 1 | 4 | - |
| 일본 | STC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STC 피제기 | 3 | 4 | 1 | 6 | - | - | 1 | 1 | 1 | 1 | 2 | 2 | - |

주: 1) 각 연도의 신규특정무역현안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b), pp. 8-2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바 있는데, 이는 각각 한국과 중국·대만을 겨냥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의 건이다.

한·중·일 3국의 SPS 조치와 관련된 무역분쟁 사례는 한국이 6건, 일본이 2건이었다.⁴¹⁾ 한국과 관련된 WTO 제소의 건은 총 6건으로 신선과일에 대한 검사절차(미국 제기, WT/DS3, DS41), 냉동육과 다른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문제(미국 제기, WT/DS5), 생수(캐나다 제기, WT/DS20)는 패널 설치 이전에 합의되었다. 한편 2009년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BSE 소고기 수입제한에 대해 제소(WT/DS391)한 건은 패널구성 이후 2012년에 상호 합의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대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및 세습,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2015년 5월 WTO에 제소(DS495)하였으며, 2015년 9월에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되었다.

일본과 관련된 제소 건수는 2건으로 신선과일에 대한 품종별 검사요건(미국 제기, DS76)과 부란병으로 인한 사과 제한조치(미국 제기, DS245)가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SPS 협정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없었다.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규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TBT 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의 인증절차와 인증제도를 소개하며, SPS 조치는 잔류허용기준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41) WTO SPS Dispute Settlement 홈페이지 참고(검색일: 2015. 10. 30).

가. TBT

1) 한국

한국의 기술규제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개정된 법률 아래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관련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포함하여 7개⁴²⁾의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에는 국가표준을 비롯하여 8개의 표준 유형과 적합성평가, 표준인증심사제,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제3조), 이어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제21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및 인증 시험결과의 사용인정⁴³⁾(제25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및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⁴⁴⁾(제26조) 등 양자 또는 지역간 TBT 협상 시 기초가 될 법령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표준화법」은 광공업품 및 산업 활동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표준 제정 및 심의(제2장), 적합성인증(제3장), 「산업표준화법」의 촉진(제4장) 등 공산품에 대한 표준화 법률을 제·개정하여 「산업표준화법」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제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을 장려(제29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문은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행한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하되,

42)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43)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법령은 2014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4)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법령은 2014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TBT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good regulatory practice)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자국 내 제·개정된 법률을 반영한다.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표준에는 국가표준, 국제표준, 단체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이 있다. 그중 국가표준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WTO TBT 협정과 APEC SCSC의 권고에 따라 국가표준 KS표시인증이 국제표준과 일치하거나 부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2만 555종(2015년 12월 말 기준)의 한국표준 중 국제표준(ISO/IEC 등)에 대한 부합화 대상 표준은 1만 5,951종이다.⁴⁵⁾ WTO TBT 협정에 따르면 인증 시 규격은 해당분야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토대로 적용하며, 국가표준은 ISO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하여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기준 1만 5,951개의 대상표준에 대해 1만 3,818개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부합화율이 92.5%에 달한다.⁴⁶⁾ 국가표준 인증획득을 위해 제품이나 평가대상을 표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⁴⁷⁾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 인증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8개가 있으며, 이 중 13개의 법정강제인증마크⁴⁸⁾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되었다.

45) 국가기술표준원(2013).

4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15. 12. 3) 참조.

47) 국가기술표준원(2013).

48) 이 법정강제인증마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중국

중국 내 기술규제정책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AQSIQ) 산하 중국국가표준화관리국(SAC)의 중앙집권 체제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동 기관에서 표준화 관련 국가정책개발, 국가표준화 전략수립, 국가표준의 제·개정 등 중국의 국가표준화 통합 관리 및 전체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국가표준, 산업 및 분야별 표준, 지역표준 및 기업표준 등 네 가지 중국의 대표 표준은 「표준화법」(1988)과 「표준화법 이행을 위한 규정」(1990) 아래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표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 및 채택된다.⁴⁹⁾ 중국의 국가표준은 타당성 조사, 연구, 프로젝트 설계, 제안된 표준의 초안 작성, 검토, 평가, 승인 및 공표 등의 8단계 과정을 거쳐 SAC에 의해 최종 공표된다.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AQSIQ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중국 내 대표 기술규제정책인 단일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를 포함한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CCC 제도와 관련해서는 CNCA가 공식 지정한 13개의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에서 인증 신청 및 획득이 가능하다.

CNCA는 자발적인인증제도와 강제인증제도를 모두 관리하며, 양 제도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강제 제품인증 대상품목은 '강제 제품 인증 카탈로그(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Catalogue)⁵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CCC 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강제표준은 대체로 의약품, 식품, 농약 등에

49) 한승준(2009).

50) AQSIQ와 CNCA가 공동으로 승인 및 공표한 동 카탈로그에는 2015년 기준 19종 323개 품목이 포함됨.

〈의약품〉

중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 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입 시마다 CFDA의 수입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의 인정기준이 없어, 수입약품은 중국 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CFDA 심사평가에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비용은 한 품목당 CNY 4만 5,000위안이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된다. 단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는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외에 CFDA는 비교 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개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2014. 6. 1. 시행) 제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중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의 유효성이 증명 가능한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의 유효성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할 때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2014. 6. 1. 시행) 제2장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CFDA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접수된 자료를 기술평가부서로 전달하고, 기술평가부서에서 심사평가한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하도록 규정하는 등 심사기간 역시 많이 소요된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 검사기간 및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 | 검사기간 | 검사비용 | 위생허가증 발급기간 |
|----------|-------|------------------------|------------|
| 일반화장품 | 2개월 | CNY 4,000~8,000 | 8개월 |
| 특수용도 화장품 | 3~6개월 | CNY 10,000~35,000 (개당) | 8개월 |

상기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립스틱의 경우 1호, 2호, 3호 등 호수별로 모두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 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북경과 천진의 경우 새로운 대리상이 수입을 할 경우 수권서가 필요 없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수권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는데,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제품출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과정에 보완절차가 없어 오타, 오기 등 미미한 시정사항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화장품 라벨(중국어)상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에서 발췌 요약.

해당하며, 강제국가표준코드는 ‘GB’, 강제지역표준은 ‘DB’와 중국 성(Province)별 코드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letter)로 시작(예: 상해의 강제지역표준코드: DB14/)⁵¹⁾ 한다.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국가표준(GB)’과 ‘권고국가표준(GB/T)’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건강이나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필수 표준 규격에 대해서는 강제국가표준을, 이 밖에는 대부분 권고국가표준 규격을 부여한다.

중국은 강제인증제도 외에도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가칭)」을 공포하여 중국 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⁵²⁾ 하지만 자발적 인증제도는 중국 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CCC제도를 제외한 모든 인증제도로 특히 해외인증(KS, KC, CE, UL 등)도 포함되나

51) WTO Secretariat(2014), p. 74.

52) 정환우(2013).

중국 내 인증기관 설립 제한 및 자격 요건 강화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인증제도 외에도 중국은 특히 IT 제품, 독성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기술규제를 시행 중이다. 2014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서 발간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글상자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는 달리 「일본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국가표준, 정보통신 분야의 일본공업표준(이하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원안 및 업계 표준 작성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TBT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의 주요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산업성(이하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후생노동성(이하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국토교통성(이하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에서 담당한다.⁵³⁾

- 산업표준화법(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1949)
-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3)
- 제약, 의료기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화장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에 관한 법(The Act on Securing Quality, Efficacy and Safety of Pharmaceuticals, Medical Devices, Regenerative and Cellular Therapy

53) WTO Secretariat(2015)에서 발췌.

Products, Gene Therapy Products, and Cosmetics, 1960)

- 농림산물의 표준화 및 적절한 라벨링에 관한 법(Act on Standardization and Proper Labelling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1950)
- 건축기준법(Building Standard Law, 1950)
- 전기용품취체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1961)
- 측정법(Measurement Act, 1992)

일본의 JIS마크 표시제도의 도입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49년부터 2014년까지 19개 분야를 아우르는 총 1만 525개의 JIS 규격을 제정하였다. WTO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인증마크는 약 97%가 ISO/IEC(가이드 21-1) 국제표준(ISO 및 IEC 표준)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일본의 표준 관련 정책은 일본의 경제산업성⁵⁵⁾ 산하에 설치된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ization Committee)에서 총괄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아래 표준 부회 및 적합성 평가 부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부회 아래 전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⁵⁶⁾

TBT에 관한 쟁점은 크게 5개의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표 4-3 참고), 최근 국가표준시스템에서 민간 표준화기관인 일본규격협회(JSA)를 거점으로 한 협력기관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54) WTO Secretariat(2015).

55)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2000년도 말 직제개편에 따라 통상산업성에서 경제산업성으로 변경되면서 공업기술원 내 표준부가 경제산업성 내 산업기술환경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일본 국가표준화업무는 산업기술환경국 하위 6개 부서(기술기준·표준·적합성평가정책과, 표준개발 및 계획과, 국가표준 정책과, 정합성 평가과, 제품인증 운영과, 측정 및 지적 인프라과)로 운영되고 있다.

56) 일본의 표준화 체계, <http://blog.daum.net/standards/219>(검색일: 2015. 11. 13) 참고.

일본 JISC 아래 운영되고 있는 ‘부회’와 ‘전문위원회’⁵⁷⁾는 JIS 심의기능만을 부여하며, 300여 개의 심의단체에 국제표준 대처 및 개발을 위탁한다. WTO Secretariat(2015)에 따르면, 현재(2014년 10월 기준)까지 21개국(및 연합국) 내 약 8,732개의 국내(7,873개) 및 국외(859개) 공장이 JIS마크(JIS Mark scheme)를 인증받았다. 동 마크제도는 국내 판매를 위해 JIS마크 부착이 요구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다. 일본은 JIS마크 인증을 국내 및 국외 공장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여하며, 동 마크제도는 ISO/ IEC 17065 지침에 근거하여 부합화한다.⁵⁸⁾ 현재까지 24개의 기관이 JIS마크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동 인증업무를 시행한다.

표 4-3. 일본의 TBT 이슈 담당 기관

| | |
|--------------|--|
| 경제산업성 (MET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 JIS마크 제품 인증기관을 위한 인정 시스템(JASC) • 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 일본 도량형기구(NMIJ) • 제품기술 및 평가 기구(NITE) • 일본 국제인정기구(IA Japan) • 분석기술인정제도(MLAP) • 계량표준시약(JCSS) • 제품평가 기술 기반기구(JNLA)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 총무성 (MI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위원회(TTC) • 일본 케이블TV 기술협회(JCTEA) |
| 농림수산성 (MAF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농수산품에 대한 표준 채택과 품질라벨링 표준시스템 및 JAS 시스템에 부합한 표시 도입의 의무 |
| 외무성 (MOF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협정에 대한 통보 권한 |
| 후생노동성 (MHL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의리기기 종합기구(PMDA) |

자료: WTO Secretariat(2015)에서 발췌.

57) 표준부회, 적합성평가부회, 지적기반 정비특별위원회, 소비자정책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함.

58) WTO Secretariat(2015), p. 36.

나. SPS

1) 한국

한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상승, 기술발달로 인한 위해 미생물 노출기회 증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이 증가함에 따른 국내외 사회·환경적 요구에 따라 EU와 일본과 같은 사전주의·예방원칙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⁶⁰⁾

SPS 협정과 관련된 한국 주요 법률과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수입식품 검사지침」, 「유전자변형식품 규격」, 등이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2015. 2. 3, 시행 2016. 2. 4)하였는데, 이는 이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를 강화함으로써 통관단계 중심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전 단계 현지안전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⁶¹⁾ 상기 언급한 법률과 규정들에 의거하여 한국 위생 검역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

59) 식품의약품안전처(2015a), pp. 91~92. 한·EU FTA, 한·미 FTA 체결 등 세계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2004년 대비 수입 건수는 2014년 79%(185,299 → 353,216건), 물량은 19%(11.5 → 14.2백만 톤)의 증가추세를 기록하였다. 2014년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통량 대비 34%, 섭취열량 대비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b), p. 2.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검색일: 2015. 11. 01).

부, 산업통상자원부, 총리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산하기관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⁶²⁾ 참고로 한국의 SPS협정 공식 문의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한국은 2013년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여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관련 주요업무는 △ 식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 기능성 인증 및 허가관리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 수입식품안전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⁶³⁾ 한편 식약처는 수산물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와 6개국 7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위생 약정국 가공시설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수출 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⁶⁴⁾

제도적 차원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11월 현재 과학적 식품안전 기준·규격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상품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간 상이한 기준과 규격에 의한 안전관리 문제와 통상마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은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잔류허용기준제도에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도입하여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0.01ppm이하 기준을 일률 적용하여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다.⁶⁵⁾ 구체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

62) 관련 법령에는 「식품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63)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자료, p. 32, file:///C:/Users/user/Downloads/mfds_kor.pdf(검색일: 2015. 11. 1).

64) 식품의약품안전처(2015a), pp. 101~102.

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⁶⁶⁾ 덧붙여 한국은 2014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으로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⁶⁷⁾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한국은 포지티브리스트의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공정상 CODEX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성분규격, 사용기준 등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2015년 11월 현재 지정된 식품첨가물은 화학합성성품 441종, 천연첨가물 213종 및 혼합제제 7종으로 총 661개 품목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⁶⁸⁾ 식품첨가물을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⁹⁾

2) 중국

중국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 이후 식품안전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을 국가정책 최우선순

65) 식품의약품안전처(2015b), 2014년 12월 기준 식품공전상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 Codex 기준 및 유사 농축수산물의 기준적용 원칙을 가진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식약처는 현재 440종의 농식품 농약잔류허용기준과 75종의 인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육류, 낙농품에 대해 82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과 127종의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66) 식품의약품안전처(2015b).

67) 식품의약품안전처(2015a), pp. 116~117.

68) 한국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구, 용기, 포장용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김정선(2015), pp. 3-4; 식약처 식품첨가물 공전 홈페이지(검색일: 2015. 11. 23) 참고.

6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b), p. 18.

위로 두고 있다.

SPS 조치와 관련된 중국 주요 법령에는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조물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농산물품질안전법」 등 19개에 달한다.⁷⁰⁾ 이와 더불어 유제품, 영유아 조제식품, 육류·조류, 바이오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별도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규정(degree)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⁷¹⁾ 특히 2015년 10월 시행된 중국 신규 식품안전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되는 이 신규 식품안전법⁷²⁾은 기존 조항수정에 더해 50조항을 추가하며 식품기업의 책임 규정 강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식품 관리 규정 강화, 특수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전자상거래(E-commerce) 교역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신설 등을 명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⁷³⁾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 등 중국 식품위생 관리기관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⁴⁾

상기 언급한 법률과 규정들에 의거하여 중국 위생검역(SPS)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중국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NHFPC), 농림부,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및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70) 최승환, 박언경(2014), pp. 26-30; WTO Secretariat(2014), p. 76.

71)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p. 19-28.

72) 중국은 2009년 기존 식품위생법을 대체하여 총 10장 104조로 구성된 식품안전법을 제정한다. aT 베이징지사(2015), p. 1.

73) 전형진(2015), p. 6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 7.

7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 8.

등이 있다. 참고로 WTO SPS 위원회 중국 공식 문의처는 중국 상무부 소관이다.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GB)을 충족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이 2012년에 발표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12.5 계획」은 2015년 말까지 식품 생산경영 전 과정의 식품안전통제표준체계를 갖추고 동 기간에 주요 식품의 안전표준을 제·개정할 계획을 담고 있다.⁷⁵⁾ 계획과 같이 중국은 2014년에는 5천 개 이상의 식품안전 위생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WTO SPS위원회에 340여건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을 통보한바 있다.⁷⁶⁾

[글상자 4-2]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가운데 식품첨가물 기준과 잔류허용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록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⁷⁾

한편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은 크게 오염물, 식품중 병원균, 농약, 진균독, 오염물 등이 있다. 이중 농약최대잔류제한량은 387종 농약에 대해 3,650개 잔류제한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농림부는 2020년까지 1만개의 잔류제한량 기준을 규정할 계획에 있다.⁷⁸⁾ 한편 중국은 잔류기준

75) 류에리 외(2014), pp. 39-40.

7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 4, p. 11. 참고로 2015년 9월 중국은 SPS 위원회에 20건 가까이 되는 관련 일반 통보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류(distilled liquor formulated liquor/fermented alcoholic beverages/edible alcohol), 음료, 맥주, 콩(edible soybean meal), 사탕·초콜릿, 곡물가공, 빵류, 팽화식품(puffed food), 곡류 운송 및 저장기준, 통조림, 식용유, 달걀, 수산물, 식초(fermented vinegar) 등에 대한 기준 변경이 포함된다.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검색일: 2015. 11. 9).

77)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p. 11-12.

78)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 14.

설정(import tolerance)에 대해 공식 등록절차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상자 4-2. 중국 주요 식품첨가물 기준과 잔류허용기준

-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GB2760-2015
- 식품첨가제 라벨링표준 GB29924-2013
- 혼합식품 첨가제표준 GB26687-2011
- 식품오염물 제한량 GB2762-2012
- 식품중 진균독(미코톡신) 제한량 GB2761-2011
- 식품중 농약최대잔류 제한량 GB2763-2014
- 식품중 병원균(pathogen) 제한량 GB29921-2013

자료: 류예리 외(2014), p. 40과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5), pp. 12-1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일본

일본의 SPS 조치 연관 법령은 「식품위생법」(1947년 제정, 2014년 일부 개정),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제정, 2013년 일부개정), 「식물방역법」(1950년 제정, 2012년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1951년 제정, 2013년 일부개정), 「사료의 안전성보장 및 품질개선 관련 법령」(Act concerning safety assurance and quality improvement of feed; 1950년 제정, 2013년 일부개정), 「일본농림 규격」(Japanese Agriculture Standard) 등이 있다.⁷⁹⁾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의 SPS 정책은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외무성, 소비자청, 환경성을 중심으로 집행된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위해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업무 등

79) WTO Secretariat(2015), pp. 37-38.

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은 동물사료, 식물, 「일본농림규격」을 기반으로 식품안전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식물위생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⁸⁰⁾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해성 평가는 내각부 소속의 일본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⁸¹⁾ 일본의 SPS협정 관련 공식 문의처의 역할은 외무성이 담당한다.

일본은 잔류허용제도와 식품첨가물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농약, 사료 첨가물 및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제도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은 2006년 5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후생노동성은 기존 1만 개의 잔류허용기준(MRLs)에 더해 국제기준에 따른 758개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잔류허용기준 초안(provisional)을 발표하였다.⁸²⁾ 이후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에 758개의 물질 중 591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여 관련 기준 설정 및 개정추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기준 325개 물질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이다.⁸³⁾

또한 일본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토대하여 식품안전위원회가 검토하고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 규격 및 제조방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⁸⁴⁾ 일본 식품첨가제는 크게 네

8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a), pp. 1-2.

81) WTO Secretariat(2015), p. 39.

8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a), p. 4.

83)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a), p. 4. 일본은 특정무역현안 기준으로 회원국들로부터 SPS규정이 국제기준과 위험평가 절차보다 엄격하다는 문제제기를 받는데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84) 일본의 식품첨가물 대상물은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은 물론 식품에 접촉이 되는 기구 및 용

종류로 구분되며 2015년 11월 현재 지정첨가제 449종, 기존 식품첨가제 365종, 천연향료 600여종, 일반식품첨가제 100여종이 지정되었다.⁸⁵⁾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은 WTO 다자체제의 협정보다 유연성이 있어 TBT와 SPS 조치에 대한 협력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WTO의 TBT, SPS 협정을 넘어선 규정을 WTO+ 규정으로 분류하여 더욱 깊이 있는 통합(deeper integration)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기준 52개국과 총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 또는 타결한 바 있으며, 중국은 2015년까지 19개국과 총 14건의 FTA를 발효 또는 타결했다. 일본은 17개국과 15건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발효 또는 타결했다. 이처럼 한·중·일 3국 모두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고, 한·중·일 FTA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3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국가와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중심으로 3국의 TBT와 SPS와 관련된 FTA 협정문을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포장(예: 식기, 식품 기계, 자동판매기 등), 유아용 장난감, 식품 및 식기류 세정제에 모두 적용된다(김정선 2015, p. 3).

85)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foodadditives/index.html>(검색일: 2015. 11. 23).

가. TBT

우리나라의 경우 15건의 FTA 중 9건의 기체결 FTA 중 TBT 관련 협정문이 별도의 장(Chapter)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14건의 FTA 중 최근 타결된 한·중 FTA를 포함한 6건의 FTA가, 일본은 2건의 EPA만 TBT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EPA 협정문 중 '상품무역(Trade in Goods)'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장에서 TBT 규정을 일부 조항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2008년 ASEAN과의 EPA 이후 발효 또는 타결한 국가와의 EPA에서는 TBT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기체결한 FTA의 TBT 협정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 정의 △ 적용범위 △ 협력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 분쟁해결의 미적용 등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기술규제정책, 협정특성 또는 주요 교역 품목 등 TBT 협정 조항의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3국 모두 WTO TBT 협정문 조항에 근거하여 양자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다(유세별 2015).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부분의 기체결 국가와 평균 10~11개조(article)로 구성된 협정문을 체결한 반면, 일본은 최근에 기체결한 페루, 호주와의 EPA를 제외하고는 7개 이하의 조로 구성된 TBT 협정문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첫 FTA 체결국가인 칠레와의 TBT 협정에서부터도 적합성 평가절차(이하 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투명성, 기술협력 및 TBT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11개 조항의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등 TBT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다(표 4-4 참고).

표 4-4.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조항

| | 조항 | 한·칠레 | 한·EU | 한·페루 | 한·미국 | 한·호주 | 한·캐나다 |
|----|------------|------|------|------|------|------|-------|
| 1 | 적용범위 | 0 | 0 | 0 | 0 | 0 | 0 |
| 2 | 정의 | 0 | 0 | 0 | 0 | 0 | 0 |
| 3 | TBT 협정 재확인 | 0 | 0 | 0 | 0 | 0 | 0 |
| 4 | 적합성 평가절차 | 0 | 0 | 0 | 0 | 0 | - |
| 5 | 투명성 | 0 | - | 0 | 0 | 0 | 0 |
| 6 | 표준 | 0 | 0 | 0 | 0 | 0 | 0* |
| 7 | 협력 | 0 | 0 | 0 | 0 | 0 | 0** |
| 8 | TBT 위원회 | 0 | 0 | 0 | 0 | 0 | 0 |
| 9 | 정보교환 | - | - | 0 | 0 | 0 | - |
| 10 | 기술규정 | - | 0 | 0 | 0*** | 0 | - |
| 11 | 표시 및 라벨링 | - | 0 | - | - | 0 | - |
| 12 | 그 외 | | +2 | | | +1 | |

주: *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및 기술규정

**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의료장비, 의약품, 통신장비, 전기기술,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 등)

*** 자동차 표준 및 기술규정

1) 한·EU의 경우 「(제4.7조)시장 감시」 및 「(제4.8조)적합성 평가 비용」 포함.

2) 한·호주의 경우 「(제5.11조) 분쟁해결」 포함.

자료: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FTA 기체결 국가와의 TBT 협정에서 국제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기술협력, TBT 위원회 등의 규정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표 4-5 참고).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13개 조항)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FTA 기체결 국가와 11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타결된 한·중 FTA TBT 협정문의 경우 양국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기체결 TBT 조항대비 가장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는 달리 14건의 EPA 중 8건⁸⁶⁾의 TBT

86) 일·싱가포르 EPA, 일·멕시코 EPA, 일·말레이시아 EPA, 일·칠레 EPA, 일·태국 EPA,

표 4-5. 중국의 기체결 FTA TBT 조항

| | 조항 | 중·칠레 | 중·페루 | 중·스위스 | 중· 코스타리카 | 중· 싱가포르 | 중· 뉴질랜드 |
|----|------------|------|------|-------|-------------|------------|------------|
| 1 | 목적 | 0 | 0 | 0 | 0 | 0 | 0 |
| 2 | 정의 및 범위 | 0 | 0 | 0 | 0 | 0 | 0 |
| 3 | TBT 협정 재확인 | 0 | 0 | 0 | 0 | 0 | 0 |
| 4 | 적합성 평가절차 | 0 | 0 | - | 0 | 0 | 0 |
| 5 | 투명성 | 0 | 0 | - | 0 | 0 | 0 |
| 6 | 표준 | 0 | 0 | 0 | 0 | 0 | - |
| 7 | 협력 | 0 | 0 | 0 | 0 | 0 | 0 |
| 8 | TBT 위원회 | 0 | 0 | 0 | 0 | 0 | 0 |
| 9 | 정보교환 | 0 | 0 | 0 | - | 0 | - |
| 10 | 기술규정 | 0 | 0 | - | 0 | 0 | 0 |
| 11 | 표시 및 라벨링 | - | - | 0 | - | - | - |
| 13 | 기술 협의 | - | - | 0 | - | - | 0 |
| 14 | 그 외 | - | - | +2 | - | +2 | +2 |

주: 1) 중·스위스의 경우 「(제6,6조)국경 조치」 및 「(제6,10조)약관 재검토」 포함.
 2) 중·싱가포르의 경우 「(제56조) 비밀유지」 및 「(제57조) 규제권한의 보유」 포함.
 3) 중·뉴질랜드의 경우 「(제99조) 기술 지원」 및 「(제102조) 협정 이행」 포함.
 자료: 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조항을 ‘상품무역(Trade in Goods)’ 또는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장에 5개 이하의 조항으로 간결하게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일·ASEAN EPA 이후 TBT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목적 및 범위, 협력, TBT 위원회 등 최소한의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체결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일·페루 및 일·호주 EPA TBT 협정에서는 11개의 포괄적인 조항을 구성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협정문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6 참고).

일·인도네시아 EPA, 일·브루나이 EPA, 일·필리핀 EPA 등.

표 4-6. 일본의 기체결 EPA TBT 조항

| | 조항 | 일·아세안 | 일·스위스 | 일·베트남 | 일·인도 | 일·페루 | 일·호주 |
|----|------------|-------|-------|-------|------|------|------|
| 1 | 목적 | 0 | - | 0 | - | 0 | - |
| 2 | 정의 및 범위 | 0 | 0 | 0 | 0 | 0 | 0 |
| 3 | TBT 협정 재확인 | 0 | - | 0 | 0 | 0 | 0 |
| 4 | 협력 | 0 | 0 | 0 | 0* | 0 | - |
| 5 | 절의처 | 0 | 0 | 0 | 0 | - | - |
| 6 | TBT 위원회 | 0 | 0 | 0 | 0 | 0 | 0 |
| 7 | 분쟁 미적용 | 0 | 0 | 0 | 0 | - | 0 |
| 8 | 적합성 평가절차 | - | 0 | - | - | 0 | 0 |
| 9 | 정보교환 | - | - | - | - | 0 | 0 |
| 10 | 기술규정 | - | - | - | - | 0 | 0 |
| 11 | 표준 | - | - | - | - | 0 | 0 |
| 13 | 투명성 | - | - | - | - | 0 | 0 |
| 14 | 그 외 | - | - | - | +1 | - | - |

주: * 「일반의약(Generic)」에 관한 협력.

1) 일·인도의 경우 「제55조」 상호인정(MRA) 포함.

자료: 일본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기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3국가(칠레,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 중 TBT 협정문에는 대부분 △ 목적 및 적용 범위 △ 국제표준의 사용 △ 기술규정의 동등성 △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 △ 투명성 확보 △ 기술협력 △ TBT 위원회 등 핵심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기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TBT 조항을 다소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TBT 협정에서도 중국의 기체결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등 TBT에 대한 양국간 협력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였다(유새별 2015). 반면 일본은 일·페루(2012. 3 발효) 및 일·호주(2015. 1 발효) EPA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조항만을 채택하는 등 FTA

표 4-7.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국가와의 TBT 조항 비교

| FTA 기체결국 | 조항 | 한국 | 중국 | 일본 | 3국 공통 |
|----------|-------------|----|----|----|-------|
| 칠레 | 정의 및 목적 | ○ | ○ | - | |
| | 적용범위 | ○ | ○ | ○ | ◎ |
| | TBT 협정의 재확인 | ○ | ○ | ○ | ◎ |
| | 국제표준 | ○ | ○ | - | |
| | 적합성 평가절차 | ○ | ○ | - | |
| | 투명성 | ○ | ○ | - | |
| | 정보 교환 | ○ | ○ | - | |
| | TBT 위원회 | ○ | ○ | ○ | ◎ |
| 싱가포르 | 기술협력 | ○ | ○ | ○ | ◎ |
| | 정의 및 목적 | ○ | ○ | - | |
| | 적용범위 | ○ | ○ | ○ | ◎ |
| | 질의처 | - | ○ | - | |
| | TBT 협정의 재확인 | ○ | ○ | ○ | ◎ |
| | 정보교환 및 협력 | - | ○ | ○ | |
| | 국제표준 | ○ | ○ | - | |
| | 적합성 평가절차 | ○ | ○ | ○ | |
| | 기술규정 | - | ○ | - | |
| | 투명성 | ○ | ○ | - | |
| 페루 | TBT 위원회 | ○ | ○ | ○ | ◎ |
| | 비밀유지 | ○ | ○ | - | |
| | 규제기관 보호 | ○ | ○ | - | |
| | 적용 범위 | ○ | ○ | ○ | ◎ |
| | 정의 및 목적 | ○ | ○ | ○ | ◎ |
| | TBT 협정의 재확인 | ○ | ○ | ○ | ◎ |
| | 국제표준 | ○ | ○ | ○ | ◎ |
| | 기술규정 | ○ | ○ | ○ | ◎ |
| | 적합성 평가절차 | ○ | ○ | ○ | ◎ |
| | 투명성 | ○ | ○ | ○ | ◎ |
| 페루 | 기술 협력 | ○ | ○ | ○ | ◎ |
| | TBT 위원회 | ○ | ○ | ○ | ◎ |
| | 정보 교환 | ○ | ○ | ○ | ◎ |

주: 1) ○는 TBT 협정문 내 존재하는 조항.

2) -는 TBT 협정문 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조항.

3) ◎는 한·중·일 3국 모두 공통으로 체결한 조항.

자료: 한·중·일 3국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기체결국과의 TBT 분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한·중·일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FTA 국가 외에도 3국의 기술규제 정책 및 협정 특성을 반영하는 여타 FTA의 TBT 협정문 주요 조항인 ① 표준 ② 적합성 평가절차 ③ 투명성 ④ 협력 ⑤ TBT 위원회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고 WTO TBT 정례회의와 3년 주기 TBT 협정 검토 회의(Triennial Review)⁸⁷⁾에서의 각 국가별 주요 발언 요지 및 입장을 검토한다.

1) 국제표준

한·중·일이 각각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 중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조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WTO TBT 위원회의 결정⁸⁸⁾에 따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국제표준이란 ISO/IEC 지침 제1항에 따라 책임위원회의 IEC 국가 위원회 회원국이 승인한 합의 절차에 따라 개발된 규범 문서로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표준을 의미한다.⁹⁰⁾

국제표준 활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를 제외⁹¹⁾한 나

87) 3년 주기 TBT 협정 검토회의(Triennial Review)는 WTO TBT 위원회 차원에서 WTO TBT 협정 제15.4조에 의거하여 TBT 협정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협정의 운용 및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7회의 3년 주기 검토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동 검토회의는 주로 ① 표준 및 모범규제관행 ② 적합성 평가절차 ③ 투명성 ④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됨.

88) WTO TBT 위원회가 2000. 11. 13.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lations to Articles 2,5 and Annex 3 of the Agreement)」.

89) [부록 표 1-1] 참고.

90) 국제전기기술위원회(<http://www.iec.ch>, 검색일: 2015. 8. 12).

91) 한·칠레(제9.4조 제5항), 한·싱가포르(제8.2조 제4항)와의 FTA 협정에서만 예외로 ‘비효과

머지 국가와의 FTA TBT 협정에 ‘부적절(inappropriate)’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유새별 2015). 반면 중국은 페루와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FTA TBT 협정문에서 WTO TBT 협정에 의거하여 표준 관련 조치를 취하되,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국제표준 사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효한 페루, 호주와의 EPA를 제외하고는 여타 국가와의 TBT 협정문에 국제표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달리 국제표준 활용에 있어 WTO TBT 위원회 지침을 따라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권 행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일 3국이 각기 기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및 페루와의 FTA(EPA) 외에도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호주와의 FTA(EPA),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스위스와의 FTA(EPA) TBT 협정에서의 ‘국제표준’ 조항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호주와의 협정에서 WTO TBT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의거하여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을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로 WTO TBT 협정문 제2조 및 제5조 근거하여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중국은 스위스와의 FTA 협정에서 국제표준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협정 제2.4조에 근거하며,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TU(국제전기통신연

적(ineffective)’인 경우도 국제표준 사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등에 의한 국제표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동 조항을 한·중 FTA 협정에도 반영하였다. WTO TBT 위원회는 제1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국제표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국제표준기구인 ISO와 IEC와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한·중·일 3국은 현재 논의 중인 한·중·일 FTA에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WTO 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사용을 권장하되,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명성, 개방성, 공명성, 적합성, 적절성, 실효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규정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적합성 평가절차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는 WTO TBT 위원회에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로 정의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등이 포함된다.

한·중·일 3국은 FTA 협정문에서 대부분의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을 상대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⁹²⁾하

92)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에 대한 조항에는 △ 양국 영역의 인정기관간 협력약정 인정 촉진 △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각국 소재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이행 △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및 지정에 대한 인정 △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합의 및 결과 인정 △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신뢰 등을 포함.

는 것에 기초하여 △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 대우 △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상호수용 촉진 △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 채택·지정 및 인정 △ 양자간 적합성 평가기관의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추진 및 체결 등 조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⁹³⁾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체결 FTA 국가와의 TBT 협정의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 대해 상대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양국간 내국민 대우 보장’, ‘상대국의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등의 조항을 통해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FTA TBT 조항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적합성 평가절차와 결과 수용 여부에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유새별 2015). 중국의 경우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보다는 상대국 영역 내 존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 및 승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을 강조⁹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가급적 WTO TBT 협정 범위 내에서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의무와 권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효된 페루 및 호주와의 EPA에서 유일하게 한국·중국의 기체결 TBT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상호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93) [부록 1] 참고.

94) 중·페루(제98조 제4항)의 “Each Party ‘shall’ accredit or otherwise recogniz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중략).” 조항은 한·페루(제7.6조 제4항)에서의 “Each Party ‘may’ accredit or otherwise recogniz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 (중략).” 좀 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용어를 채택하여 동 조항을 강조함.

결과 수용 거부 시 거부 사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승인, 허가 등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에 합당한 사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적합성 평가절차 상호 수용에 앞서 상대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이 관련 표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 적절한 기술 능력 보유 여부를 인증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호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은 조건부 승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FTA 기체결 국가와의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수용 및 MRA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2015년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FTA 기체결 국가와의 TBT 협정에 반영해 온 일본의 일부 정책 조항을 WTO TBT 위원회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제안에는 ① 타 회원국 영토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의 신뢰성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하도록 장려 ② 동 시험 결과의 인정이 불가할 경우 상대국 요청이 있을 시 불가 사유를 설명 ③ 동 시험결과 수용 사례에 관한 TBT 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경험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기술규정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기관 인정(Laboratory accreditation)'이 시험결과 신뢰성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⁹⁵⁾하는 역할임을 언급하였으며, 14개국⁹⁶⁾의 회원국이 동 제안

95) 이는 ILAC MRA(적합성평가 인정관련 국제기구,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와 같이 적용 분야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 분야를 망라한 국제적 인정체계를 의미하며, 신뢰성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시험결과에는 화학물질의 OECD 시험법 및 전지전자장비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아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과 같이 국제적 인정체계를 포함.

96) 호주, 캐나다, 칠레, EU,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

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동 제안이 채택되어 WTO TBT 협정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제1~6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 TBT 협정 제5.2조의 개선 필요성 △ MRA 관련 경험 공유(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 △ 공급자 자기선언(이하 SDoC: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활용방안 등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제1~6차 및 7차 검토회의에서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① 필요시 MRA 체결 사례를 토대로 특정 산업 및 품목에 대해 국가 또는 기관 차원에서의 MRA 협상 추진 ② 각 국가별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촉진 방안의 예시적 목록 작성⁹⁷⁾ ③ SDoC 제도 장려 등 국가 간 협력방안 개발 및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공유가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투명성

WTO TBT 협정문에는 ‘투명성(Transparency)’ 관련 조항이 제2.9조, 제3.2조, 제5.6조, 제5.7조 및 제7.2조 등 여러 개 조(article)에 걸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채택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양자간 TBT 협정 중 ‘투명성’ 조항에 일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미국, EU 및 호주와의 FTA TBT 협정에서 당사국 기술규정 제·개정 및 개발과정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상대국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와의 협정에서

위스, 대만,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미국은 일본의 제안에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및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IAF, ILAC와 같은 국제적 및 지역적 인정 기구 등 관련 기구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함.

97) WTO(2009b).

는 자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결과를 상대국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명시⁹⁸⁾하고 있다.⁹⁹⁾ 즉 우리나라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및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투명성 조항에 있어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결과만을 전자적(electronically) 수단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¹⁰⁰⁾ 다만 한국과 중국은 공통으로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법령 시행 전 상대국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제시 기간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시기 연장 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¹⁾ 한·중·일 3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양자간 FTA 투명성 조항은 일반적으로 WTO TBT 협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여타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14건의 기체결 EPA 중 최근 발효된 호주 및 페루와의 EPA에서만 투명성 조항이 존재한다. 특히 일·호주 EPA TBT 조항은 한·호주의 FTA와, 일·페루 TBT 조항은 한·페루 TBT 조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일본은 투명성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으며, 다만 WTO TBT 협정에 근거하거나 상대국의 기체결 TBT 협정 방식을 수용하는 편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일본은 지난 제1~6차 및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투명성’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WTO TBT 협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98)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TBT 협정에는 제안(proposed)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99) 유새별(2015).

100) 중·칠레(제67조 제1항), 중·파키스탄(제40조 제1항), 중·뉴질랜드(제98조 제1항), 중·싱가포르(제54조 제2항), 중·페루(제99조 제1항), 중·코스타리카(제75조 제1항) 참고.

101) 유새별(2015).

제안하는 등 양자보다는 다자적 차원에서의 개선을 피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제6차 검토회의에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표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자발적으로 답변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재확인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의 통보와 조치 내용에 대한 접근, 의견 제시가 가능한 기회 제공 및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 보장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제안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는 제7차 검토회의에서 △ WTO 웹사이트 시스템에 기반한 각국 질의처 응답 현황 조사 △ WTO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안 내에서 질의 및 응답의 중요성 강조 △ WTO 웹사이트 게시판(이하 BBS: Bulletin Board System)을 이용한 질의처 응답과정 관리 및 운영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¹⁰²⁾ 당시 일본 측은 우리나라 의견서에 대해 일본이 일전에 제출한 제안서의 심화된 의견으로 보고 전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제안한 투명성 관련 공동 의견이 WTO TBT 협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자회의 또는 양국간 임시작업반을 통해 동 제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협력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협력

양자간 FTA TBT 협정에서의 ‘협력(Cooperation)’은 대체로 △ 투명성 확보 △ 우수규제관행(이하 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의 증진 △ 국제표준과의 정합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102) WTO TBT Secretariat(2015d).

평가절차 분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¹⁰³⁾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또는 신흥 교역국 등 FTA 체결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¹⁰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국, EU, 캐나다 및 호주 등 선진교역국과의 FTA 협정에서는 WTO TBT 체계 이행을 주목적으로 하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정합, 투명성 제고 및 평가기관 인정에 대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⁵⁾ 반면 칠레, 페루, 아세안 등 신흥 교역국과의 협정에서는 양국의 제도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기술적 조언 제공 등 협력 조항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간 기술조언 및 정보 교환 등 대체로 상대국 시장으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등의 협력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⁰⁶⁾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FTA 기체결 국가와의 TBT 협정에 ‘협력’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항 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환 △ 국제 및 지역적 포럼 등 관련 활동 참여 △ 국제 기관간 협력 증진 △ 인력 양성 등 양국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정은 양국이 각기 기체결한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 FTA의 경우 예외로 △ 자국 내

103) [부록 표 1-4] 참고

104) 백종현(2014).

105) 유세별(2015).

106) 위의 책.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운영·설립 시 협력 △ 신기술 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기반의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과 같이 기존과 차별화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¹⁰⁷⁾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을 위해 자국 내 실시되고 있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정책의 정보교환 또는 관련 국제·지역적 포럼 참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력 이행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① 양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또는 관련 인증기관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논의 및 체결 ②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③ 특정 교역품목에 대한 기술규정 조화 등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TBT 위원회 운영

WTO TBT 협정 제13조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기술장벽위원회(이하 TBT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내 자체 의장을 선출하고, TBT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합하여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WTO 출범 20년 차인 현재까지 회원국은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에 걸친 정례회의, 3년 주기 검토회의 및 양자회의를 통해 다자간 및 양자간 각기 상이한 기술규제에 대한 협력활동을 지속해 왔다. 한·중·일 3국이 기체결한 FTA 국가와의 TBT 협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글상자 4-4]와 같은 범위 내에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간 FTA TBT

107) 위의 책.

협정에서의 위원회 기능으로는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양국간 정보교환 △ 상대국 영역 내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 상호 인정 관련 논의 △ TBT 이행에 대해 WTO 위원회 보고 △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계량체계의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비롯하여, TBT 통보문 제출 후 회원국이 질문을 제기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할 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은 TBT 위원회 또는 EU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반 설치를 통해 각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정책 조정·협의 방안을 논의할 창구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중·일 3국의 TBT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후속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글상자 4-3. TBT 위원회 기능(조정 메커니즘)

- TBT 장의 이행을 점검 및 촉진
- 표준 관련 조치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
- 당사국의 모든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비정부간 지역적·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제인의 검토 원활화
- 상대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상대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 사항에 비추어 본 장의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항의 개정을 위해 양국에 대한 권고 개발
-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본 장의 조항 이행에 관해 공동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양국이 상호 합의한 대로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 설치
- 상호인정협정(MRA) 교섭을 위한 절차 촉진

자료: 한국과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정리.

나. SPS

한국은 2015년 9월 현재 총 15건의 발효·타결된 FTA 중 10건의 기체결 FTA가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5건의 기체결 FTA 또한 별도 조항으로 SPS 조치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한국 기체결 FTA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상세하게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칠레 FTA이다.¹⁰⁸⁾ 한·칠레 FTA 내 SPS 조항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 회원국의 의무, 대상 및 범위, WTO 원칙 적용, SPS 위원회 설치 등 기본 조항뿐 아니라 동등성, 지역적 조건, 방제·검사·승인절차, 투명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자간 SPS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기적 협력체제를 다진 것과 SPS 분쟁해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제도 활용성 가능성 이외에 유의미하게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이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 SPS 관련 분쟁해결에 대해 FTA와 WTO 양자선택권을 허용한 것은 칠레와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이 FTA 분쟁해결절차는 중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 양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린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높은 국가에 협의절차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¹⁰⁹⁾

한편 한·EU FTA 또한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조항에 더해 지역적 조건, 투명성, 수입요건,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페루와의 협정도 SPS와 관련하여 총 9개 조항이 합의되었

108) 최승환, 박언경(2014), p. 47.

109) 위의 책, p. 87.

는데 기본 조항에 더해 동등성, 위해성평가, 지역적 조건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¹¹⁰⁾

종합해 보면 한국의 기체결 FTA 내 SPS 협정은 WTO/SPS 협정의 원용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SPS 규율의 구체적 약속이행 장치나 FTA를 통한 분쟁해결 미적용의 내용을 포함한다.¹¹¹⁾ SPS 관련 기본조항에는 목적, 회원국 권리 및 의무, 대상 및 범위, WTO 협정 원칙 적용, SPS 위원회 혹은 접촉선 설치 등이 포함된다.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표 4-8. 한국의 기체결 FTA SPS 조항

| | 칠레 | EU | 호주 | 중국 | 미국 | 싱가포르 |
|--------------------|------|--------------|----|------|----|-------------|
| 일반조항 ¹⁾ | ○ | ○ | ○ | ○ | ○ | ○ |
| 권리·의무 | ○ | ○ | ○ | ○ | ○ | ○ |
| 조화(국제기준) | ○ | ○ | - | - | - | - |
| 동등성 | ○ | - | - | - | - | - |
| 위험평가 | ○ | - | - | - | - | - |
| 지역조건 | ○ | ○ | - | - | - | - |
| 투명성 | ○ | ○ | - | - | - | - |
| 통제, 검역, 승인절차 | ○ | - | - | - | - | - |
| 기술원조 | - | - | - | - | - | - |
| 별도 분쟁해결 | ○ | 배제 | 배제 | 배제 | 배제 | 배제 |
| 위원회 | ○ | ○ | ○ | ○ | ○ | 접촉선지정 |
| 기타 내용 | 기술협의 | 수입요건 동물복지 | 협력 | 기술협력 | | 자의적 차별금지 |
| 연관 조항 수 | 12 | 11 | 6 | 6 | 4 | 1 |

주: 1) 일반조항은 SPS 조항 관련 정의, 목적, 적용범위를 포함.
 자료: 한국의 기체결 FTA SPS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110)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지역적 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FTA 체결국은 칠레, EU, 페루 등 총 3개국이다.

111) 임정빈(2015), p. 32.

포르와 아세안의 FTA SPS 조항을 비교하면, 중국과의 FTA에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SPS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과의 FTA는 최소한의 규정만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의 SPS 조항에도 양국은 지역적 조건, 동등성, 위험평가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단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포함한 바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의 SPS 규정은 한국에 비해 다수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성 조항뿐 아니라 지역조건, 동등성, 수입허가, 인증 등 WTO SPS 협정의 주요 조항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합의된 협정문에 대한 이행 검증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험평가·관리에 대한 협력을 통한 시장 접근성 강화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FTA SPS 규정 중 가장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뉴질랜드 FTA(2008년 발효)는 위해성 분석과 관련한 각 당사국의 시장접근요청목록, 지역적 조건의 채택을 위한 세부기준, 동등성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검사실시 조건, 인증 관련 지침 등 WTO SPS 협정문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뉴질랜드 FTA는 공동관리협의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를 통한 이행 검증뿐 아니라 정보교환의 세부 내용과 통보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중·페루 FTA 또한 동등성 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지역적 조건 채택의 신속화, 위험평가 세부 지침 명시, 투명성 증진을 위한 통보 60일 기한 명시 등 WTO SPS 협정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싱가포르 FTA(2009년 발효) 또한 정의, 목적, 대상 및 범위, 관할기구 및 연락처, 회원국 권리 재확인, 지역화, 정보교환 및 협력, 국제기준, 동등성, 투명성, 공동작업반, 비밀유지 등 14개의 SPS 규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싱가포르 FTA에서 자의

적 부당차별금지, 대상 및 범위, WTO 협정 적용, 접촉선 등 기본 조항만을 포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중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표 4-9 참고). 아세안과 파키스탄 FTA만이 FTA 분쟁해결제도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양자택일의 조건이 주어졌다. 특히 코스타리카와 페루와의 FTA에서는 양 당사국이 참여한 기타 협정까지 선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규정을 살펴본 결과, 농수산물식품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적인 협상 자세와 달리 중국은 SPS 조치와 관련한 적극적인 입장인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이 기체결한 SPS 조항은 한국과 같이 적용범위, 회원국 권리·의무 재확인,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체결 FTA에 FTA 분쟁해결기구 이용을 허용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일절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WTO 원칙에 따라 SPS 조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몽골과의 EPA만이 예외적으로 조화와 동등성 조항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분쟁해결절차 또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자주의 체제인 WTO 분쟁해결제도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페루와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들 협정문에는 SPS 협정이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협정 내용을 비교한 결과, 협의내용의 포괄성과 구체성은 한국·일본과 중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목적·적용범위·당사국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일반조항과 더불어 투명

표 4-9. 중국의 기체결 FTA SPS 조항

| | 뉴질랜드 | 호주 | 싱가포르 ²⁾ | 페루 | 아세안 | 한국 |
|--------------------|--|-----------------|--|---------------------|-----|------|
| 일반조항 ¹⁾ | ○ | ○ | ○ | ○ | ○ | ○ |
| 권리·의무 | ○ | ○ | ○ | ○ | ○ | ○ |
| 조화(국제기준) | - | - | ○ | ○ | ○ | - |
| 동등성 | ○ | △ ³⁾ | ○ | ○ | ○ | - |
| 위험평가 | ○ | - | ○ | ○ | ○ | - |
| 지역조건 | ○ | △ ³⁾ | ○ | ○ | ○ | - |
| 투명성 | △ ³⁾ | ○ | ○ | ○ | ○ | - |
| 통제·검역·승인절차 | △ ³⁾ | ○ | - | ○ | ○ | - |
| 기술원조 | △ ³⁾ | ○ | - | - | - | - |
| 별도 분쟁해결 | ○ | ○ | ○ | ○ | ○ | 배제 |
| 위원회 | ○ | ○ | ○ | ○ | - | ○ |
| 기타 | 이행협정 정보교환 검사 인증 수입확인 통보 정보교환 협력 | - | 정보협력 비밀유지 규제당국 이행유지 부속서 관련 조항 | 무역원활화 위한 일반조항 | 이행 | 기술협력 |
| 연관 조항 수 | 16 | 12 | 14 | 13 | 12 | 6 |

주: 1) 일반조항은 SPS 조항 관련 정의, 목적, 적용범위를 포함.

2) 중·싱가포르 FTA는 TBT와 SPS 규정을 같은 장 동일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3) 별도의 조항은 없으나 SPS 규정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표시함.

자료: 중국의 기체결 FTA SPS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성, 동등성, 지역조건, 위험평가 등 핵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최대한 WTO SPS 협정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조항과 당사국 권리와 의무 등 기본사항만을 적시하고 있다.¹¹²⁾ SPS 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절차 또한 한국과 일본은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에만 국한한 반면

112) 한·칠레 FTA는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중국은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간 양자택일을 허용하는 유연적인 입장이다.

[표 4-11]은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체결한 FTA 중 칠레, 호주, 페루와의 FTA의 SPS 관련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 3국 공통으로 협정문에 포함된 조항은 'SPS 위원회 설치'가 유일했으며, 다만 3국 모두 호주와의 FTA에서 협력을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한 특징을 보였다.

표 4-10. 일본의 기체결 EPA SPS 조항

| | 인도 ³⁾ | 몽골 | 호주 | 페루 | 아세안 | 칠레 |
|--------------------|------------------|-----------------|-----------------|-----------------|-----|----|
| 일반조항 ¹⁾ | △ | △ | △ | △ | △ | △ |
| 권리·의무 | ○ | ○ | ○ | ○ | ○ | ○ |
| 조화(국제기준) | - | ○ | - | - | - | - |
| 동등성 | - | ○ | - | - | - | - |
| 위험평가 | - | - | - | - | - | - |
| 지역조건 | - | △ ²⁾ | - | - | - | - |
| 투명성 | - | - | △ ²⁾ | - | - | - |
| 통제, 검역, 승인절차 | - | △ ²⁾ | - | - | - | - |
| 기술원조 | - | △ ²⁾ | - | △ ²⁾ | - | - |
| 별도 분쟁해결 | - |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기타 | 의약품협력 상호인정 | 협력 | 질의처 정보교환 | - | - | - |
| 연관 조항 수 | - | - | - | - | - | - |

주: 1) 일반조항은 SPS 조항 관련 정의, 목적, 적용범위를 포함. △ 표시의 경우 정의, 목적, 적용범위 중 생략된 경우를 가리킴.

2) 별도의 조항은 없으나 위원회 아래 과학에 기초한 기술적 협의내용에 포함된 것을 표시함.

3) 일·인도 EPA는 TBT와 SPS를 동일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일본의 기체결 EPA SPS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11.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국가와의 SPS 조항 비교

| | 한·중 | 한국 | | | 중국 | | | 일본 | | |
|--------------------|-----|----|----|----|----|----|----|----|----|----|
| | | 칠레 | 호주 | 페루 | 칠레 | 호주 | 페루 | 칠레 | 호주 | 페루 |
| 일반조항 ¹⁾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의무 | ○ | ○ | ○ | ○ | ○ | ○ | ○ | ○ | ○ | ○ |
| 조화 | - | ○ | - | - | - | - | ○ | - | - | - |
| 동등성 | - | ○ | - | - | △ | △ | ○ | - | - | - |
| 위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조건 | - | ○ | - | - | - | △ | ○ | - | - | - |
| 투명성 | - | ○ | - | - | ○ | ○ | ○ | - | - | - |
| 통제, 검역, 승인절차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원조 | - | - | - | - | - | ○ | - | - | - | △ |
|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별도 분쟁해결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일반조항은 SPS 조항 관련 정의, 목적, 적용범위를 포함.

2) △는 별도의 조항은 없으나 투명성, 위원회 등 기타 조항을 통해 언급된 경우를 표시함.

3) 조항은 WTO SPS 협정문에 기초하여 작성.

자료: [표 4-8]~[표 4-10]을 토대로 저자 정리.

1) 협력

기체결 FTA SPS 협정에서의 협력조항은 FTA 체결국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국 중 중국의 기체결 FTA에는 협력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협력조항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다.¹¹³⁾ 다만 3국 공통으로 호주와의 기체결 FTA에 협력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중·일 3국 가운데 중국이 SPS 조치 관련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기체결 FTA 가운데 협력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조항은 국제회의를 위한 의견교환, 지식경험 공유에 그치

113) 한·중·일 기체결 FTA에서 협력분야와 관련한 비교정리는 본 보고서 [부록 표 2-1]에 제시되어 있음.

고 있으며, 일본은 나아가 위원회 기능에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활동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은 △ 수입위험분석원칙과 절차에 대한 기술적 협력 강화 △ 공동연구프로젝트 강화를 통한 각국 수입 물품 통제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등의 내용을 FTA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호간 기술협약의 및 정보교환을 토대로 한 중국 상품 시장접근성 증진 도모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내 SPS 조치 협력조항은 중국의 기체결 FTA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 및 관련 조치 개발, 위험분석 방법론 및 국내 규정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외에도 인력교환 프로그램, 질병·병해충 조사, 예방·관리, 미생물 검출 방법, 잔류조사 및 관리 등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SPS 위원회

WTO SPS 협정문 제12조(관리)는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이하 SPS 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WTO SPS 위원회 기능은 △ 회원국 간 특별협의의 장 촉진 △ 국제표준, 지침, 권고 장려 △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 확보와 자매기구와의 협력 △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 활용 현황에 대한 감시절차 개발 △ 협정의 운영 및 이행 검토 등이 있다.¹¹⁴⁾ 한편 세계 식품교역이 증가한 현시점에서 중국 멜라민 분유파동을 비롯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는 식품안전협정, FTA 내 위원회 등 각국의 SPS 조치와 관련된 양자협력제도 구축의 강화로 이어졌다.¹¹⁵⁾ 특히 FTA 체결을 통한 SPS 위원회 설치의 WTO 다자

114) WTO SPS 협정 제12조(관리) 요약.

115) 중국은 2007~2008년 역내, 양자간 식품안전과 SPS 조치와 관련하여 60여 개의 협정문을 체결

간 SPS 관련 협력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력 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기체결한 FTA 국가와의 SPS 협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한·중 FTA 위원회를 기준으로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 △ SPS 조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 반복적인 SPS 요건 비준수의 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소통 △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기술협의회 설치를 통한 검토 추구 △ SPS 조치 개발, 이행 및 적용 관련 기술협력활동 증진 등 구체적인 위원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글상자 4-4. 한·중 FTA 내 SPS 위원회 기능

-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
-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 상호 이해 증진
- SPS 조치 개발 또는 적용 관련 사안에 관한 협의
- SPS 요건 비준수의 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소통
-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기술협의회 설치 고려 혹은 검토 추구
- SPS 관련 회의를 위한 사안, 입장 및 의제 조율
- SPS 조치 개발, 이행 및 적용 관련 기술협력활동 조정 증진
-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 관련 명확화 포함 특정 이행 사안에 대한 양자간 이해 증진
- 정기적 회합(연 1~2회)
- 공동위원회에 논의결과 보고
- 동 SPS 협정 내용 이행 진전 사항 점검(중국)

자료: 한·중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상이한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결한 바 있으며, 미국은 2011년 현재 110여 개의 국제협정(양자협정은 104개)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운데 56개가 식품안전 또는 SPS 조치와 직결된 내용의 협정문이다(Lin 2012, p. 704).

Regulation)과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로 인해 교역 흐름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요소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표 4-12 참고). 이를테면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특정 상대 국가 내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규제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TBT와 관련된 여러 규제조치 외에 SPS 조치에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4절은 TBT 조치와 SPS 조치가 한·중·일 무역의 장애가 되는 주요쟁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표 4-12.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 기술장벽의 유형 | | 기술장벽의 내용 |
|----------|--|--|
| 기술 규정 | 차별적 기준 적용 |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의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
| | 상이한 표준 적용 |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 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조치 |
| |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
| | 과도한 기술요건 |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
| | 투명성 결여 |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
| 임의표준 |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 |
| 적합성 평가 | 중복검사 |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
| | 과다시간 소요 |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
| | 과다비용 소요 |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
| | 투명성 결여 | - 판정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
| 상품표시부착 |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 p. 224.

가. TBT

한·중·일 3국은 자국민의 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TBT 조치 이외에도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 등 상대 교역국에 불리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WTO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STC뿐 아니라 각국별로 시행되는 서로 다른 TBT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포함한다. 본 소절에서는 각기 상이한 TBT 정책 및 기술 규정으로 인해 수출 시 애로가 된 주요쟁점을 분석한다.

[표 4-13]은 지난 5년간(2011~2015년)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간 제기받은 STC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화평법에 대해 공식 시행 이전부터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¹¹⁶⁾ 다수 국가에 의해 STC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의 경우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STC를 제기받아 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중앙회(2015)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소기업은 중국의 CCC인증제도에 대해 ① 처리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 ②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으로 기술 유출 우려 ③ 외국산과 중국산 처리절차 차별 ④ 빈번한 규정 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 등의 비관세장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민간표준으로 이관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받는 STC 건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시 자동차와 관련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받은 바 있다.¹¹⁷⁾ 특히

116) 2011-2차, 3차, 2012-1차.

수입차 특별취급제도의 비공정성과 일본만의 기준 및 인증, 투명성 결여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비관세장벽 관련 지적에 대해 수량 제한을 제외한 비관세장벽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시된 사항에 대해 상관행 등 비제도적 특성일 뿐 비관세장벽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4-13. 한·중·일 3국간 상호 제기 STC 내용(2011~15년)

| 연도 | 피제기 국가 | 제기 국가 | 제기 내용 |
|------|--------|--------|---------------------------------|
| 2011 | 한국 | 일본 | PVC 바닥재, 벽지, 종이리놀륨 프탈레이트 함유량 규제 |
| | | 중국, 일본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
| | | 일본 | 전파법 개정 2011/1 |
| 2012 | 한국 | 일본 | PVC 바닥재, 벽지, 종이리놀륨 프탈레이트 함유량 규제 |
| | | 일본 | 자동차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
| 2013 | | - | - |
| 2014 | | 중국, 일본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
| 2015 | | 일본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
| 2011 | 중국 | 한국, 일본 |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
| | | 한국, 일본 |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 |
| | | 한국, 일본 | 화장품 신장허가서 관리 조항 |
| 2012 | | 일본 | 스마트폰 단말기 관리조치법안 제정 |
| 2013 | | - | - |
| 2014 | 중국 | 한국, 일본 | 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 |
| | | 한국 |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
| 2015 | 중국 | 한국, 일본 |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등록 신청 허용 방안 |
| | | 일본 | 금융 IT기기 보안 규정 |
| 2011 | | - | - |
| 2012 | | - | - |
| 2013 | 일본 | - | - |
| 2014 | | - | - |
| 2015 | | - | -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3); WTO(2015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7) 무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5. 11. 25).

1) 적합성 평가절차상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

전술한 바와 같이 적합성 평가절차상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는 TBT 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된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STC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한 시리즈 내에서도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CFDA: 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년 제2차 WTO TBT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캐나다, 일본, EU 등)는 중국의 「화장품라벨관리방법(안)」에 대한 라벨링 효능검증과 관련하여 보습·수렴 등과 같은 일반 효능에 대한 검증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¹⁸⁾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검증이 필요할 경우,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능 검증도 인정해 줄 것과 제3자 인증 대신 수출업체의 자율인증 허용을 중국 측에 요청하였다.

표 4-14.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제도

| | 중국 제품 | 수입 제품 |
|----------|--|--|
| 상세 내용 | 성급 CFDA에 제품 출시 전 홈페이지 등록 (사전 고지성 등록) | 중앙 CFDA에서 등록 후 수입 및 판매 (사전 심사 후 등록) |
| | 기업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고 성급 FDA에서 5 업무일 내에 대조 검사를 진행한 후, 등록 정보가 요구에 부합하면 CFDA 홈페이지에 제품 일부 정보를 공개함(기업은 정보 등록 후 바로 판매 가능) | 제출서류와 샘플검사 후 등록 승인(수개월 소요) CFDA 행정접수센터에서 접수 5일, 발급 10일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20일이 소요(근무 일 기준 총 35일 소요) |
| |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등록 후 3개월 내에 등 록 제품에 대한 검사를 전개하고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시정 명령 | ※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 소요 |
| | 생산 10일전 성, 자치구, 직할시 급에 등록 | 수입 10일 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 |

자료: 대한화장품협회 서면 인터뷰 자료(2015. 10. 19).

118) 2015년 제2차 WTO TBT 정례회의 특정무역현안(계속 의제)을 바탕으로 작성.

또한 중국 측이 2014년 4월에 도입한 ‘화장품 신원료 운영조정’에도 승인절차 및 구비서류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¹⁹⁾ 동 조항에는 핵심원료 2만 개 중 8,103개만이 특별수입 인가품목표(posi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화장품 등록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은 제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에 상이한 등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다(표 4-14 참고).

2) 기술규정의 투명성 결여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평법 도입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의 일괄적인 규제 시행은 일본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언급하며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 규제의 대상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CA)」에 의해 이미 지정되어 관리해 오던 물질로서 모든 등록물질에 대해 3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계적 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평법이 과거 TCCA와 규제범위가 다르고, 화평법 제 32조에 언급된 대상물질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규제 도입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¹²⁰⁾

중국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리튬이온전지 등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에 의해 STC를 제기받았거나,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19) WTO TBT Secretariat(2014).

120)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대해서 투명성결여 외에도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제조량과 수입량은 하위 사용자 또는 판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중요한 영업기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관련 정보 제공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WTO로의 TBT 통보문 제출을 생략한 채로 신규 규정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 결여에 대한 부분과 등록비용의 내국민 대우 불이행에 대해 지적받아 왔다.

중국 내 진출한 한국 시험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의 경우 이전에는 없던 등록비용, 심사비용 등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¹²¹⁾ 중국은 의료기기 신규 등록 수수료로 제품 건당 4,000~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사전 예고 없이 시행일자를 공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의료기기 수출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중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5월 27일에 중국 내 공표된 의료기기 등록비 표준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 법령에서 제조품과 수입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신청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규정을 확인한 후, 금년 제2차 WTO TBT 정례회의에서 캐나다와 함께 수입 의료기기에 중국산보다 2배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표 4-15 참고).¹²²⁾ 이러한 차별적인 제품 등록비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캐나다, 미국 등 일부 WTO 회원국은 의료기기 등록비에서 현장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³⁾

중국 측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상기와 같은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121) 중국 진출 한국 시험연구원 상해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2015. 10. 29).

122) 이는 GATT 협정 제2부 제3조 및 WTO TBT 협정 제2.1조의 내국민 대우 의무를 무시한 처우라고 덧붙였다(WTO TBT Secretariat 2015a).

123) 또한 동 안건에 대해 캐나다와 미국은 중국이 2015년 5월 17일에 발표한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표준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유예기간도 두지 않은 채 바로 시행한 것은 WTO TBT 제5.9조에 따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합리적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료되나, 갑작스러운 등록수수료의 과다부과 및 사전공지 불이행은 외국 수출기업에게 애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대부분 글로벌 의료기기상들은 중국 내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 내수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 거점이 없고 생산설비를 순수하게 수출하는 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표 4-15.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 수수료

| | | 국내 제조(RMB) | 수입(RMB) |
|------|---------|------------|---------|
| 신약 | 임상시험 | 192,000 | 376,000 |
| | 등록 | 432,000 | 594,000 |
| 제네릭 | 임상시험불필요 | 184,000 | 367,600 |
| | 임상시험필요 | 318,000 | 502,000 |
| 의료기기 | | 154,000 | 308,800 |

자료: 중국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제13조(2015년 5월 개정) 및 「2015 제2차 WTO TBT위원회 참가 결과」 보도자료 참고.

3) 임의표준의 강제성

일본은 제3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중국과는 달리 표준에 대한 정책을 민간협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어 WTO를 통해 제기되는 STC 건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의료기기, 목자재 및 건축재, 백신 시장 접근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제표준 및 승인절차에 대해 수년에 걸쳐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는 일본의 임의표준이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과 크게 다르므로써 발생하는 장벽으로 간주된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대일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목자재 및 건축재에 대해 JAS/JIS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JAS/JIS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절차와 비용, 시험 기간의 과다 소모가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바 있다(EU Commission 2009). 이처럼 민간표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규제적 조

치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 타국 표준과의 정합을 허용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나. SPS

1) 국가간 기준·규격 차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상이한 식품위생표준의 차이는 수출기업의 추가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요구함으로써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무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된다. 한국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제도의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수출 주요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다(USTR 2015, pp. 242~243). 한편 이미 식품첨가물과 잔류허용기준제도에 대해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은 수출국가와 상이한 기준 및 요건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의 적용으로 SPS 위원회 특정무역현안제도를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식품수출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USTR 2015, p. 2010, 표 4-16 참고).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에 대해 일본은

표 4-16. 중국이 제기한 SPS 특정무역현안: 일본

| 구분 | 제기 국가 | 제기 내용 | 현황('15.2) |
|------------|--------|--|-----------|
| 2008 (267) | 중국, 미국 | 농약잔류허용기준 시행시스템 | 미해결 |
| 2005 (221) | 중국 | 사료, 사료첨가물 품질개선 기준 | 해결 |
| 2005 (212) | 중국, 미국 | 농약, 동물성약품 사료첨가물 최대허용기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부분해결 |
| 2004 (201) | 중국 | 식품첨가물 기준, 요건 - 시금치(chlorpyrifos)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원칙 | 미해결 |
| 2003 (178) | 중국 | 식품·식품첨가물 기준 요건 수정 | 미해결 |
| 2002 (148) | 중국 | 식품위생법 개정 | 미해결 |

주: () 안은 현안번호임.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b), pp. 13~25.

특정무역현안 문제제기에 대해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1997년부터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 중 64종에 대해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양국간 식물검역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¹²⁴⁾ 이 같은 비검역 병해충 지정은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 위생표준(GB)은 한국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수출 시 제품에 부과되는 기준, 규격 및 기타 시험절차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운 조미김의 경우 한국은 이 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중국 측은 일반 세균수 1g당 3만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¹²⁵⁾ 이 같은 기준 차이는 과자의 경우도 적용된다. 중국의 과자류 일반 세균수 기준은 1g당 750 이하인 반면, 한국은 1g당 7,000 이하이다.¹²⁶⁾ 또한 중국 위생표준은 한국 식품 및 첨가물 공전과 분류체계에 비해 식품유형 종류가 적어 직접적인 분류기준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⁷⁾ 또 다른 예로 중국의 김치 위생표준에 의한 수입제한의 건이 이에 해당한다(글상자 4-5 참고).

위생기준의 차이뿐 아니라 각국의 까다로운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 식품 수출입 인허가 절차는 수출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인 홍삼은 6년간

124)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 p. 257.

125) 「중국 식품기준, 한국보다 엄격」(2015. 7. 27, 검색일: 2015. 10. 28).

126) 위의 자료.

127) 정명섭 외(2013), p. 25. 특히 상이한 국가간 기준에 의한 검역기준의 차별적 적용은 특히 수입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식용근거가 없는 원료나 조미료, 식품인 경우 두드러진다.

이상인 경우 대중국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는데 과도한 서류, 품목별 위생허가 등의 복잡한 등록 및 인허가 절차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글상자 4-5 참고).¹²⁸⁾

글상자 4-5. 상이한 식품기준·규격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른 교역장벽 사례

〈한국산 김치: 중국 국가위생표준(GB2714-2003)〉

한국산 김치는 중국 국가위생표준으로 GB2714-2003 중국 절임채소에 속한다. GB 2714-2003 이 대중 김치 수출을 막는 비관세장벽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96년 동 표준 개정 때 추가된 미생물 지표로 중국정부는 절임채소 대장균군은 100g당 30mpn(병/봉지포장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¹²⁹⁾ 그러나 김치는 비멸균 제품이라는 특성과 제조과정의 특수성으로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당초 GB2714가 발효식품인 김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 파오차이(중국 절임채소 식품)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발생한 일이다. 동 사례는 한국정부의 정상급의 적극적인 협상결과 2015년 2월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에 절임채소 식품안전국가표준(GB 2714-2003) 의견수렴(안) 행정예고가 되었다. 의견수렴(안)에는 용어 및 정의에서 발효절임을 절임채소에 포함하였으며, 멸균제품의 대장균군 기준 완화(대장균군 수 최대 10³ CFU/g 완화)와 함께 보완적 차원으로 검사방법은 GB 4789.3 평판계수법, 표본의 채취와 처리는 GB 4789.1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³⁰⁾

중국절임채소 식품안전국가표준 개정(안)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검사방법 |
|-----------------|----------|---|---|---|----|-----------------|-------------------|
| 항목 | 지표 | 항목 | n | c | m | M | |
| 대장균군 (MPN/100g) | | 대장균군 | 5 | 2 | 10 | 10 ³ | GB4789.3 평판계수법 |
| 소분포장제품 | 90MPN 이하 |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CFU/g 표시) 표본 채취·처리 GB4789.1 | | | | | |
| 병포장 | 30MPN 이하 | | | | | | |
| 식중독균 | 제외 | | | | | | |

자료: 김재환, 한병섭(2015), p. 107.

이 행정예고는 2015년 3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나 2015년 11월 기준으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28) 중국은 2011년 5년근 이하 인삼은 신자원식품으로, 5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기능식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129) 김재환, 한병섭(2015), p. 97.

〈중국 보건(기능)식품〉¹³¹⁾

중국 보건(기능)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CFDA가 공인한 10곳의 검사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검사기관은 안전성, 동물실험, 인체실험, 성분검사, 위생검사, 안정성 검사 등을 시행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의 약품생산허가증 또는 약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약품생산기업 및 약품유통기업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국내제품은 각지 CFDA 본국에서 인허가 취득신청이 가능한 데 반해 수입제품은 베이징 CFDA로 한정되어 있다. 허가 신청 수속은 자사 제품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실험결과가 요구기준을 충족한 후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초심, 재검사, 기술 심사, 행정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여기에는 신청서, 신청인 영업집조 기타 합법등기증명문서 사본, 상표등록, 제품품질 표시 및 구성 설명, 포장된 제품 샘플 2개,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생산지 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 포장, 리벨, 설명서 샘플 등 총 20~22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능성 원료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제품별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제품별 인정이 요구되고 있다.

| 필요항목 | 세부내용 | | |
|-------|--------------------------------|----------|--------|
| 의뢰 | 제조판매사가 신고책임자에게 의뢰조사 | | |
| 검사의뢰 | 신고책임자가 CFDA공인 검사기관에 의뢰 | | |
| | 구분 | 검사비용 | 소요시간 |
| | 접수 | 1만원 | 15~20일 |
| | 독성검사 | 5~6만원 | 35~50일 |
| | 기능검사 | 5만원 | 35~50일 |
| | 위생검사 | 2~2.5만원 | 20일 |
| 안정성검사 | 2~2.5만원 | 120~150일 | |
| 기타검사 | 1~2만원 | 30~36일 | |
| 검사보고서 | 검사기관이 검사 후 신고책임자에게 검사보고서 교부 | | |
| 허가신청 | 신고책임자가 CFDA에 신청(신청서류목록 별첨) | | |
| 심사의뢰 | CFDA가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 | |
| 심사의견서 | 심사위원회가 CFDA에 의견서 교부 | | |
| 결과통보 | CFDA가 신고책임자에 결과통보(불합격·보증자료 통지) | | |

자료: 베이징aT센터(2014), p. 18.

일본 또한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즉 일본 유통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자료: 김재환, 한병섭(2015), pp. 97~98, pp. 105~107; 베이징aT센터(2014), pp. 18~21; 정명섭 외(2013), p. 34 자료를 기반으로 요약 정리.

130) 위의 자료, pp. 105~107.

2) SPS 규정 투명성 결여

한국의 식품과 연관된 법률은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¹³²⁾ 한편 USDA(2014b, p. 2)는 한국 규정의 구체성(specificity) 결여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례로 한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는 한국 법률에 신선식품 통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면담을 통해 밝힌 바 있다.¹³³⁾

2014년부터 꾸준히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 제기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이 WTO에 정식 제소함으로써 2015년 5월 WTO 양자협의 요청을 거쳐 WTO 무역분쟁 패널이 설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누수사건 발생을 계기로 2013년 9월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요구 △ 식품 방사선 세슘 기준을 370Bg/kg에서 100Bg/kg로 적용하는 특별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¹³⁴⁾

이 한·일 간 무역분쟁 주요 이슈는 ① 투명성 결여 ②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③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¹³⁵⁾ 특히 투명성 결여와 관련하여 일본은 2011년부터 부과된 일본

131) 베이징aT센터(2014)와 정명섭 외(2013), p. 34를 참고하여 저자 요약 작성.

13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4b), p. 2. 참고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995년 수입통관조치와 실행에 대해, 1995~1996년에 농산물 시험·검사, 검역관련조치의 건으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133)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면담(2015. 10. 23).

13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2013).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조치가 총리실, 식약처, 농수산식품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된 방식이 WTO SPS 협정문 제7조(투명성) 부록 2에 명시된 내용, 즉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 공포 조항에 합치하지 않음을 문제 제기하였다. 또한 일본은 WTO SPS 협정 제4조(동등성)와 제5.8조(수출국 정보제공 의무)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6월, 8월 한국 질의처에 요구한 규제 정보와 수입규제조치 강화 근거에 회답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덧붙여 투명성 문제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가 위험평가 기반 여부(SPS 협정 2.2조, 5.1조, 5.2조 위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적 원칙(SPS 협정 5.7조)¹³⁵⁾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제소 건은 식품의 방사능오염 관련 최초 분쟁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는 단시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식품안전 위생검역과 관련된 법 규정은 다수가 내부적인 것이어서 불투명하게 제정되어 완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¹³⁷⁾ 미국 2014년 USTR 보고서를 포함한 다수의 SPS 위원회 특정무역현안은 중국의 규정 공포에 대한 형식과 규정 공포 기한 부족, 규정 목적 및 추가 정보 요청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표 4-17 참고).

135) 이 사례는 WTO(2015b)의 WT/DS495/1에 토대하여 작성하였다. 일본은 2014년 이후 SPS 위원회 특정무역현안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136) WTO SPS 협정문은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①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②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채택하고 ③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④ 합리적 기간 내에 위생검역조치를 재검토할 경우에만 채택·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137) 왕양, 조현숙(2013), p. 313. 또한 중국법령은 내부 규정이 많아 투명성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STC 현안번호 184가 이에 해당된다.

표 4-17. 중국 법령 투명성 연관 특정무역현안 사례

| 구분 | 제기 국가 | 제기 내용 |
|------------|-------|--|
| 2004 (184) | 미국 | 중국의 규정 공포에 대한 일관적인 형식 미비의 건과 규정 공포 기한 부족 |
| 2010 (296) | EU | 중국 SPS 통보 실행 문제 |
| 2011 (324) | 인도 | 중국의 수출기업 등록·감독요건 추가 정보 요청 |
| 2012 (329) | 인도 | 중국의 식품첨가제 시험방법을 도입하는 목적 및 연관정보 요청 |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b), pp. 13-25.

5. 소결

한·중·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규정 제·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STC 제기 등의 형태로 TBT와 SPS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고 FTA 체결, 기술발전을 토대로 식품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모두 식품안전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PS 측면에서는 한·중 간 김치분쟁과 같이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와 국내 규제의 투명성 결여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3국간 식품교역의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SPS 조치에 대한 투명성 결여 문제는 특히 내부 규정이 많은 중국에 대한 SPS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TBT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4월에 제정한 화평법의 도입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STC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국내외의 차별적인 제품등록비와 화장품의 까다로운 인증조건과 등록절차가 애로요인으로 나타났

다. 한편 EU Commission's Market Access Trade Barrier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기기, 목재품, 백신시장에 대한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⁸⁾ 특히 목재품의 경우 일본의 표준이 EU의 표준과 매우 상이하며, JAS/JIS 인증을 받기 위한 순응절차의 비용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장은 또한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중·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의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국 기관 우대'조항은 FTA 체결국에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로 여겨져 상대국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타결된 TPP의 TBT 협정문 제8.6조를 살펴보면 자국 내 위치한 시험인증기관의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역내 협력을 장려하고자 삽입한 해당 조항은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 메가 또는 다역간 FTA 협정에서도 반영될 여지가 엿보이며, 해당 조항

138)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B(검색일: 2015. 6. 4).

의 도입으로 인해 한·중·일 3국간에 한층 더 투명하면서도 비차별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의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물 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의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쟁점



TBT나 SPS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관세조치는 국가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국의 개발과 기술수준, 환경기준과 소비자의 선호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러 기술규정과 표준의 최적수준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 비관세장벽을 구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¹³⁹⁾ 특히 제3장에서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BT와 SPS 조치로 인한 기술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표준의 조화, 적합성평가 절차의 상호인정(MRA)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중, 한·일, 중·일 양자간 혹은 한·중·일 3국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안을 제시하고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에 대한 협력방안을 본 장에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139) [부록 3]에는 World Bank가 각국의 TBT, SPS와 수량제한의 규제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실었다.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최근 선진국들은 무역확대, 고용창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양자 혹은 지역 차원에서 규제 조정 메커니즘인 정부간 고위급 규제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¹⁴⁰⁾ 한·중·일 3국간에도 역내무역 및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역내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3국 산업계 및 연구자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다. 예를 들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간 5대 우선협력분야로 무역·투자 활성화가 포함되었고, 2008년부터 개최된 독립적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 비전 2020(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이 채택되어 2020년까지 3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를 위해 각종 무역장벽 철폐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3국간 표준협력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tandards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과 세관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밀한 역내 가치사슬구조를 가진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역내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0월에 개최된 한·중·일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역내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구조가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함을 3국이 함께 인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중·일 3국간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장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140) 장용준, 이재호(2015), p. 110.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으나 첫째, 3국간 과거사와 영토분쟁으로 인한 정부 차원의 기존 협력채널의 중단, 둘째, 역내합의를 이끌어 나갈 주도국가의 부재, 셋째,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3국간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은 한국 측의 노력으로 다시 복원됨에 따라 3국 정부간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과 관련된 논의 환경은 일단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5년 11월 1일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역내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해 정상회의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역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이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에 주도적 역할과 함께 중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그동안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논의에서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중·일 3국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도 2015년 11월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복원되었는데, 금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에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활용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큐슈지방 차원에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기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안건의 경우 일본 중앙정부에 보고되고 있다. 다만 비관세장벽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혹은 협의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국 및 중국은 일본정부를 설득하여 일본이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시 개최되는 통상 관련 국장급 회의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료를 참여

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시 3국 정상이 역내 경제협력 논의에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한 바 있을 정도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위상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달리 국내에 비관세장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관세장벽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⁴¹⁾ 이는 역내 비관세조치의 애로사항과 이들 요인의 실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보다는 기업이 경험한 사례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경제협력체를 보유한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세안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택한 바 있는데, 이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역내 무역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¹⁴²⁾ 이에 아세안은 CCA(Coordinating Committee for ATIGA¹⁴³⁾)와 ACCSQ(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장벽 작업계획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비관세조치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¹⁴⁴⁾ 초록은 비관세장벽이 아닌 정당화된 비관세조치로, 주황은 무역제한적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관세조치로, 빨강은 명백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다. ASEAN 각 회원국이 여러 비관세조치를 ASEAN 사무국에 제출하면, 제출

141) 비관세장벽위원회 관계자 면담(2015. 6. 4).

142) Cadot, Munadi, and Ing(2015), p. 59.

143) ATIGA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즉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약자이다.

144) Cadot, Munadi, and Ing(2015), p. 59.

된 비관세조치를 사무국이 상기한 세 가지 상자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또한 분류된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CEPT AFTA 협력위원회’(CCCA)¹⁴⁵⁾를 포함한 여러 개의 협상조직이 조치를 분석하고 제거의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ASEAN 사무국이 분류한 비관세조치를 회원국이 평가한다.¹⁴⁶⁾

그러나 ATIGA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의 정부가 ASEAN 사무국과 SEOM (Senior Economic Official Meetings)에 비관세조치를 자발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유인문제가 존재한다.¹⁴⁷⁾ 즉 비관세조치를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여타 회원국의 비판이 예상되는 반면 통보에 따른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비관세조치를 자발적으로 할 유인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Pasadilla(2013)는 ASEAN 회원국이 ATIGA의 통보와 투명성과 관련한 조항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원국은 상대국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한 후나 WTO에 통보한 후에야 비관세조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표 5-1. ATIGA의 비관세조치 분류

| 분류 | 설명 |
|-------|--|
| 빨강 상자 |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즉시 제거되어야 할 비관세 조치 |
| 주황 상자 | 투명하지만 차별적이고 비관세장벽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협상해야 할 비관세조치 |
| 초록 상자 |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더 나은 대안이 없는 비관세조치로서 수용이 가능한 비관세조치 |

자료: Cadot, Munadi and Ing(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5) AFTA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안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발족된 위원회로, 매년 최소 3차례씩 소집되어 분쟁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상급 기관인 고위경제관료회의(SEOM)에 분쟁 건을 넘김. CCCA와 SEOM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되어 연간 1회 모이는 아세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함.

146) Cadot, Munadi, and Ing(2015), p. 60.

147) *Ibid.*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ATIGA는 각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바, ATIGA 메커니즘이 원만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이해가 ASEAN 회원국의 이해와 일치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공공재 제공의 문제를 갖는다.¹⁴⁸⁾ 따라서 지역적인 차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ATIGA 메커니즘이 각 정부의 협력메커니즘 구축을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역내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EU는 역내 회원국간 관세장벽이 전혀 없으나 역내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1998년에 각 회원국이 기술규제와 같은 새로운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 조치가 역내 무역흐름을 저해하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규정인 Directive 98/34/EC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기술규제의 초안 및 도입 필요성을 EU 집행위원회와 여타 회원국에 고지한 후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투명성 차원에서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EU의 사례와 같이,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시 개최되는 국장급 회의의 역할은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 조치가 역내무역 흐름을 저해하는지 사전 검토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아세안 사례와 같이 사전 검토회의에서 한·중·일 역내 비관세조치를 정당화되는 조치, 무역제한적인 여지가 있는 조치, 명백한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48) Cadot, Munadi, and Ing(2015), p. 60.

이 중 무역제한 가능성이 큰 조치와 명백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 사안의 경우는 통상장관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 후 후속조치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즉,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도출된 사안 중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 신규조치의 경우 3국 통상장관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단계의 논의의 과정과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담당하면 될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협의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2. 논의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투명성 강화를 든다. 이에 제1절에서 구상한 한·중·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의 쟁점을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조화

비관세조치는 규제라는 그 자체로 무역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국가간 규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된다. 특히 전술한 것처럼, 종종 국민의 건강, 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정당화된 비관세조치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규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비관세조치가 역내무역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표준을 조화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EU의 New Approach를 들 수 있는데, Chen and Mattoo(2008)는 EU지역의 표준의 조화(harmonization)가 역내무역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¹⁴⁹⁾ 한편 Cadot, Munadi, and Ing(2015)는 국가간 산업별 비관세조치의 상이함을 UNCTAD-TRAINS NTM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비관세조치가 상이할수록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실증적으로 밝히며 규제적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⁰⁾

제4장에서는 한·중·일 각국이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WTO SPS 협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한 상이한 식품기준과 규격이 3국 식품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식품, 위생표준 및 규격의 차이는 수출기업의 추가검사를 통한 품질 관리를 요구함으로써 비용상승을 초래하며, 경제적 이유로 결과적으로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까지 끼칠 여지가 있다.¹⁵¹⁾ 특히 최근 한·중·일 3국 모두 식품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역내국가간 식품기준과 규격 조화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식품안전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김치, 막걸리 등 수출잠재력이 있는 품목을¹⁵²⁾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

149) EU의 조화지침(harmonization directives)은 가장 규제가 많은 상품에 대하여 라벨링 요건, 적합성 평가절차 등 여러 방면의 규제를 다룬다.

150) 이들은 특정 i 상품에 j 조치, 예를 들어 검사요건의 유무를 비교하여 동일한 요건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간주하여 국가간 규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한다.

151) 특히 식품첨가물, 농약·동물용의약품·유해성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차이로 인해 수출입이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2) 한·중 FTA시대 농수산물식품분야 스타수출품목 발굴 조사연구는 신선농산물에서는 생우유, 채소종자, 버섯류 등, 고유식품에서는 김치(부각), 인삼제품, 고추장, 된장 등, 가공식품에서는 조제분유, 즉석식품 등, 수산식품에서는 김, 굴 등을 17대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생우유, 채소종자, 버섯류, 인삼제품, 고추장, 된장, 조제분유, 즉석식품, 김, 굴을 중국시장 10대 스타수출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지현 외(2014), p. 157.

다. 특히 중국의 김치 대장균군 잔류허용기준 철폐 개정(안) 사례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표 5-2 참고). 한국정부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기반으로 한 비가열제품인 한국김치에 대한 미생물 기준 개정 요청으로 공식 협의가 시작되었고 그 후 6년이 지난 2015년 2월에 중국정부는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2015년 11월 현재 정상회담을 비롯한 역내 협력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2015년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표준과 기술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기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

표 5-2. 한·중 정부간 김치 관련 협상 및 경과

| 일시 | 내용 |
|--------------|---|
| 2010년~ | 김치 위생기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지속적 협의 실시 제2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문제 제기 - 발효식품 특성 설명 및 대장균군 규격 적용 제외 요청 |
| 2011년 7월 | 제3차 기준협의회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제시 |
| 2012년 5월 |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검역기준 개정 요청 |
| 2012년 5월 | 제4차 기준협의회에서 중국 측 식품기준 정비계획 중 김치의 미생물 기준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강소성 연구수행 '11~12) |
| 2013년 9월 | 제5차 기준협의회에서 중국 측 WTO 통보(2013. 8) 내용 설명 - 강소성 연구결과 토대로 개정안 이에 한국 중국 측에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재요청 |
| 2013년 7~12월 | 제9차 한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고위급회담 의제로 추진 |
| 2014년 3월 | 한·중 식품분야 국장급 협의회 및 과장급 회의 의제로 제기 |
|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 우선협력분야 합의 |
| 2014년 7월 18일 | 실무급 회의 개최 및 자료 교환 |
| 2014년 12월 1일 | (식약처: 배추김치의 대장균군 저감화 발간) |
| 2015년 2월 11일 | 절임채소 국가안전국가표준(GB 2714-2003) 의견수렴(안) 행정예고 |
| 2015년 2월 17일 | 절임채소의 대장균군 기준 개정안 WTO 통보 |
| 2015년 3월 30일 | 절임채소 국가안전국가표준(GB 2714-2003)의견수렴(안) 의견수렴 마감 |

자료: 김재환, 한병섭(2015)을 토대로 저자 정리.

과 기술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⁵³⁾ 일례로 아세안의 식품안전 데이터 공유 및 조화를 위한 노력은 3국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아세안은 2003년에 개최된 아세안 식품안전기준조화 정기 워크숍에서 아세안 식품안전기준 데이터베이스(ASEAN Food Safety Standards Database)를 구축한 후 2015년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식품첨가물기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⁵⁴⁾

식품표준의 역내·국제적 조화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식품기준 제정기능을 담당하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위원회(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FSANZ는 1991년 양국 국가식품기준위원회에 식품기준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식품당국(National Food Authority)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양국은 1995년 공동식품기준개발 시스템 설립을 위한 협정문¹⁵⁵⁾ 체결을 토대로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 감축을 목적으로 한 FSANZ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0년 양국은 공통 식품표준코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FSANZ는 이중국적의 국가기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라벨링, 유전자변형식품의 요건을 규정하는 공통의 리스트 개발 및 제반 행정업무 기능을 담당하였다.¹⁵⁶⁾ 다만 공통의 식품기준·규격에 대한 시행과 해석은 각국 국가기관의 권한에 귀속된다.¹⁵⁷⁾ 특히 이 기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간 식품표준 조화뿐만 아니라 식품

153) 황윤재, 한재환, 전형진(2012), p. 116.

154) ASEAN Food Safety Standards DB 참고(검색일: 2015. 11. 25).

155) Th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Joint Food Standards.

156) FSANZ 홈페이지(검색일: 2015. 10. 17).

157) 식품표준에 대한 양국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FSANZ는 다만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업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준 설립과 관련한 양자간 회의는 물론 Codex, APEC 등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규정의 과학적 능력배양에 있어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¹⁵⁸⁾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수입국이 국제표준을 사용하거나 수출국의 표준을 자국의 표준과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해도 수입국의 적합성평가는 수출국과 다를 수 있다. 적합성평가는 단순히 시험, 검사와 인증의 금액적인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표준과 마찬가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시험과 인증요건이 상이하면 이를 국가별로 달리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적합성 평가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길면 특히 섬유·의류 제품이나 하이테크 제품과 같이 상품주기가 짧은 상품의 판매에 큰 손해를 끼친다. WTO(2012b)는 기존의 여러 실증분석 연구가 적합성평가의 비용이 특히 농식품무역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서술한다.¹⁵⁹⁾

우리나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에서는 현재 국내외 시험 및 인증 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까다롭고 복잡한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로 인해 애로를 호소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기업에

158) FSANZ(2014), pp. 11-12.

159) 그 예로 Fassarella *et al.*(2011)의 총합의 개념으로서의 TBT와 SPS 조치는 브라질산 가금류 고기의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조치를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적합성평가의 경우 수출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반면 패키징과 라벨링 요건과 지역화 또는 검역조치에 해당하는 질병방지 조치는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 제공을 위해 중국 내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발적 인증제도인 JIS마크 인증업무 또한 국내 지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시험인증기관의 중국 내 인증활동이 불가하며, 시험인증 지연, 시료통관 애로, 기술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양국간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일 3국간의 역내 원활한 교역을 위해서는 상호간 적합성 평가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¹⁶⁰⁾

우리나라는 지리적, 제도적, 운영상의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상호협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 9월에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¹⁶¹⁾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3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①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약정」은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 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교환 등에 대한 협력 ②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은 양국의 강제인증제도(한국: KC인증, 중국: CCC)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5단계¹⁶²⁾로 추진 ③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인증 기관간 세부협력협정을 6개월 내 체결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KTL의 경우 2015년 5월에 중국 산동성 의료기기 검사센터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의 기술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

16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상해지사 인터뷰(2015. 10. 29).

16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 9. 22).

162) 양국은 ① 표준 관련 정보교환 → ②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 ③ 상호인정 과정 중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 ④ 약정 서명 → ⑤ 약정 이행 절차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간 절약을 위해 일부 단계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의료기기 시험성적서 상호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¹⁶³⁾

이렇듯 한·중·일 3국간 수출입 교역량에 따라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서로 다른 적합성 평가절차를 상호간 인정하는 등 동북아 협력제도 도입 및 시행은 상호 의존도가 높은 3국간 역내 공급망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으로는 역내 국가 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¹⁶⁴⁾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SDoC제도는 ‘선(先)판매 후(後)검사’ 형식의 제도로서, 공급자가 합당한 시험을 거쳐 자발적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되 사후에 정부가 동 제품을 임의로 테스트(검사)하여 위반을 적발 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한·중 간 FTA TBT 협정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한국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제도로서 양국간 TBT 협정문 제6.6조 제1.(f)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 조항을 통해 해당 제도가 인정되는 등 우리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실례로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SDoC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체로 시장출시 전 제품이 시험에 통과한 후 인증마크를 받아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한 ‘사전인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가 비대칭적 불편함을 호소하며 중국 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163) 「KTL, 中 산동 의료기기검사센터와 기술협력 MOU」(2015. 5. 21).

164) 공급자적합성선언은 공급자가 스스로 제품에 대한 시험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정부는 사후에 해당 품목을 임의로 테스트하여 위반을 적발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후인증제도’로 알려져 있다(유새별 2015, p. 14).

있다(유새별 2015).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대해 SDoC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에 덧붙여 동 제도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추가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예: 한국의 KC마크, 중국의 CCC마크, 일본의 JIS/JAS마크)를 부여하는 권한을 역내국 간 상호위임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① 한·중·일 3국 TBT 협상 시 협정문 내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② 각국 시험기관간 품목별 MOU 체결을 통한 상호위임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4년 6월에 「공업표준화법」의 개정으로 ‘국가에 의한 인정’에서 ‘민간의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으로 개선된 이후, 적합성평가에 관한 ISO/IEC 지침 65를 채용하여 JIS마크에 대한 외국등록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외국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토목 및 건축(A) 외 12개 지정 구분¹⁶⁵⁾에 대해 JIS인증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JIS인증 부여 권한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총 13개 국가¹⁶⁶⁾에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본의 인증마크의 상호위임 선례를 한·중·일 역내국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뒷받침하는 예로 중국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다수의 시험연구원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165) JIS인증을 하는 지정 구분은 토목 및 건축(A), 일반기계(B),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C), 자동차(D), 철강(G), 비철금속(H), 화학(K), 광산(M), 펄프 및 종이(P), 요업(R), 일용품(S), 의료 안전용구(T), 기타(Z) 등이다.

166)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인도, 영국, 아랍 등 13개 국가가 JIS인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각기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서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 대우’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시험인증기관 설립에 합당한 기술 보유 등)으로 인해 동 조항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방문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위해 비자접수대행업무를 실시하는 비자신청센터와 유사한 방식을 갖춘 적합성 평가 및 인증대행을 실시하는 해외인증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다. 투명성 강화

국가간 규제의 차이가 국민 선호(preference)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규제의 조화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국가가 자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표준과 기술규정의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다른 국가에 통보하거나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질의처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기술표준과 규정에 대한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자국 내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 참여 불가능, 제·개정 결과에 대한 사전공지 미흡, 나아가 상대국 수출업계의 의견수렴의 저조 등 WTO TBT 정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투명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간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한 주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3국은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통한 ① 통보문 단일화 ②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 및 결과 웹사이트에 단계적 공지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제시한 통보문 단일화는 WTO에 제출한 기술규정을 한·중·일 3국간 쉽게 조화가 가능하도록 기체결 통보문 내 제목, 설명, 이행기간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하여 상호 교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에 가입되어 있는 중미 회원국에 미국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며, 안데스공동체(the Andean Community)가 최근 페루를 통해 지역 기술규정을 단일 통보문으로 제출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¹⁶⁷⁾ 미국이 지난 3년 주기 검토회의 시 언급한 바와 비슷한 맥락에서, 통보문 단일화를 통해 한·중·일 3국에 의견 제출 기한 및 이행 기한을 일정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술규정 이행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제안인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방안은 일본이 지난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제안한 안건¹⁶⁸⁾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일본과 유사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¹⁶⁹⁾ 이는 한·중·일 3국간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및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며, 웹사이트상에 각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 예상 시행일 등을 게재하여 역내 정부기관,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증진에 도움을 준다. 예컨대,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시 결제 후 상품 출고에서부터 택배 수령까지의 과정을 웹사이트상에서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정보, 택배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의 게시판(Q&A)에 질문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된

167) WTO TBT Secretariat(2015c).

168) WTO TBT Secretariat(2015b).

169) WTO TBT Secretariat(2015d).

웹인프라를 응용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상기 방식을 3국간 비관세장벽협의회 웹사이트상 기술규정 제·개정 정보제공 탭(Tab)에 구축하여 ① 신규 기술규정 개정(또는 기존 기술규정 제정) 고시안 입안예고 ②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 ③ 기술규정 제·개정 결과 ④ 시행일 사전 공포 ⑤ 시행까지의 프로세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는 비록 타국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서면 또는 유선상 기술규정 제·개정의 사전공지가 어려울 경우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국간 정보교환의 활성화와 국내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은 식품 안전 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4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중국의 규정은 내부적인 것이어서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최근 일본이 WTO 무역분쟁에 제소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투명성 강화를 위해 3국은 한·중·일 FTA SPS 조항 내에 정보교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보공유의 법적 구속력을 더하고, 이를 비관세장벽협의회 또는 SPS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표준 및 국내 SPS 조치,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정보교환은 3국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SPS 조항에도 정보교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¹⁷⁰⁾ 일본이 참여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TPP 협정문에서도 제7.12조(정보교환)과 제7.10조(통보)가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TPP 제7.12

170) 제4장 참고.

조는 각국의 규제적 표준과 요건 개정에 의견제안의 기회 부여,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개정안 정보, 인증(verification) 검사결과, SPS 조치 관련 논문 및 과학적 데이터 공유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¹⁷¹⁾ 특히 제7.10조는 WTO SPS 협정 내 통보의 의무에서 나아가 24시간, 13일 등 구체적 기한을 설정한 특징을 보인다.

둘째, 상기 언급한 3국간 비관세장벽협의회 웹사이트상 기술규정 제·개정 정보제공 탭(Tab)에 더해 별도의 SPS 조치 협력 사이트 개설 또한 3국 SPS 조치 투명성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SPS 협정의 투명성 의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10월 WTO SPS 통보문 통계, SPS 관련 문서, SPS 특정무역현안, 관련 국제기준 및 한국 SPS 조치 담당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koreasps.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¹⁷²⁾ 이 웹사이트는 향후 선택적인 SPS 통보문을 송부하는 메일 서비스와 SPS 통보문에 대한 회신기록, 수입통보에 대한 웹사이트 이용자의 회신지원, SPS 통보문에 대한 회신기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2016년에는 국문과 영문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관련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¹⁷³⁾

상기한 제안에 더하여 구축한 웹사이트를 한·중·일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아세안 SPS 협력정보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상호간 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⁷⁴⁾ 3국은 중장기적으로 3국간 SPS 조치와 TBT

171) 「T.T.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문」.

172) WTO SPS Secretariat(2015c); TBT 또한 2008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knowtbt.kr)가 존재한다.

173) 위의 자료.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타 협력

최근 한·중 간 FTA를 타결하였음에도 여전히 여러 정책적, 경제적 이유로 국가간 규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면, 한·중·일 FTA 역시 3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자간 FTA는 사실상 관세철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체결된 협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협정문상 명시된 내국민 대우를 실제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령 국가 내 정부간 또는 기관간 품목 또는 산업별 MRA 및 MOU를 체결한다고 하여도 자국에서 발생한 시험 성적서를 타국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결된 MRA 또는 MOU의 경우 대부분 해당 성적서의 형식, 직인 또는 그 외 상대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변형과정을 거친 후에만 통용되는 경우로 이는 순수한 의미의 MRA/MOU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 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시험연구소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의 CCC 인증 및 통관 등 시험결과 데이터 상호인정 등에 대한 MOU는 여러 차례 체결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 수행한 시험 데이터를 중국 내 관련 기관에 미가공 데이터(raw data)로 제출할 경우 중국 측 성적서 형식으로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¹⁷⁵⁾ 따라서 한·중·일 3국은 국가별로 각기

174) 중국·ASEAN SPS, <http://www.chinaaseansps.com/list.aspx?cid=218>(검색일: 2015. 10. 16).

1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법인 인터뷰(2015. 10. 28).

다른 시험결과 데이터를 통일된 하나의 형식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상호인정이 가능한 협약(MOU) 체결이 필요하다. 이는 3국간 협력채널을 통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대중 수출량이 많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기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진출 해외 동종 업계간 공조도 역내 협력방안의 일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7월에 중국 측이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에 중문 인쇄를 하여 수출하도록 오버라벨링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시도했으나, 여러 외국 업체의 협력으로 해당 신규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 내 유럽 기업의 경우 유럽상공회를 통해 중국으로 진출한 동종업계 외국 기업체 담당자들과 해당 산업의 애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을 연간 1~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⁷⁶⁾ 이처럼 한·중·일 3국간 민간 차원의 업종별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소집하여 역내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의 경험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역내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176) 한국의 대중 수출 기업인 L사 물류 담당자와의 인터뷰(2015. 10. 29).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1. 요약과 평가

본 보고서는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에 대하여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한·중·일의 역내무역의 부가가치 기준 통계분석으로 한·중·일 내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비관세조치가 한·중·일 역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FTA 협정문 분석을 포함한 각국의 TBT와 SPS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의 요약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자국 부가가치 비중이 EU 각 회원국과 미국 등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역내가가치사슬이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refice and Rocha(2014)는 실증분석을 통해 TBT, SPS 조항 등을 포함한 깊은 통합이 자동차 부품과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을 밝혔다. 즉, 규제적 조치의 조화 등을 포함한 깊은 통합의 한·중·일 FTA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과 같은 산업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OECD, WTO, and UNCTAD(2013)에서 비관세조치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가치사슬과 비관세조치를 연계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가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비관세조치가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의 상승효과보다 크면 무역과 후생이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순응비용의 상승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비관세조치로 인하여 무역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실제 비관세조치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때문에 TBT와 SPS 조치의 철폐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역량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실제 비관세조치와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중·일 3국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등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중·일의 TBT, SPS 조치와 더불어 관세장벽이 3국의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조치로 인한 장벽이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BT는 제조업무역을, SPS는 농식품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3]에 첨부한 World Bank의 비관세조치 평가 질문지에도 나타나 있듯, 비관세조치가 실제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계량경제학적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3장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의 TBT와 SPS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무역상의 장애요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했다. 우선 TBT 정책과 관련

하여 한국, 중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국가표준 작성을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일본의 TBT 정책은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이양되어 실질적으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한 TBT 장벽의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다수의 선진국이 이러한 민간표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향후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대표적으로 단일강제인증 제도(CCC)가 주요한 기술장벽으로 작동하는 국가로, 이 내용은 본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CCC 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높아 대중국 수출 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⁷⁾ 한편 식품과 관련한 기준 및 규격뿐 아니라 상이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 또한 한·중·일의 불필요한 교역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201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에 관한 MOU는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양자 간 혹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축안과 논의쟁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역내 협력채널로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활용을 제안했다. 동 회의를 통해 EU와 같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기술규제의 초안 및 도입 필요성을 여타 국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의 사례와 같이 한·중·일 역내의

177) 이상훈 외(2012), p. 48.

정당한 비관세조치, 무역제한 여지가 있는 조치, 명백한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여 비관세조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아세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통보 메커니즘의 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향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규제적 조치의 일부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이로 인해 수출업자가 정식통관절차를 우회하여 밀수가 왕성해지는 양면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수입국에서 인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호협력할 유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3국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추후 연구과제

본 보고서는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의 문제점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비경제적인 목표와 얽혀 있어 이 보고서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경우 정부 차원의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장벽보다는 민간 차원의 오래된 관행에 기인한 비제도적인 비관세장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제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중·일의 특별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후속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비관세장벽의 효과도 향후 더 엄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TO(2012b)에서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공급사슬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FDI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비관

세조치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무역과 FDI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Ferrantino(2012)만이 가격차 접근법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공급사슬 내에서의 영향에 대한 분석방법을 소개한 데 그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중요한 후속과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3. 「국가표준통계」. (2월)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2013.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9월 6일)
- 김재환, 한병섭. 2015. 「대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절임채소 식품안전국가표준 의견수렴(안) 내용 분석」. 『무역통상학회지』, 제15권 제3호, pp. 93~117.
- 김정선. 2015.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전략」.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2015-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운, 김경필. 2015. 「중국시장 수입 김치류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2호, pp. 45~65.
- 류예리, 박원석, 오선영, 최원목, 최성열. 2014. 「한-중 FTA 대비 식·의약품분야 제도분석 및 대응방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의약품안전처.
- 백종현. 2014. 「한국의 FTA TBT 분야 이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연구센터.
- 베이징aT센터. 2014. 『한국 인삼의 중국수출 확대를 위한 +Alpha 전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4.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a.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015』.
- _____. 2015b.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보도자료. (10월 29일)
- 신성균. 2009. 「WTO/SPS 통보문 분석 연구: 식품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22권 제2호, pp. 252~260.

- 왕 양, 조현숙. 2013. 「중국 위생검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7호. 한국무역연구원.
- 유새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훈, 김부용, 박진희, 여지나, 이상희, 임민경. 2012.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형, 이천기. 2015.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15-4(통권 제122호), pp. 10~52.
- 임정빈. 2015. 「TPP 가입하면 우리농업 어떻게 되나?」, pp. 35~37.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장용준, 서정민. 20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1호, pp. 1~33.
- 장용준, 이재호. 2015. 『국제규제협력의 경제효과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용역보고서.
- 전형진. 2015.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동향과 시사점』. 특별기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 정명섭, 최준혁, 이영환, 신혜선. 2013. 『FTA 발효·체결(예정) 국가에 대한 기준·규격비교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과제.
- 정환우. 2013.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협상시사점: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SPS)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28호), pp. 89~115.
- 중소기업중앙회. 2013.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 _____. 2015.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결과』.
- 최승환, 박언경. 2014. 『한국-중국 FTA를 대비한 중국의 위생검역제도와 위생검역 관련 통상분쟁사례 연구』. FTA법제지원연구(II) 14-22-6. 한국법제연구원.

- 최지현, 정정길, 김정필, 한정훈. 2014. 『한중 FTA시대 농수산물식품 분야 스티수출품
목 발굴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4-51-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하선권, 최정택, 김성준. 2011. 「기술규제장벽(TBT) 협정에 따른 한국정부 대응
방안」. 경북대학교.
- 하태정, 문선웅. 2014. 「가격차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
(TBT) 추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pp. 307-330.
- 한승준. 2009.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제3호, pp. 43~66. 경성대학교.
- 황윤재, 한재환, 전형진. 2012. 『한·중·일 농식품안전관리체제와 상호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T 베이징지사. 2015.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방향 및 대응전략」.

[영문자료]

- Anderson, J. E. and E. van Wincoop. 2004. "Trade Cos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2, No. 3, 691-751.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9. "Bonus Vetus OLS: A Simple Method for Approximating International Trade-Cost Effects Using the Gravity Equ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7, No. 1, 77-85.
- Bao, X. and L. D. Qiu. 2010. "D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omote or Restrict Trade? Evidence from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Vol. 17, No. 3, 253-278.
- _____. 2012. "How d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luence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20, No. 4, 691-706.
- Cadot, O., A. Asprilla., J. Gourdon., C. Knebel., and R. Peters. 2015. *Deep*

Regional Integration and Non-Tariff Measures: A Methodology for Data Analysis. UNCTAD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Research Study Series No. 69.

Cadot, O., E. Munadi, and L. Y. Ing. 2015. "Streamlining Non-Tariff Measures in ASEAN: The Way Forward." *Asian Economic Papers*, 35-70.

Cadot, O., M. Malouche, and S. Sáez. 2013. *Streamlining Non-Tariff Measures: A Toolkit for Policy Makers.* Washington, DC: World Bank.

Chen, M. X. and A. Mattoo. 2008. "Regionalism in Standards: Good or Bad for Trad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41, No. 3, 838-863.

Chen, N. and D. Novy. 2011. "Gravity, Trade Integration, and Heterogeneity Across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5, No.2, 206-221.

Disdier, Anne-Célia, L. Fontagné, and M. Mimouni. 2008.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Agricultural Trade: Evidence from the SPS and TBT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90, No. 2, 336-350.

Djankov, S., C. Freund, and C. S. Pham. 2010. "Trading on t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2, No. 1, 166-173.

Evenett, J. S. and M. Wermelinger. 2010. "A Snapshot of Contemporary Protectionism: How Important are the Murkier forms of Trade Discrimination?" *Rising Non-Tariff Protectionism and Crisis Recovery*. pp. 8-27. UN ESCAP.

Fassarella, L. M., Piuto de Souza, M. J., and Burnquist, H. L. 2011. "Impact of Sanitary and Technical Measures on Brazilian Exports of Poultry Meat," No, 103453, 2011 Annual Meeting, July 24-26, 2011, Pittsburgh,

- Pennsylvania,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 Ferrantino, M. J. 2012. "Using Supply Chain Analysis to Examine the Costs of Non-Tariff Measures(NTMs) and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2-02.
- Fontagné, L., G. Orefice, R. Piermartini, and N. Rocha. 2015. "Product Standards and Margins of Trade: Firm-leve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7, No. 1, 29-44
- FSANZ. 2014. *Promoting International Harmonisation of Food Standards: FSANZ's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Engagement*, 2nd ed. (December)
- Hidalgo, C. A. and R. Hausmann. 2009. "The Building Blocks of Economic Complexity." *PNAS*, 106(26), 10570 – 10575. <http://www.pnas.org/cgi/doi/10.1073/pnas.0900943106>(검색일: 2015. 7. 23).
- Hoekman, B. and A. Nicita. 2011. "Trade Policy, Trade Costs, and Developing Country Trade." *World Development*, Vol. 39, No. 12, 2069-2079.
- IMF. 2015. "Reaping the Benefits of Global Value Chains."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 Johnson, R. C. and G.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6, 224-236.
- Lin, Ching-Fu. 2012. "SPS-Plus and Bilateral Treaty Network: A Global Solution to the Global Food-Safety Problem?"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9, No. 4, 694-734.
- Lord, J. M. 2014. "Trading Costs in East Asia's Global Value Chains." MPRA Paper 61080. https://mpra.ub.uni-muenchen.de/61080/1/MPRA_paper_61080.pdf(검색일: 2015. 4. 22).

- Moenius, J. 2004. "Information versus Product Adaptation: The Role of Standards in Trade."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and Markets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 Nicita, A. and J. Gourdon. 2013. "A preliminary analysis on newly collected data on non-tariff measures." UN.
- OECD, WTO, and UNCTAD. 2013.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for Trade, Investment, Development and Jobs." Prepared for the G-20 Leaders Summit. <http://www.oecd.org/trade/G20-Global-Value-Chains-2013.pdf>
(검색일: 2015. 4. 22).
- Orefice, G. and N. Rocha. 2014. "Deep Integration and Production Networks: an Empirical Analysis." *The World Economy*, Vol. 37, No. 1, 106-136.
- Pasadilla, G. O. 2013. "Addressing Non-tariff Measures in ASEAN." ARTNeT Working Paper, No. 130. Bangkok, ESCAP. (September)
- Santos Silva, J. M. C. and S.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No. 4, 641-658.
- Stehrer, R.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OD Working Paper, Vol. 8, 1-19.
- Swann, P., P. Temple., and M. Shurmer. 1996. "Standards and Trade Performance: The UK Experience." *The Economic Journal*, 1297-1313.
- Timmer, M. P., E. Dietzenbacher., B. Los., R. Stehrer, and G. J. de Vries. 2015. "An illustrated user guide to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the Case of Global Automotive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 Tinbergen, J. 1963. "Shaping the World Economy." *The International Executive*, Vol. 5, No. 1, 27-30.

- UNCTAD, 2010. "International Trade After the Economic Crisi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 _____. 201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2012 version)."
- _____.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5. "China-Peoples Republic of: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FAIRS Country Report. GAIN Report Number: CH 15076.
- _____. 2014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Japan," GAIN Report Number: JA4042.
- _____. 2014b.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Korea- Republic of." GAIN Report, No. KS1453.
- USTR, 2015. *201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WTO Secretariat, 2014. "Trade Policy Review: China." WT/TPR/S/300/Rev.1. Trade Policy Review Body. (October 7)
- _____. 2015. "Trade Policy Review: Japan," WT/TPR/S/310. Trade Policy Review Body. (January 19)
- WTO SPS Secretariat, 2015a. "Overview Regarding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Provisions of the SPS Agreement." G/SPS/GEN/804/Rev.8.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_____. 2015b. "Specific Trade Concerns. G/SPS/GEN/2013/Rev.15.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February 24)
- _____. 2015c. "INTRODUCTION TO THE KOREA SPS SUPPORT WEBSIT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G/SPS/GEN/1447.
(February 24)

WTO TBT Secretariat, 2014. 「G/TBT/N/CHN/1019」.

_____. 2015a. 「G/TBT/N/CHN/1025」.

_____. 2015b. 「G/TBT/W/413」.

_____. 2015c. 「G/TBT/W/415/Rev.1」.

_____. 2015d. 「G/TBT/W/419/Rev.1」.

WTO, 2003.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4.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5.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6.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7.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8.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9a.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09b.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TBT/26」.

_____. 2010a.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0b. “Report to th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Geneva).” (June 14)

_____. 2011.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2a.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2b. “World Trade Report 2012: Trade and public policies: A closer look at non-tariff measures in the 21st century.”

_____. 2013.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4a.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4b. “I-TIP: Now Covering Most WTO Non-Tariff Measure Notifications.” WTO STAT TALK, Issue No. 11.

_____. 2015a.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_____. 2015b.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WT/DS495/1, G/L/1116, G/SPS/GEN/1410. (June 1)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89&efYd=20160204#0000>(검색일: 2015. 11. 1).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s://standard.go.kr/KSCI/international/searchInternationalStandardList.do>(검색일: 2015. 12.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 <http://www.iec.ch>(검색일: 2015. 8. 12).

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

p?sNo=19992(검색일: 2015. 11. 25).

산업통상자원부. 2015a. 「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보도자료. (6월 25일)

_____. 2015b.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보도자료. (9월 22일)

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 홈페이지. http://www.mfds.go.kr/fa/index.do?nMenuCode=12&page_gubun=1&gongjeoncategory=4&key=&keyfield=(검색일: 2015. 11. 23).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자료. file:///C:/Users/user/Downloads/mfds_kor.pdf(검색일: 2015. 11. 1).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foodadditives/index.html>(검색일: 2015. 11.23).

일본의 표준화 체계. <http://blog.daum.net/standards/219>(검색일: 2015. 11. 13).

「중국 식품기준, 한국보다 엄격」. 2015. 『주간무역』, 제395호. <http://www.weeklytrade.co.kr> (7월 27일). <http://www.jedam.net/pdf/395/10.pdf>(검색일: 2015. 10. 28).

중국 - ASEAN SPS 홈페이지. <http://www.chinaaseansps.com/list.aspx?cid=218> (검색일: 2015. 10. 16).

「KTL, 中 산동 의료기기검사센터와 기술협력 MOU」. 2015. 『머니투데이』. (5월 21일)

ASEAN Food Safety Standards Database. <http://aseanfssdatabase.com/>(검색일: 2015. 11. 25).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atlas.cid.harvard.edu/>(검색일: 2015. 7. 24).

CEPII Database.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presentation.asp?id=6(검색일: 2014. 7. 30).

EU Commission, 2009.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atabase. <http://madb.europa.eu/madb/indexPubli.htm>(검색일: 2015. 6. 4).

FSANZ. <http://www.foodstandards.gov.au/Pages/default.aspx>(검색일: 2015. 10. 17).

GTA Database. <http://www.globaltradealert.org/site-statistics>(검색일: 2015. 8. 2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5. 4. 30).

KNOW TBT. <http://knowtbt.kr>(검색일: 2015. 8. 13).

TRAINS Database.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5. 10. 22).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5. 4. 30, 2015. 6. 11).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gain.fas.usda.gov/Lists/Advanced%20Search/AllItems.aspx>(검색일: 2015. 11. 9).

WIOD Database. http://www.wiod.org/new_site/database/wiots.htm(검색일: 2015. 2.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5. 7. 25, 2015. 11. 3).

WTO I-TIP DB. <http://www.wto.org/english/res-e/statis-e/itip-e.htm>(검색일: 2015. 6. 11, 2015. 10. 26).

WTO SPS Dispute Settlemen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id=A19#(검색일: 2015. 10. 30).

WTO SPS IMS. <http://spsims.wto.org/web/pages/search/notification/Search.aspx>(검색일: 2015. 7. 12).

WTO Tariff Analysis Online. <https://tao.wto.org>(검색일: 2015. 6. 4).

WTO TBT IMS, <http://tbtime.wto.org/>(검색일: 2015. 8. 13).

[법률 및 협정문]

- 「계량에 관한 법률」.
- 「국가표준기본법」.
- 「대한민국헌법」.
- 「산업표준화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ASEAN EPA 협정문」.
- 「일·베트남 EPA 협정문」.
- 「일·몽골 EPA 협정문」.
- 「일·스위스 EPA 협정문」.
- 「일·인도 EPA 협정문」.
- 「일·칠레 EPA 협정문」.
- 「일·페루 EPA 협정문」.
- 「일·호주 EPA 협정문」.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품안전기본법」.
- 「중국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제13조.
-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
-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
- 「중·칠레 FTA 협정문」.
- 「중·파키스탄 FTA 협정문」.
- 「중·호주 FTA 협정문」.
- 「중·아세안 FTA 협정문」.

「중·페루 FTA 협정문」.
「중·코스타리카 FTA 협정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EU FTA 협정문」.
「한·미국 FTA 협정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중국 FTA 협정문」.
「한·칠레 FTA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한·호주 FTA 협정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문」.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관한 협정」.

[인터뷰 자료]

대한화장품협회(2015. 10. 19).
비관세장벽위원회(2015. 6. 4).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2015. 10. 2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2015. 10. 29).
한국의 대중 수출 기업 L사(2015. 10. 2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015. 10. 28).

부록

부록 1.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TBT 협정문 조항
비교

부록 2.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SPS 조항 비교

부록 3. 비관세조치 평가 질문지

부록 4. 세계의 TBT와 SPS 통보문 현황



부록 1.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TBT 협정문 조항 비교

| 부록 표 1-1. 국제표준 | | | |
|----------------|---|--|--|
| | 한국 | 중국 | 일본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 제외)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N/A) |
| 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 제외)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 제외) 국제 표준화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영역 내 기관간 협력 장려 | (N/A) |
| 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지역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을 통해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구의 협력 장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지역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을 통해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구의 협력 장려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 |
| 스위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존재여부 판단은 WTO TBT 협정 제2.4조에 근거하며, ISO, IEC, ITU, CAC 등에 따른 국제표준 포함 | (N/A) |

주: - 는 FTA 미체결, (N/A)는 FTA 체결국이나 조항의 부재.
 자료: 유새별(2015) 및 한·중·일 3국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업데이트.

부록 표 1-2. 적합성 평가절차

| | 한국 | 중국 | 일본 |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 고려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해 상호수용 촉진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또는 승인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sha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촉진 메커니즘의 정보 공유 강화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합의(평가기관 기술능력 관련 사전협의 가능) 적합성 평가절차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의무와 권리 재확인 |
| 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정보 교환 및 양국 적합성 평가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국의 경비로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 참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규제제도 차이 인지, MRA에 대해 논의 수용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인정 촉진을 위해 다음의 정보 교환: 시험, 검사, 인정, 인증, 측정 등 상대국 영역 내 평가기관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에 대해 긍정적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의무와 권리 재확인 |
| 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또는 승인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may)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자발적 약정 체결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또는 승인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shall)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합의(평가기관 기술능력 관련 사전협의 가능) 적합성 평가절차가 강제적으로 요구될 경우 표준과정기간을 공표하거나 예상처리기간을 상호간 공유하며, 해당 산업 제품리스트(영문으로 번역된 6단위 이상 HS코드를 30일 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또는 승인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shall)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촉진 메커니즘의 정보 공유 강화 적합성 평가절차와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상대국 영역 내 평가기관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인정을 위한 협정을 협상하기 위한 상대국 요청에 대해 긍정적 고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특정 기술규정/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 승인,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통 기관의 인정, 승인, 허가 등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 사유 제공 의무 |
| 스위스 | - | (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의 적합성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된 동 제품의 공급 업체에게 접근권한을 비차별적으로 부여하도록 보장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가능한 수용하도록 보장(단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준은 기술능력 적절성을 반증해야 함) 적합성 평가절차와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

주: - 는 FTA 미체결, (N/A)는 FTA 체결국이나 조항의 부재, 자료: 유세벨(2015) 및 한·중·일 3국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업데이트.

부록 표 1-3. 투명성

| | 한국 | 중국 | 일본 |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비정부인 의 참여 비차별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제·개정 과정 참여 불가)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구는 ISO에 통지되는 국가표준 제·개정 안건을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 촉진 | (N/A) |
| 싱가포르 | (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무역상품에 관해 새로운 기술규정이 도입될 경우 상대국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관련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최근 시행된 기술규정에 인용 또는 부하되는 경우 상대국에 전자적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 | 비관세조치에 관한 투명성 조항은 WTO TBT 협정에 기초 |
| 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공중이 접근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기술규정 준수 미달로 입국함에 유추될 경우, 유추 사유를 수입자에게 즉시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제·개정 과정 참여 불가)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공중이 접근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시험생품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공중이 접근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기술규정 준수 미달로 입국함에 유추될 경우, 유추 사유를 수입자에게 즉시 통지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정에 당사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동 조항 준수 권고)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대국 의견에 자국 답변 공개(인쇄물, 전자적 등의 방법으로 공표)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TBT 협정에 따라 통보문을 제출할 경우 상대국 문언처 또는 조정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정에 당사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동 조항 준수 권고) TBT 협정에 따라 통보문을 제출할 경우 상대국 문언처 또는 조정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 스위스 | - | (N/A) | (N/A)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상품이 이행 약정(제6.12조의 적용대상 이거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국 질의처에 TBT 관련 조치와 이유 통보 상대국의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제·개정 과정 참여 불가)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기술규정 범위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필수요건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새롭게 인정·지정된 시험실비 및 인증기관에 대해 최신정보를 빠른 시일 내 상대국과 교환 관련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최근 시행된 기술규정에 인용 또는 부합하는 경우 상대국에 전자적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 | - |

주: 1) - 는 FTA 미체결, (N/A)는 FTA 체결국이나 조항의 부재.

2)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3월에 타결된 TBT 협정문을 참고하여 요약.

자료: 유세벨(2015) 및 한·중·일 3국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업데이트.

부록 표 1-4. 협력

| | 한국 | 중국 | 일본 |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관련 조치, 관련 활동, 진행과정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 정보기술 지원 특정 관심영역 표준 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협력 프로그램 정보 제공 표준화 활동에 양국간 협력 표준 관련 조치 국제협정 또는 프로그램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절차·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기술조언, 정보지원 제공 특정 관심영역 표준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협력 프로그램 정보 제공 강제적 및 자발적 인증 관계에 대해 양국간 협력 강화 시장접근 원활화를 위해 위험분석 고려요소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9000, 14000 등)을 고려하여 소통 강화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상호 이해 향상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국제 및 지역적 포럼에서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활동 참여 |
| 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이슈, 국제표준 조화, 공급자 적합성(SDoC), 적합성 평가기관 능력 검증 등을 위한 인적체계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교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또는 적용 관련 상호 기술조언, 기술협력 등 포함 | (N/A) |
| 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 강화 및 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증진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협력 확대를 위한 제안 검토 유사한 기술규정 개발 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자료 제공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해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표준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및 계량기관의 역량 강화 동 센터에 요구되는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 강화 및 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분야의 국제기관간 협력 증진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표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 우수규제관행, 투명성, 국제표준과의 정합, 공급자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 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을 위한 메커니즘) | - | (N/A) |
| 스위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화 기구 및 WTO TBT 위원회 활동 강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모범규제관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 양국 관할 기관간 소통 강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기초한 국제표준 역할 강화 관련 표준 및 ISO, IEC의 지침에 기초한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 증진 다자 협정 관점 하의 ISO, IEC 지침에 의거하여 인증된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 및 장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에 대한 양국 규제 조화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국제 및 지역적 포럼에서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활동 참여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기초한 국제표준 역할 강화(특히,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인정) |

주: - 는 FTA 미체결, (N/A)는 FTA 체결국이나 조항의 부재
 자료: 유새별(2015) 및 한·중·일 3국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업데이트.

부록 2. 한·중·일 공통 FTA 기체결 SPS 조항 비교

| 부록 표 2-1. 협력 조항 | | | |
|-----------------|--|---|--|
| | 한국 | 중국 | 일본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에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한 협력 관련 정보의 시의적절한 교환 촉진 지식·경험 공유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 확대 WTO SPS 위원회 통보의 시본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수입위험분석 원칙과 절차에 대한 기술적 협력과 대화 강화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질병 및 병해충 관리, 감독 및 통제전략 및 기타 연관 과학 이슈 SPS 위원회 통해 추가적인 협력, 공동작업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식품안전 및 건강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입장과 정보교환 당사국 SPS조치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정보공유 WTO SPS위원회에 제출하는 통보문의 전자사본 송부 |
| 한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및 국내 SPS 조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위험분석 방법론, 질병/병해충 관리방법, 실험실 시험기술, 국내규정에 관한 정보 교환 협력 WTO SPS 질의처간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동물질병, 식물병해충 관리에 대한 당사국 역량·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교환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공유·동식물 질병·병해충 조사, 동식물 질병/병해충 예방 및 관리,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검출방법, 유해물질과 농화학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및 관리, 식품안전문제 | | (N/A)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협의) FTA규정의 해석이 불확실한 경우 협의 개시 가능 양국 위원회는 협의를 촉진하고 구속력 없는 기술적 조언, 권고 제공을 위해 임시 작업그룹·토론회에 사안 회부¹⁾ | - | - |
| 싱가포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과 관련 상품에 대한 검사·검역, 상품 품질·안전 통제, 식품(food establishment) 승인 기간과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또는 적용 관련 상호 기술조언, 기술 협력 | - |
| 페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 조치 이행을 촉구 SPS 당국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 협력 | - |

부록 표 2-1. 계속

| | 한국 | 중국 | 일본 |
|------|----|--|-------|
| 뉴질랜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조치 관련 추후협력 확대의 기회 모색 • 공무원 교환 포함한 지식 및 경험교환 • 국제기구 활동에서 입장조율 및 연관 기준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이행 • 공동연구 수행 및 결과공유 (내용 한중FTA와 동일) • WTO SPS위원회 질의처 활동 관련 협력등 • 양자간 SPS협력과 농식품교역 증진을 위한 기술협약 및 능력배양의 중요성 인지 •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술협약 및 협력프로젝트 적용 | (N/A) |

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위원회와 접촉선 조항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이 부록표는 별도로 협력조항이 삽입된 경우만을 정리한 것임.

자료: 각국의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부록 3. 비관세조치 평가 질문지¹⁷⁸⁾

이 질문지는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가 비관세조치(NTM)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질문지는 규제 설계, 규제 단속과 준수에 관련된 다음의 세 부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관리 방식: 규제가 투명하고(예: 법적 텍스트가 간단한지, 관련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규제의 적용과 단속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법적 일관성: WTO와 해당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통상 의무(특히 SPS 와 TBT 협정), 다른 국가와의 조약, 국내법과 일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 성과: 규제 설계에 일관성이 있는지, 비관세조치의 원인인 시장실패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적절한지 확인한다.

평가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분석가가 민간 부문과 당국자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의 경우는 짧은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178) Cadot, Malouche and Sáez(2013), pp. 173-178.

평가의 주체

1. 규제를 명시한 텍스트를 첨부하십시오. 언제 규제가 적용되었는가?
2. 규제의 법적 특성은? (법, 대통령령, 장관령 등) NTM의 어떤 분류에 속하는가?
3. 규제를 발의한 기관은? 어떤 행정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치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4. 규제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은?
5. HS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한 자세히 어떤 제품 혹은 어떤 종류의 제품이 규제의 대상인지 명시하십시오. 규제와 관련된 제품이 최종제품(소비재)인가, 아니면 1차 생산재/중간재인가?

WTO와의 일관성

6. 규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관련 주소를 첨부하십시오.
7. 비전문가도 규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해외 수출가를 위해 외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가? (예: WTO의 공식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불어)
8. 해당 규제가 국제법에 토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약/협정이고 어떤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가?
9. 이 규제에 대해 WTO에 통보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협정하에 고지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통보하지 않았는가?
10. 건강 혹은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한 규제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실험 결과, 과학 기사, 전문가 의견 등)

규제의 편익평가

11. 해당 규제가 해소하려 했던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시오. (건강, 제품 적합성 등)
 - 해당 규제가 얼마만큼 시장실패와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다.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다.
12. 규제와 연관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인가?
 -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다. 이 질문의 답안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예: 지역 대학의 환경/건강 분야 전문가)이 필요할지 판단해야 한다.
13. 해당 규제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다시 말해, 해당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의도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 답변자가 최대한 명료하고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가?
 - 이 질문의 의도는 기술 혹은 시장 상황의 변화가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규제가 완화하려 했던 건강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과학자가 근거 없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15. 종합하자면, 해당 규제를 통해 원하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었는가? 규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이 질문의 의도는 규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설계상의 실수가 있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허점(loophole)은 34번 질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6. 민간 부문에서 협력, 자체적인 라벨링(labeling)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 이 질문은 생산자들이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발적인 라벨링, 환경인증, '공동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계획, 생산이력 관리 등이 그 예이다.
17. 해당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생산에 있는가, 소비에 있는가?
- 이 질문의 의도는 소비와 연관된 건강 위험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그럴 경우 해당 소비재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반면 문제가 생산 활동 쪽에 있다면(예: 제품의 생산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거나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때) 비관세 조치가 아닌 생산기준(production standards)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18. 규제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는가? 간접적 이익이 존재하는가?
- 어떤 부문(경제활동, 직업, 특정 거주집단 등)이 이익을 받는지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기준의 적용을 통해 기술적 향상이라는 '간접적 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규제의 비용평가

19.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올랐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가? 추정치를 제시하십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관련 생산자 및 수입자를 통해 최대한 정확하고 정량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얼마나 (% 단위로) 올랐는가? 규제를 통한 가격 상승을 추정하기 위해 어떤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20. 어떤 산업/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수출, 고용,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에 영향을 받은 산업이 (a) 무역과 (b) 고용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 질문을 받는 회사/기관뿐 아니라 전체 산업에 걸쳐 정량적 추정치가 나와야 한다.

21.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가?

— 간접적 지원금이나 정부 서비스를 기존 비용보다 싸게 제공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22. 규제를 통해 수입량이 줄어들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잠정적 추정치를 제공하십시오.

—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질문으로, (이 질문지의 범위를 넘어선) 계량경제학적 모델이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23.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나 질(質)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의 다양성이 감소하였는가?

— 일례로 쿼터(quota)제는 해외 생산자가 각 상품별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적 비싼 상품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기술적 규제 역시 수입품의 평균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24.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 상품이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는가? 국내 생산/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 질문의 대답은 18/20번의 대답과 겹칠 수도 있다. 이 질문의 주된 의도는 수입 제한이 국내 생산자를 돕고 있는지 확실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25. 규제가 수입자/생산자 사이의 경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 질문의 의도는 해당 규제가 특정 생산자에게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소규모 생산자는 값비싼 중간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기술규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 문제를 분석하는 이들은 규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생산자가 산업 전체를 대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6. 취약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소규모 사업, 토착민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 등)
27. 성(性)별로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가?
- 몇몇 규제의 경우 여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규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남성 위주의 비공식적인 집단에만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

규제이행을 위한 비용평가

28. 수입자/수출업자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와

민간 담당자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을 경우, 신중하게 그 차이를 검토해야 한다.

29. 규제를 준수하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위험요소를 국경에서 관리하는가?
 - 이 질문의 핵심은 '위험 프로파일링(risk profiling)'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대안으로 모든 수송품(shipment)이 조직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0. 평균적으로 허가를 받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투명하고 공개된 타임라인이 있는가?
31. 허가가 영구적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가? 후자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재허가가 이루어지는가?
 - 수입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수입자 허가(certification permits), 기술적 제한 혹은 수량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준수함을 증빙하는 수입허가를 구분해야 한다.
32. 허가 혹은 필수 서류가 얼마나 자주 거절당하거나 늦춰지는가? 주된 이유는?
 -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되는 허가의 구체적 사례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에 정부 당국자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33.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내야 하는 요금이 있는가? 어떤 목적의 요금이 얼마나 부과되는가?
 -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거래가치에 대비해 %단위로 답을 얻는 것이 좋다.
34. 규제 집행에 허점이 있는가?
 - 여기서 언급하는 허점은 규제 설계상의 문제와 차별적 집행을

포함한다. 정치적으로 연관된 집단에 집행을 면제하는 관행 등이 차별적 집행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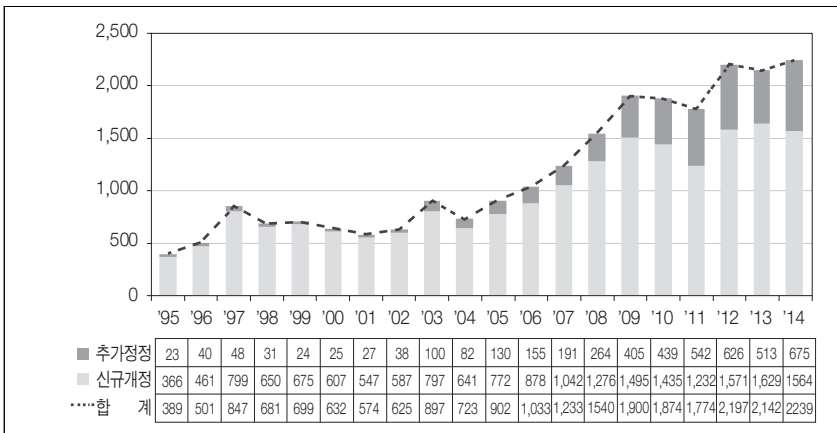
35. 규제를 통해 정부가 추가의 수입을 얻는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는가? 가능하다면 수입 혹은 지출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공하십시오.
- 어떻게 규제가 도입되었는가?
36.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가? 정식 과정을 통한 논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 논의를 주도했던 이해당사자가 있었는가? (소비자, NGO 등)
37. 논의 과정 중 이해당사자의 주된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한쪽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는가?
38.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폐기되었는가? 어떤 방안이 선택되었는지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39. 일몰조항(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파기되는 조항)이 있었는가? 규제가 검토된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검토의 주체와 결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부록 4. 세계의 TBT와 SPS 통보문 현황

WTO TBT 협정이 체결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WTO에 통보된 건수는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대체로 완만한 증감추이를 보이거나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 2013년 1,629건으로 TBT 협정 체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부록표 4-1]을 살펴보면 2014년도 통보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식의약품 분야로 전체 통보문 건수 중 41%를 차지하는 등 2013년보다 약 7% 증가하였다. 2위는 전기전자 분야로 전년도대비 약 5% 감소한 14.5%를 차지하였으며, 화학세라믹 분야가 8.3%로 상위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상위 비중을 차지하던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4년에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난 2년여간 전체 통보문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던 생활용품, 기계, 농수산물, 건설, 소재나노 등 분야

부록 그림 4-1. 연도별 WTO TBT 통보문 건수(1995~2014년)



자료: WTO(2015a),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는 2014년도에 소폭 상승했다.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은 특정 제품에 대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및 ‘품질 규정’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공공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나,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가간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술규제는 인간의 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기인하는 사회적규제 외에도 자국의 상위 산업 및 기업 보호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경제규제도 포함한다. 하선권, 최정택, 김성준(2011)은 기술규제의 특성을 사회적규제와 경제적규제로 나누어 동 규제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여 WTO TBT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부록 표 4-1. 산업 분야별 TBT 통보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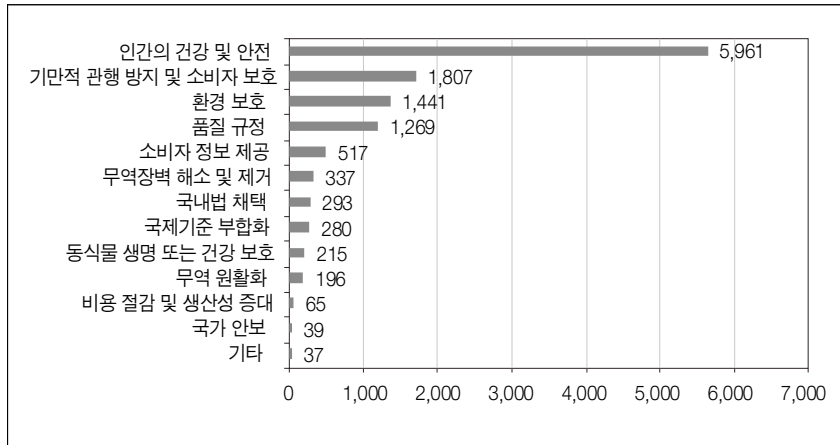
| | 2012 | | 2013 | | 2014 | |
|-------|-------|------|-------|------|-------|------|
| | 통보문 | 비율 | 통보문 | 비율 | 통보문 | 비율 |
| 식의약품 | 488 | 31,1 | 554 | 34,1 | 639 | 40,9 |
| 전기전자 | 262 | 16,7 | 318 | 19,6 | 226 | 14,5 |
| 화학세라믹 | 157 | 10,0 | 201 | 12,4 | 129 | 8,3 |
| 생활용품 | 134 | 8,5 | 101 | 6,2 | 102 | 6,5 |
| 교통/안전 | 117 | 7,4 | 112 | 6,9 | 80 | 5,1 |
| 기계 | 91 | 5,8 | 65 | 4,0 | 80 | 5,1 |
| 농수산물 | 65 | 4,1 | 40 | 2,5 | 77 | 4,9 |
| 건설 | 59 | 3,8 | 54 | 3,3 | 58 | 3,7 |
| 에너지 | 50 | 3,2 | 47 | 2,9 | 38 | 2,4 |
| 소재나노 | 50 | 3,2 | 48 | 3,0 | 58 | 3,7 |
| 정보디지털 | 25 | 1,6 | 36 | 2,2 | 21 | 1,3 |
| 바이오환경 | 4 | 0,3 | 11 | 0,7 | 7 | 0,5 |
| 기타 | 69 | 4,4 | 39 | 2,4 | 48 | 3,1 |
| 합계 | 1,571 | 100 | 1,626 | 100 | 1,564 | 100 |

자료: Know TBT 웹사이트(<http://knowtbt.kr>, 검색일: 2015. 8. 13).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그림 4-2와 같이 1995~2014년 동안의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품질 규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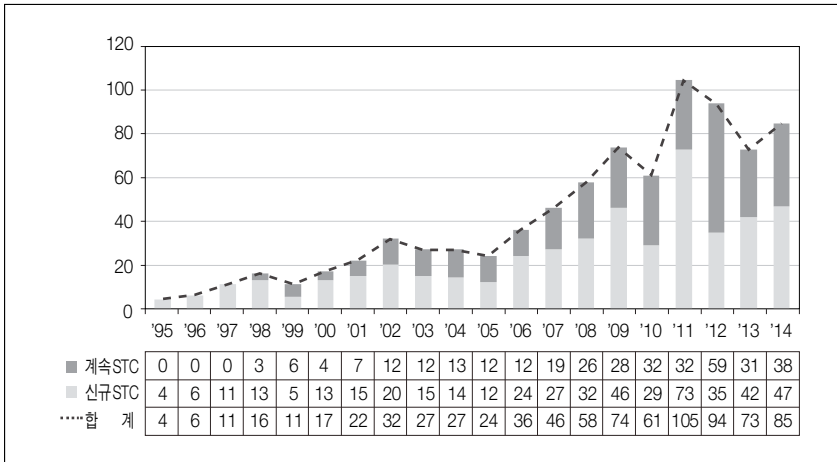
WTO 회원국이 통보한 신규 또는 기존 기술규제가 무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년 3회: 3월, 6월, 11월)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한다. WTO에 2014년 한 해 동안 기존 특정무역현안은 38건, 신규 특정무역현안은 47건으로 총 85건이 제기되었으며, 신규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부록그림 4-3 참고).

부록 그림 4-2. 목적별 TBT 통보문 현황(1995~2014년)



자료: WTO(2015a),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부록 그림 4-3.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1995~2014년)



자료: WTO(2015a),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한편 또 다른 규제적조치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식품안전과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국내 기술요건을 대상으로 한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WTO SPS협정)은 첫째, 식품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원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둘째, 동물 또는 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병원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셋째, 해충 및 병원균으로부터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넷째, 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국가내의 기타 손실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등 이상 네 가지 조치를 SPS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한다.¹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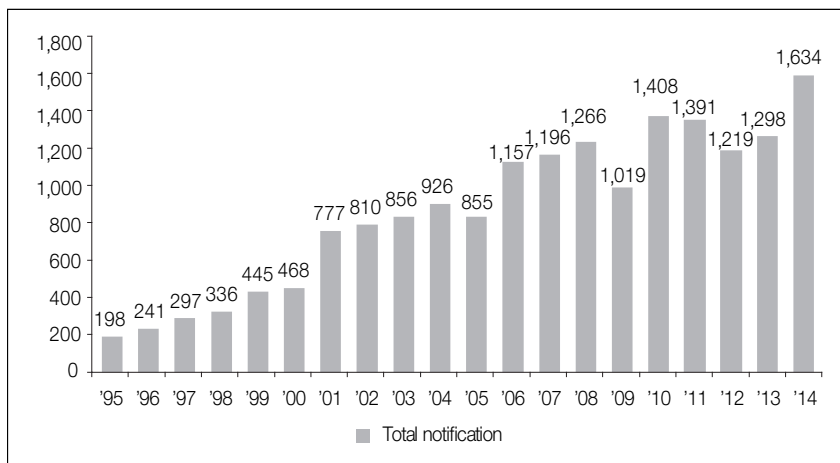
[부록그림 4-4]는 1995~2014년 동안 회원국의 자국 식품안전 관련 조치

179)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4), p. 220.

의 제·개정 통보 건수를 나타낸다. 2014년 12월 기준 총 1만 7,799건의 통보문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는 총 1,634건의 통보문이 접수되면서 연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가 2000년대 초반 30% 안팎의 비중에서 2007년 이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표 4-2]는 SPS 통보문을 HS2단위 산업별 통보문 건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일반통보문과 긴급통보문 모두 육과 식용설육(HS02)과 관련된 건수가 각각 16%, 30%로 가장 많았다. 일반통보문은 그다음으로 과일 및 견과류(HS08), 채소류(HS07), 곡물류(HS10), 채유용 종자·인삼(HS12) 순으로 많은 통보문이 제출되었고, 긴급통보문은 산동물(HS01), 낙농품(HS04), 기타 동물성 생산품(HS05), 조제사료(HS23) 순으로 많은 통보문이 제출되었다.

부록 그림 4-4. 연도별 WTO SPS 통보문 건수(1995~2014년)



주: SPS 통보문 일반(regular), 긴급(emergency), 동등성(equilibrium), 추가(addendum), 부속(supplement)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함.

자료: WTO SPS, <http://spsims.wto.org/web/pages/search/notification/Search.aspx>(검색일: 2015. 7. 12).

부록 표 4-2. 산업 분야별 SPS 통보 현황(2014년)

| 일반통보문 | | | | 긴급통보문 | | | |
|-------|-----------|-------|----|-------|------------|-------|----|
| HS | 설명 | 통보문 | 비율 | HS | 설명 | 통보문 | 비율 |
| 02 | 육과 식용설육 | 3,020 | 16 | 02 | 육과 식용설육 | 1,780 | 30 |
| 08 | 과실 및 견과류 | 1,859 | 10 | 01 | 산동물 | 1,685 | 29 |
| 07 | 채소류 | 1,637 | 9 | 04 | 낙농품 | 619 | 11 |
| 10 | 곡물류 | 1,444 | 8 | 0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489 | 8 |
| 12 | 채유용 종자·인삼 | 1,359 | 7 | 23 | 조제사료 | 296 | 5 |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a), p. 8.

SPS 통보문은 목적별로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국민보호(human protection), 국토보호(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등 다섯 가지로 구별된다. [부록 표 4-3]과 같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동안의 SPS 조치 통보문을 규제목적별로 살펴보면 일반통보문은 ‘국민보호’와 ‘식품안전’이 각각 40%와 39%의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반면 긴급통보문의 경우에는 ‘동물건강’이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긴급 수입금지조치가 발동하기 때문이다.¹⁸⁰⁾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논의체계와 같이 WTO 회원국은 연간 세 차례 개최되는 SPS 위원회에서 수출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특정무역현안(STC)을 논의한다.¹⁸¹⁾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총 382건의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약 20건의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고 있다(부록그림 4-5 참고).

180) 신성균(2009), p.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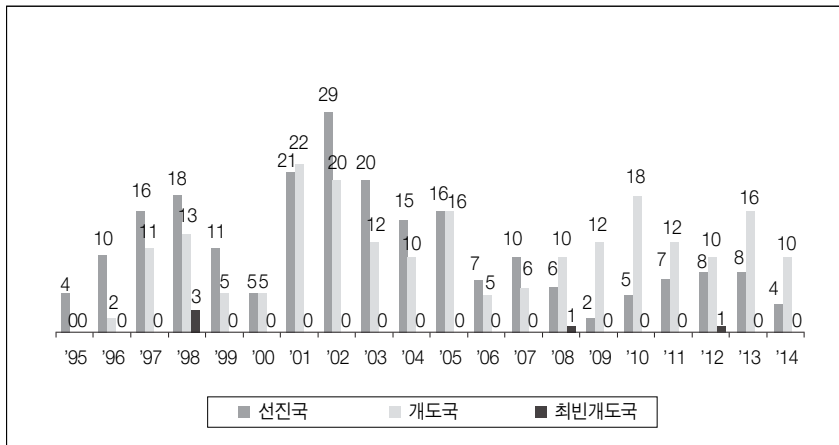
181) 이 특정무역현안(STC) 논의는 SPS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거나 과학적 원칙의 근거를 요구하는 만큼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세 SPS 위원회의 자매기관 전문가가 참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부록 표 4-3. 목적별 SPS 위원회 통보 건수(2013년 9월 ~2015년 9월)

| 일반통보문 | | | | | 긴급통보문 | | | | |
|-------|------|----|------|----|-------|------|----|------|----|
| 목적 | 2014 | 비율 | 2015 | 비율 | 목적 | 2014 | 비율 | 2015 | 비율 |
| 국민보호 | 710 | 40 | 919 | 64 | 동물건강 | 65 | 37 | 90 | 41 |
| 식품안전 | 688 | 39 | 191 | 13 | 국민보호 | 41 | 24 | 54 | 25 |
| 식물보호 | 178 | 10 | 144 | 10 | 식품안전 | 30 | 17 | 52 | 24 |
| 동물건강 | 116 | 7 | 98 | 7 | 국토보호 | 21 | 12 | 24 | 11 |
| 국토보호 | 72 | 6 | 87 | 6 | 식물보호 | 17 | 10 | 0 | 0 |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a), p. 8.

부록 그림 4-5. SPS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1995~2014년)



자료: WTO SPS Secretariat(2015b), p. 5.

주제별 특정무역현안을 살펴보면 동물건강에 관련한 우려가 39%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식품안전(31%), 식물건강(25%) 순이었다. 한편 동물건강과 관련된 우려는 구제역(FMD: foot-mouth disease),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¹⁸²⁾ 조

182) 광우병(BSE)도 이것의 한 종류이다.

류인플루엔자(AI),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물건강과 관련된 무역현안 중 34%가 TSE에 대한 것이었으며, FMD와 AI는 각각 23%, 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SPS 위원회 특정무역현안은 2014년 9월 기준 144건(38%)만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31건이 부분적 해결, 207건이 미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해결 207건 중 193건은 문제제기가 된 지 1년 이상 된 현안이다. 참고로 2014년 한 해 총 29건의 무역현안이 SPS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신규현안 14건, 기제기 현안 12건이, 해결현안 3건이 보고·논의되었다.

STC를 활용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회원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식을 취한다.¹⁸³⁾ WTO 분쟁해결기구의 법적제소는 고비용, 장기간이 요구되므로 회원국은 SPS 위원회의 특정 무역현안 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SPS 협정과 연관된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건수는 2015년 6월 기준 총 43건에 이른다. 최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1건의 무역분쟁 제소건도 없다가 2007년 이후 다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이 동물건강과 관련된 건이다.¹⁸⁴⁾

분쟁해결기구에 쟁점이 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이 총 29건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7건, ‘제7조 투명성’과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가 20건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83) SPS 위원회는 2014년 7월 STC와 WTO 분쟁해결기구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협의 절차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이재형, 이천기 2015).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를 다루지 않는다.

184) OECD, WTO and UNCTAD(2014), p. 34.

한편 SPS 협정 관련 무역분쟁 제소의 건은 총 43건 중 7건이 패널설치 이전에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9건이 패널이나 상소기구 절차가 완료되고 권고조치가 담긴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이행방안 합의, 권고조치 이행통보의 성과가 있었다. 총 15건은 2015년 7월 기준 양자합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 15건에는 양자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건도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WTO 공식 홈페이지에 양자합의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농산물 검사·검역 분쟁(DS3)은 명시적인 종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측의 관심사항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실상 종결된 건이다.

■ Executive Summary ■

A Proposal to Lower Non-Tariff Barriers of China, Japan and Korea

CHOI Bo-Young, BANG Hokyung, LEE Boram, and YOO Saebyul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is a clear tre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measures has become more prevalent, implying the possibility of countries' usage of non-tariff measures to protect their domestic economy.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CJK) are not an exception, where firm survey results identify TBT and SPS measures as major obstacles to trade. Although many non-tariff measures have legitimate, non-economic objectives such as huma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some non-tariff measures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where these non-tariff measures are called "non-tariff barriers." Hence, it is important for these three countries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to identify TBT and SPS measures which unnecessarily impede trade.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and non-tariff measures of CJK, and devise an effective counterplan for these three countries to cooperate in order to identify and lower non-tariff barriers.

To examine the trade patterns of CJK, we looked at the World Input-Output Tables (WIOT), along with the gross trade statistics which has been generally used in the literature. The rationale behind this owes to the fact that the region has been one of the areas actively forming global value chains (GVCs). By calculating the three countries' value added trade based on the WIOT, we reveal a deepening of GVC – all three nations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foreign value added embodied in goods with decreasing domestic value added. By looking at CJK's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we observe a drastic increase in the three

measures (particularly TBT and SPS-related measures), while average tariff rates have decreased for each country.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non-tariff measures – specifically TBT and SPS – in facilitating intra-regional trade among CJK.

With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e attempt to study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intra-regional trade. Theoretically, non-tariff measures can facilitate trade by alleviating the problem of incomplete information; in the meantime, compliance with TBT or SPS measures may increase costs and adversely affect trade. Thus, the net effect of implementing either TBT or SPS measures on trade depends on the two opposing effects. To examine the effect of TBT and SPS measures on trade of CJK, we first calculate the coverage ratio (share of import value exposed to non-tariff measures) and frequency index (share of the number of import products exposed to non-tariff measures) by year and by industry for CJK. For all three countries, we find a clear pattern where the coverage ratio and frequency index of both TBT and SPS measures have increas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of the countries exhibit higher coverage ratio and frequency index than imports of other industries. The coverage ratio and frequency index however does not tell us in which direction and how much TBT or SPS affects trade. To examine this, we conduct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calculated coverage ratio and frequency index. The empirical result tells us that TBT measures of CJK negatively affect manufacturing trade from the world to CJK, while SPS adversely affects food and agricultural trade. Restricting the analysis to intra-regional trade, we find that only SPS measures decrease the trade flow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ountries. The effect of TBT measures on trade is insignificant, possibly due to the fact that trad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mostly consists of intermediate goods trade which is less likely to be affected by TBT or SPS measures.

Next, we complement our quantitative analysis with qualitative analysis on TBT and SPS measures of CJK. In addition to the explanation on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systems of TBT and SPS measures in the three countries, we compare the TBT and SPS provisions in the commonly agreed FTAs of the three countries. For TBT agreement in these FTAs, China seems to have more or less conservative tendency toward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in the TBT agreement, both China and Japan have stricter criteria in acceptance of mutual recognition of results and procedure of Conformity Assessment than Korea does. In terms of SPS provisions, China's FTA included the most detailed, concrete provisions in terms of depth and scope, while South Korea and Japan were reluctant to include provisions other than the WTO SPS Agreement. The only provisions in common that all three countries included were the cooperation provisions (which includes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SPS committee provisions. Meanwhile, CJK seek mutual cooperation to promote protection of the health of their citizens,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to facilitate safe trade not only at the multilateral level but also at the bilateral level.

Despite its well-known restrictiveness on trade, CJK lacks a mechanism to regularly discuss and cooperate on non-tariff barrier issu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us, in this report, we suggest the three countries to utilize the Pan-Yellow Sea Rim Economy and Technology Exchange Meeting. Within the meeting, harmonization of standards,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can be discussed to lower non-tariff barriers to trade relevant to TBT and SPS measures. Regarding the first issue, for instance, we argue for creating a sustainable network system which includes annual experts' meeting on Korean-Sino food standards to build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three countries can consider creating a common food regulation standing committee of CJK, benchmarking the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to promote food standards harmoniz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second issue regard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three methods

are worth a consideration; ① an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product list ② a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assessment bodies located in the partner country ③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foreign-owned certification authority in domestic country, in addition to an extension of MRA within regional cross-border or a mutual recognition of the result on test certification between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Lastly, to enhance transparency, we propose to create a common website on TBT and SPS measures of CJK which alerts stakeholders about the changed or introduced TBT/SPS measures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cases of failure in complying with customs regulation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5년

-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선평·진화림·정은이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임태훈·서현덕·강은정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한민수·황운중·김수빈
-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서봉규·임태훈·강은정·김영선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박순찬
-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성한경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김영귀·김혜윤
-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강준구·김혁황·박지현·이준원·이주미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
-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김부용·최필수·나수엽·김영선·조고운·이효진
-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김홍원·이승은·최지원
-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세별
-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김준영·임소정·최유정

-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이신애
-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광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용 · 문성만 · 권혁주
-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2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계성훈 · 강부균 · 민지영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김수빈·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금혜윤·유새별·김양희·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김민성·송백훈·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강준구·엄준현·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김혁황·이준원·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박혜리·엄준현·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김윤옥·이민영·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권 울·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에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이형근·김은지·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최필수·나수엽·이효진·이장규·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박진희·김홍원·이형근·최지원·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이 용·김유미·박나리·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 2013년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한민수·김종혁·이성희·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이철원·오태현·이현진·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계성훈·민지영·강부균·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손성현·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김예진·장종문·권유경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양다영·강은정·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이준원·김봉근·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송치영·김태준·문우식·유재원·채희울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배찬권·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오수현·박지현·김민성·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강은정·편주현·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이승래·김혁황·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선주연·김정곤·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김보민·이성희·김윤옥·홍이경·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 · 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 ·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효립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장종문 ·전혜린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임태균

최보영 (崔輔榮)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by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전략과 시사점』 (공저, 2014)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공저, 2014) 외

방호경 (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assgu@kiep.go.kr)

저서 및 논문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공저, 2014)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저, 2015) 외

이보람 (李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동아시아연계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r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공저, 2013)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전략과 시사점』 (공저, 2014) 외

유새별 (俞새별)

The University of Glasgow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現, E-mail: sbyoo@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보고서(2014, 공저)
「한·중 FTA와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 외

연구보고서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22,1199

인쇄 오름(주)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72-3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8만원 | | 4만원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계간지 |
|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 Proposal to Lower Non-Tariff Barriers of China, Japan and Korea

CHOI Bo-Young, BANG Hokyung, LEE Boram, and YOO Saebul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조치가 역내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TBT와 SPS 조치로 인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한·중·일 무역과 비관세장벽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정성적으로 한·중·일의 FTA 협정문을 비롯한 TBT와 SPS 조치와 관련한 3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중·일 FTA뿐 아니라 RCEP과 TPP 협상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